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2005. 11.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Systematic Responses to Korea's Free Trade
Agreements

2005. 11.

연구자 : 문 준 조 (연구위원)

국문 요약

이 연구서는 먼저, WTO체제와 FTA, 즉 세계무역상의 보편주의와 지역주의의 관계, WTO 규범내에서의 FTA의 근거조항들을 분석하고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의 FTA의 특징, 남북한 무역거래에서의 대우와 중국-홍콩·마카오간의 CEPA협정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FTA 체결현황과 전망과 관련하여서는 각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추진경과, 한국·칠레 FTA 및 한국·싱가포르 FTA의 기본적인 내용, 추진중인 일본, 중국 및 ASEAN 및 미국과의 무역협정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FTA의 주요 조문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상품시장 접근을 위한 자유화와 원활화를 위한 조항, 즉 상품에 대한 관세양허안 작성, 비관세장벽의 철폐,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통관절차,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표준관련조치 및 기준·인증의 상호인정(MRA), 주요 FTA에서 나타난 원산지결정의 각종 기준에 관해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최초로 반영한 개성공단조항이 향후에도 일본 및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의 삼입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다음 서비스시장의 개방 및 투자와 관련된 제문제로서 투자의 범주, 서비스시장의 양허,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의 문제를 분석하였고 기타 문제로서 투명성, 인적이동의 자유화 문제, 경쟁정책에 관한 정보교환 또는 조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의 보호, 양국간의 협력, 분쟁해결의 틀에 관한 주요 국가들이 체결한 FTA의 내용 및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특수한 조항, 즉 노동 및 환경관련 조항과 단기투기성자본(hot-money)규제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 키워드 : 관세양허, FTA, ASEAN+3, 원산지 규정, 개성공단조항, 서비스 무역

Abstract

It has long been held by economists that free trade is the optimal trade policy, at least in terms of the welfare of the world. Since the launching of GATT, countries have made big achievements in dismantling many trade restrictions set up by governments in the past. In the meantime, The World have watched three channels for trade liberalization : un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and regional trade liberalization. Recently,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have been getting more and more popular for many reasons, especially in Asia in the past decade. Ever since the decision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in the early nineties to form a new free trade area (FTA) consisting of their members alone, many Asian countries are trying to get into this FTA bandwagon. In fact, by 2005, it is expected that more than half of the global trade will be conducted under FTAs.

When it comes to characterizing Korea's economy, the expression "export-led economy" is commonly used.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s announcement in March, 2005, Korea will promote negotiations on FTAs with as many as 50 countries by 2007, with the goal of formal conclusion with at least 15 of them. Currently, Korea is engaged in negotiations or joint study on FTAs with some 20 countries, a sharp contrast with a year ago when it was promoting a free trade deal with just one country. As of October, 2005, Korea has concluded three FTAs with

Chile and Singapore. In this paper, I chiefly examined several legal issues concerning Korea's conclusion of FTAs, especially including Japan, United States.

I. Korea's Policy on FTAs and Current Developments

1. Developments of Korea's Policy on FTA

Up to mid-1990s, Korea stayed within the multilateral framework of GATT/WTO and implemented its trade policy consistent with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not paying much attention to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However, since the latter part of 1990s, both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have made Korea pay much attention to the growing importanc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mong these factors are: (i) the proliferation of regional trade arrangements worldwide; (ii)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erception toward regionalism; (iii) the need for securing export markets and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v) the need for continuous market openings and structural reforms of the Korean economy; and (v) the need for strengthening political ties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major trading partners.

In the context, Korea reformulated its trade policy and began examining the feasibility of FTAs with its major trading countries. Korea's active pursuit of FTAs was motivated by a fear of exclusion from the recent trend of growing regionalism and then reinforced by the need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o recover from the crisis and stimulate growth,

Korea intended to accelerate structural reforms and convert itself into an 'open trading countr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FTAs with major trading partner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come to realize that an FTA policy would help to secure stable export markets for Korean industries as well a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into the Korean economy.

In 1998, just after the outbreak of the financial crisis, the Korean government began to consider FTAs as a possible goal of the country's trade policy. Finally, the government announced its plan to proceed with an FTA with Chile in November 1998. Its basic strategy is to establish an FTA with Chile and sequential FTAs with small and medium-sized countries and then pursue additional FTAs with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2. Analysis of Three FTAs Already Concluded by Korea

(1) Korea-Chile FTA

In 1998, Korea strategically chose Chile as its first FTA partner not only because of complementarity in industrial and trade structures but also because of valuable learning effects from Chile's plentiful experience i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addition, Korea might gain a pilot experience of an FTA with a small-sized country such as Chile, while it could minimize the risk and possible losses from it. Another main reason why Korea chose Chile as its first FTA partner is that the potential industrial damage will

not be so much on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and the major agricultural imports from Chile are confined to some fruits such as grapes, kiwi, and tomato paste. As for grapes, Chile's season is very opposite to Korea's because Chile is geographically located in the Southern hemisphere. Meanwhile, Chile also showed a strong interest in getting an FTA with Korea to take advantage of the ever growing Korean markets as well as Korea's close linkage with other neighboring Asian countries.

In April 1999, both governments initiated the first meeting for FTA negotiations and agreed upon three basic principles of a Korea-Chile FTA negotiation: (i) a comprehensive FTA consistent with the GATT/WTO rules, principles, and commitments, (ii) liberalization of all areas including goods, services, investment, intellectual property, government procurement, competition policy, dispute settlement and other legal provisions, (iii) transparency. From 1999 to 2002, Korea had 6 rounds of FTA negotiations with Chile. However, at the fourth round both sides revealed some disagreements on the tariff concession for sensitive sectors. Korea proposed exclusion of some agricultural products from tariff concession, but Chile insisted on no exceptions. In return of conceding exclusion of some manufacturing products to Chile, Korea earned the exemption of some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from the tariff concession. After the revision and adjustment of tariff concession schedule at the fifth and sixth round of FTA negotiations, they had reached the conclusion on October 24, 2002.

In the meantime, The negotiations of the FTA with Chile to the residents of Korea has been difficult to proceed due to heavy opposition from the agricultural sector and labor union. Farmers strongly resisted the launch of the Korea-Chile FTA for fear that the first FTA would bring similar agreements requiring the opening of the domestic agricultural markets. It took four years to reach an agreement with Chile and more than one year to gain approval before the rectification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February 2004. Finally, the Korea-Chile FTA came into effect on April, 1, 2004.

The agreement has achieved substantial liberalization in bilater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nalysis of the economies structure of Korea and Chile and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 shows that the injury on Korean agriculture caused by new imports from Chile would be well within the reasonably manageable range. In the meantime, relevant laws, regulations and rules was enacted or am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also by the administrative organs concerned to more than sufficiently compensate the possible injury on the agricultural sector.

Under the agreement, Chile will lift tariffs on more than 2,000 products ranging from automobiles, mobile phones, computers and machinery, all of which account for more than two thirds of Korean exports to Chile. In return, Korea will reduce tariffs on Chilean copper products, animal feed, wheat, wool, tomatoes and 277 types of fish. Considering the Korean export structure in agriculture, the

two countries agreed to treat the most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apples, pears, and rice as 'exceptions to liberalization' as well as to impose seasonal tariff on grapes in a high demand season. Also, the two governments agreed to postpone the negotiation for the market opening of garlic, onion, pepper, and dairy products after the conclusion of on-going WTO DDA negotiation, and set transitional period up to 10 years for other sensitive sectors, i.e., fisheries and forest products.

(2) Singapore

Korea and Singapore, Korea's 10th largest trading partner, officially signed a free trade agreement, on Aug,4, 2005, which can be expected to play a role as a bridge to intensify the economic relations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 FTA with Singapore is a more comprehensive deal - including provisions on financial services, electronic trade and intellectual property as well as emergency safeguards in case market share of products from one country rise too fast than the first one.

Under the agreement, Singapore will lift tariffs on almost all imports from South Korea, while Korea will do likewise, except for agricultural produce and a few industrial goods. South Korea will phase out import duties on 91.6 percent of Singaporean products over the next 10 years. Based on the agreement, products made in North Korea's Kaesong industrial complex will enjoy the same status as those produced in South Korea, which is expected to help boost

investment in the complex and also means that Singapore will be an efficient stopover to exporting Kaesong products to other countries.

On the contrary, cheap Southeast Asian products can be labeled “Made in Singapore”, which will be a threat to Korean competitor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agreement is expecte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service industry and boost Singaporean companies’ investment here. Korea will have a lot to gain from closer ties with Singapore’s advanced service and financial sectors, while Singapore can capitalize on Korea’s efficient logistics system following the inking of the bilateral free-trade agreement. Aspiring to build up its reputation as a logistics hub of Southeast Asia, Singapore hopes to use Korea, especially its ports in Incheon and Busan, to more easily enter Asia’s third-largest economy and its neighbors, such as China and Japan.

II. Korea’s FTAs with Asian Countries

1. FTAs with China and Japan

(1) Background

Until recently, China, and Japan had not shown much interest in any regional trade agreements, despite the growing fever of regionalism in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attitude of these countries changed: They showed more enthusiasm towar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vember 1999, the three countries

made an official attempt to discuss stronge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during a trilateral summit meeting in Manila. Two years later, in another trilateral summit meeting in Brunei in November 2001, many issues were raised, including the commencement of foreign affairs and finance ministerial meetings among the three countries, a business forum, the development of cultural exchange and human resources, and the enforcement of an information technology (IT) cooperation system. The three countries finally were able to take their first steps toward tr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One year later, then Chinese Premier Zhu Rongji proposed the study of the possibility of a trilateral FTA consisting of China, Japan, and Korea (Northeast Asian Free Trade Area, or NEAFTA) in the summit meeting in Phnom Penh, November 2002. The Trilateral Joint Research Project was initiated and since then has been undertaken by the Development Research Center (DRC) of the China State Council, the Japan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NIRA) and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This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on a step-by-step basis, examining the “Economic Effects of a Possible Free Trade Agreement among China, Japan and Korea”. The research results were reported at the trilateral meeting in Bali, October 2003 and then a study for sectoral impacts and policy of an NEAFTA is being undertaken in 2004. The policies of each of these three countries in terms of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n are described separately as follows. As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Korea and China grows significantly, government officials and economists find it more and more necessary to form a free trade agreement to strengthen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2) A FTA with Japan

Since the late 1990s, Japan has also shifted its trade policy toward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under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of GATT/WTO. Japan has been participating in promoting regionalism and establishing FTAs with major trading partners. This policy eventually gave birth to the Japan-Singapore FTA in January 2002. This is the first-ever FTA for Japan, which not only removes tariffs on trade in goods and servi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also reinforces cooperation on a wide range of economic activities, including investments.

Under this agreement, more than 94 percent of Japan's trade with Singapore, covering more than 3,800 items, would be free from tariffs. On top of tariff reductions, the FTA includes the liberalization of investment and services, the harmonization of competition policy, and 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With an FTA, Japan would open up additional more than 30 sectors to investment from Singapore. The agreement also covers the promotion of cooper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and information technology, while calling for cooperation in human resources and academic exchange. On March 16, 2004, Japan reached a final agree-

ment on a bilateral FTA with Mexico, ending nearly 16 months of hard negotiations. With such an agreement, which will take effect in January 2005.

Japan was especially hastening discussions on an FTA with ASEAN for fear of losing its leadership position to China in the East Asian region. Japan intends to lead East Asia's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FTAs with Korea and ASEAN. Japan's recent progressive promotion of FTAs is related to the rise in the Chinese economy.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Korea and Japan have recognized the merits of the FTAs and began the discussion of a bilateral FTA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1998. After that,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d Japan's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began to conduct a joint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a Korea-Japan FTA. This study reveals that preferential tariff elimination under a Korea-Japan FTA may worsen Korea's welfare level and trade balance with Japan and also may cause a reduction in the production of Korea's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Especially, it will have the worst adverse impacts on the parts and components industries, thereby making the Korean industrial structure a labor-oriented one or over-dependent upon the light industries.

However, Korea will improve substantially in the long-term if its competitiveness is strengthened with a FTA. Additionally, the grow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flows into Korea may improve Korea's industrial structure and trade balance with the world. Overall, the joint study

suggests that Korea can benefit from the FTA with Japan, In fact, Korea's third FTA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between Korea and Japan but negotiations have been bogged down over the scope of agricultural exchange.

Currently there are two kinds of obstacles in the Korea-Japan FTA negotiations. First, the affected industries object to, or try to delay the FTA. The manufacturing sectors of Korea and agricultural sectors are among such groups.

(3) A FTA with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first announced its plan to promote FTAs at the end of 2000. China's interest in forming a FTA with ASEAN could be based on such reasons as China's accession to the WTO, the development of a Korea-Japan FTA, the response to the proliferation of regionalism and China's intention to take an initiative in regional integration. ASEAN countries are willing to form a FTA with China because of some economic reasons. With the promotion of a FTA with China, ASEAN could expand the ASEAN FTA (AFTA) to other countries: China will continue to actively pursue the establishment of free trade agreements (FTAs) after starting talks on this with 23 countries in 2005.

The China-ASEAN FTA, which is effective from July 1, 2005 will in fact create the third largest trading block aft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European Union, in the world, with the expected volume of bilateral trade adding up to \$1.2 trillion. China and ASEAN

agreed to eliminate tariffs for 7,445 categories of goods, or a total of 95 percent of overall goods, by 2010.

As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Korea and China grows significantly, the both countries find it more and more necessary to form a free trade agreement to strengthen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The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d China's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have been conducting joint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since March, 2005. China overtook the United States as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in 2004, accounting for more than 20 percent of the country's exports.

Additionally, more than one-third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Korean companies has been going to China since 2003. But, while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amid rapidly increasing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both governments are still reluctant to launch an official government-level talk on the issue. Korea is concerned that a free trade agreement will cause massive inflows of cheap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possibly hurting the nation's fragile agricultural industry. A free trade agreement would open Korea's market to the world's largest producer of agricultural goods, which has the world's biggest agricultural population of 800 million. This would have a huge negative impact on Korea's farming industry.

On the other hand, China has its own concerns. Several high-tech Chinese firms are expected to be threatened by

Korean electronics products, which are already of better quality and will have greater price competitiveness once tariffs are removed. Despite such challenges being posed to both countries,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already become an unavoidable issue.

(4) Trade Relation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nd Feasibility of FTA Among Them

Nowadays, Korea, China and Japan, the three countries in Northeastern Asia are very trade-dependent on each other. Getting a closer economic integration in the Northeast Asia is important not only to these countries but also to many countries that are related to these three countries by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 economic integration consisting of these three countries will form a huge economic unit in this part of the world, and its impacts will radiate out to other countries.

As their export structures are getting similar to each other, their competition in the world market is also getting more intensified. The pressure Korea and Japan may be getting from China as the latter is growing rapidly and fast catching up. However, there is much complementarity between the exports of these countries. That is because the three economies are in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and many of their industries, especially manufacturing industries, show much vertical differentiation. And their intra-regional trade shares have been steadily rising in recent years.

In this context, a trilateral FTA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has been raised as a possible means to cope with the expansion of the European Union and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In view of the growing importance and mutual trade-dependence of their economies, and the fever on free trade areas in Asia, it is quite natural for Korea, China, and Japan to consider tighter integration of their economies. Currently, Japan has been undertaking official negotiations on FTAs with Korea, Chile, Malaysia,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Japan is also having talks with Thailand after carrying out a study of closer economic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2. A FTA with ASEAN

Korea and the ASEAN held their first round of official talks for a joint free-trade agreement from Feb. 23 to 25, 2005 in Jakarta, agreeing to eliminate tariffs on at least 80 percent of all goods by 2009, through negotiations. This first round sprang from a decision at the Korea-ASEAN summit held last November in Vientiane that the sides would begin official negotiations to conclude a free-trade deal within two years from 2005 in accordance with the "Joint Declaration on Comprehensive Cooperation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Korea."

Korea and ASEAN aim to maximize the potential of their economic relations, which calls for expanding trade and investment, pursuing substantial liberalization in such areas as goods, services and investment through a bilateral FTA.

Korea feels pressured to quickly secure the ASEAN market, its fifth-largest trade partner. A report from the Korea-ASEAN FTA Experts Group Meetings held from March to August, 2004 underlines that the two sides need to expand trade and investment and pursue substantial liberalization in areas such as goods, services and investment through a free-trade agreement to maximize the potential of Korea-ASEAN economic relations. Until now, Korea and ASEAN have five free Trade negotiations, The last one was held on Sep. 6-9, 2005 in Seoul. The both partners are scheduled to hold another summit on Dec. 12, 2005, by which time an agreement could be reached ahead of formal ratification. They also agreed to begin talks on investment and services early next year and conclude the negotiations by the end of 2006.

The three countries made an official attempt to discuss stronge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during a trilateral summit meeting in Manila in 1999. Three years later, then Chinese Premier Zhu Rongji proposed a study of the trilateral FTA during the ASEAN+3 summit meeting in Phnom Penh, November 2002. Since then, the Trilateral Joint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to examine the economic effects of an FTA consisting of Korea, China, and Japan (NEAFTA). The research results were reported in the trilateral meeting in Bali, October 2003. There are also ongoing formal and informal discussions on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SEAN+3 (i.e., ASEAN plus Korea, Japan, and China), which could turn into an 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Japan also sought to create an ASEAN+3 Free Trade Area linking up China, Korea and the 10 ASEAN countries. Japan had an aim to obtain a consensus among the 13 countries under the ASEAN-plus-three framework, as it showed expressively in a summit meeting in Cambodia, November 2002. Japan appears to have a more ambitious vision of establishing an East Asian Free Trade Area well before 2010. Japanese government would consider this to take advantage of an integrated market of 2 billion people, encompassing Japan, Korea, and ASEAN, as well as China, Hong Kong, and Taiwan. The grouping, dubbed "ASEAN plus five," would represent a third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would seek to liberalize trade and investment in East Asia's vast markets. It would also aim to offset the economic challenges posed by the European Union and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 Japan hopes that the integration should take place well before 2010, the deadline for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forum to liberalize trade under the so-called Bogor declaration.

III. Conclusion

Korea which relies heavily on external markets, forging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with its trading partners is not an option but a must. Today, regional economic blocs, which have emerged in parallel with the globalization trend, penalize a country that has no bilateral trade deals with them. Keenly aware of this harsh reality, Korea has been stepping up efforts to enter into free trade agreements

with its trading partners. the FTA with Singapore is welcomed more widely than the one with Chile, which was met with strong protest from local farmers due to fears that the market would be flooded with cheap imported products.

The Korean government would promote its FTA policy in the following way. First, Korea has made efforts to establish FTAs with neighboring Asian countries with Japan, China, and ASEAN. China and Japan have sought to create an ASEAN+3 FTA. There are also ongoing formal and informal discussions on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SEAN+3. However, whether Korea will choose a bilateral FTA mode (by which Korea would try to conclude FTAs with China, Japan and ASEAN, separately) or a multilateral FTA mode (a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or an ASEAN+3 FTA) remains to be seen.

Second, Korea is trying to include the Kaesong provision in the future FTAs negotiations, The Kaesong provision,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FTA with Singapore, might be expected to further complicate ongoing FTA talks with Japan, China and ASEAN. The Kaesong provision aims to permit preferential duties for products produced in the North Korean industrial complex in Kaesong, with the products being treated the same as those made in South Korea. About half a century after the ceasefire of the Korean War in 1950, the two Koreas are trying to help each other in a meaningful way toward mutual cooperation and compensation. But the mutually favorable treatment

might generate legal problems. For example, both Koreas treated their trade as domestic trade rather than international trade without applying any tariff.

In a sense, it might be an outright breach of the WTO rules under the equal treatment principle of the most favored nation (MFN) clause, especially for South Korea. South Korea attaches a “made in (South) Korea label” for the North Korean products manufactured in Kaesong, in a breach of the WTO rules of origin. According to that point of view, to solve such legal conflicts, admitting North Korea into the WTO structure and having the two Koreas sign a free trade agreement (FTA) would be a best possible alternative. However, Current international law, including WTO Rules has ignored or neglected the special status of divided nations. I think that because such part of international norms as can be applied to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still vacuum, there leaves room for the settlement through compromise between or among negotiating parties to a FTA.

Of course, North Korea’s accession to the WTO would not create any conflict with South Korea’s legal system which defines North Korea as a rebel group than a sovereign state. And the WTO permits the scheme of FTA among its members a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MFN which regulates that any WTO members shall stent equal treatment to the other members.

Countries setting up a FTA are allowed to use different rules of origin for products traded under their free trade

agreement. the agreement establishes a harmonization work program, based upon a set of principles, including making rules of origin objective, understandable and predictable.

Bilateral FTAs, for examples, Korea-Singapore FTA and multilateral FTA such as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re good examples of the exception to the WTO MFN principle. After making North Korea a member of the WTO first. South Korea can keep extending the non-tariff policy for North Korean imported products under the scheme of the FTA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is admissible by the WTO standard. Additionally, within this scheme of FTA,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able to avoid the opposition or criticism of other countries regarding the origin of the products made in the Kaesong Complex into the South Korea.

Considering such advantages as can be obtainable through the North Korea's accession to WTO, the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encourage the open door policy and reforms of the former, which currently seems to show a slow but gradual transition into an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opened state.

The above-mentioned situations with which South and North Korea are confronted, form a striking contrast to those surrounding China and Hongkong, Macao and Taiwan.

※ **Keyword** : **Tariff Concession, FTA, rule of origin, Kaesong Complex Provision, Service Trade**

목 차

국 문 요 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29
제 1 절 연구의 목적	29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1. 연구의 범위	31
2. 연구의 방법	32
제 2 장 WTO체제와 FTA: 보편주의와 지역주의	35
제 1 절 의의 및 체결목적	35
1. 의 의	35
2. FTA의 체결 목적	37
3. FTA와 양자간투자협정의 관계	38
제 2 절 보편주의와 지역주의의 관계	39
1. 지역적무역협정의 심화	39
2. 보편주의와 지역주의의 상호보완성 여부	43
제 3 절 WTO규범과 FTA	47
1. WTO의 諸원칙	47
2. 지역적무역협정에 대한 GATT/WTO의 法源	53
3. WTO의 지역적무역협정기준의 한계	57
4.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의 FTA	60
제 4 절 분단국 및 동일국가내부의 상이한 관세 영역간 무역과 WTO 규범 및 FTA	65

1. 남북한 무역거래 대우와 WTO 및 FTA	65
2. 중국 및 홍콩·마카오간의 경제제휴협정(CEPA)	78
제 3 장 한국의 FTA체결현황과 전망	85
제 1 절 한국의 FTA 추진정책	85
1. 무역정책의 전환	85
2. 주요 국가와의 FTA 추진경과	86
제 2 절 한국이 체결한 FTA의 내용분석	87
1. 한국·칠레 FTA	87
2. 한국·싱가포르 FTA	91
제 3 절 추진중인 주요 국가와의 FTA	97
1. 일본, 중국 및 ASEAN과의 FTA	97
2. 한국·미국 FTA	112
제 4 절 전 망	117
제 4 장 FTA의 주요 조문과 전략	119
제 1 절 FTA의 주요 조문 분석	119
제 2 절 상품시장접근을 위한 자유화 및 원활화	126
1.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관세양허안 작성	127
2. 비관세장벽의 철폐	133
3.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조치	135
4. 반덤핑 및 상계관세	136
5. 통관절차	138
6. 원산지 규정	139
7.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154
8. 표준관련조치 및 기준·인증의 상호인정(MRA)	155

제 3 절 국경간 서비스무역과 투자	157
1. 국경간 서비스시장의 개방	157
2. 투자의 대우 및 보호	162
3. 전기통신서비스	171
4. 전자상거래	172
5. 투명성	186
6. 인적이동의 자유화	186
7. 경쟁정책에 관한 정보교환 또는 조화	189
제 4 절 지적재산권의 보호	190
제 5 절 정부조달	196
제 6 절 양국간 협력	197
제 7 절 분쟁해결	199
제 5 장 미국의 FTA상의 노동, 환경 및 자본규제금지 관련조항	213
제 1 절 미국이 체결한 FTA의 내용상 특징	213
제 2 절 노동관련 조항	214
1. 의 의	214
2. WTO의 노동기준에 관한 입장	215
3. 미국의 FTA상의 노동관련 규정	217
제 3 절 환경관련 조항	221
1. 의 의	221
2. 자유무역론자와 환경론자의 논쟁	222
3. 미국이 체결한 FTA상의 환경관련 규정	224

제 4 절 자본규제 금지조항	231
제 5 절 결 어	233
제 6 장 결 론	235
참 고 문 헌	24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자유주의적 경제이론에 따르면, 국가간의 무역자유화는 국제적인 분업을 촉진하여 상호간의 국부와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한다)은 두개 이상의 국가들이 자국의 관세 및 수입제한관련 제도를 상호 철폐·자유화하고 서비스 시장 등도 개방함으로써 무역증진을 도모하는 지역간 협정을 말한다. 어떠한 FTA가 체결된 경우 비당사국은 당사국과의 무역에서 역내 당사국간의 무역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무차별원칙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 바,¹⁾ 이는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WTO체제내에 폐쇄적인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것은 상호모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모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90년대말 이후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FTA를 통한 국가간 또는 지역간 경제블럭이 급속히 확대되어 세계무역의 70%가 FTA 회원국간 거래로 이루어질 정도로 FTA는 세계적인 조류가 되었다.²⁾ 현재, 아시아와 미주 지역의 국가들이 가장 활발하게 FTA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들 지역은 모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이어서 향후 우리나라 무역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 지역적 무역블럭은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주의는 그 자체 성격으로 볼 때 비참여국들에게는 차별적인 것이며 상호주의적인 무역상의 우대조치가 오직 참여국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에서 WTO체제상의 자유무역 및 무차별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Sherrilyn S. Lim, “The U.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stering Confidence and Commitment in Asia” *Cal.W. Int’l L. J.* Vol.34(2004), p.301.

2) 지역적 블럭화는 최근에 들어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지역주의의 근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의 지역적 무역협정은 무역과 통화 블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국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블럭 밖의 비참여국에게 불리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Ibid.*, p.302.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2월 16일 한국·칠레 FTA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한국·칠레 FTA가 발효하였고 금년에도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EFTA와는 조약문안에 대한 타결을 보았으며 일본 및 ASEAN과의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바, 향후, 중국과 단독으로 또는 한·중·일 3국간 또는 한·중·일 + ASEAN등으로의 체결확대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

일부 국가 및 지역은 여러 개의 FTA 체결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중전의 이스라엘과의 FTA, 요르단과의 FTA, NAFTA외에 칠레 및 싱가포르와도 FTA를 체결하고 중남미국가를 포괄하는 미주FTA (Free Trade Agreement of Americas)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시대에 지역적무역협정 급속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WTO의 보편주의적 무역질서가 원칙이고 지역적무역협정은 예외일 뿐이라는 WTO와 지역적무역협정의 관계의 설정은 그 타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³⁾ 2003년 현재 162개의 FTA가 발효중이며 그 대부분은 10년내에 체결된 것들이다. 1995년 이후만 하더라도 100개 이상의 FTA를 WTO의 각회원국이 적어도 한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WTO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EC는 그들의 FTA의 망을 확대하고 새로운 FTA를 체결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의 FTA는 관세 및 수량제한 철폐, 내국민대우, 무역규범 등 필수적인 요소외에 투자보장, 조세, 경제협력, 상호인증, 경쟁법 조화 등 체약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과거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제관련 FTA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 산업적 파급효과는 지대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FTA체결에 앞서 개별국가의 상황과 관련 협상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FTA로 인한 향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FTA체결에 보다 신중을 기울여야 할

3) Zakir Hafez, "Weak Discipline: GATT Article XXIV And The Emerging WTO Jurisprudence on RTAs", *N. Dak.L.Rev.*, Vol.79(2003), p.879.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서는 FTA의 주요 조문의 의미를 확인하고 체결된 여러 FTA를 비교분석하는 외에도 현재 추진중인 FTA에서 당사국간의 협상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하게 될 FTA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된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서는 제2장에서 WTO체제와 FTA, 즉 세계무역상의 보편주의와 지역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첫째, FTA의 체결목적이 무엇인가.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주의와 지역주의는 상호보완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각종 논의를 소개하고 아울러 WTO 규범내에서의 FTA의 근거조항들인 GATT 제24조 제4항,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5조 기타 관련조항들을 분석하였다. 그밖에도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의 FTA의 특징, 남북한 무역거래에서의 대우를 GATT/WTO체제내에서 고찰하고 중국과 홍콩·마카오간의 CEPA의 내용과 대만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분단국 경제교류와 관련된 WTO 규범 및 FTA 체결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FTA 체결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첫째, 한국의 자유무역정책으로의 무역정책 전환 및 그 동안의 각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추진경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한국이 체결한 FTA로서 한국·칠레 FTA 및 한국·싱가포르 FTA의 기본적인 내용에 살펴보았다. 셋째, 한국이 추진중인 일본, 중국 및 ASEAN 및 미국과의 무역협정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여기에서는 한·중·일 3국간 무역협정 및 동아시아 FTA로서 ASEAN + 3 또는 ASEAN +5 FTA 등에 대해서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FTA의 주요 조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여기에서는 첫째, 상품시장 접근을 위한 자유화와 원활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는 바, 주

로 상품에 대한 관세양허안 작성, 비관세장벽의 철폐,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통관절차,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표준관련조치 및 기준·인증의 상호인정(MRA) 등을 그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WTO 협정상의 원산지규칙과 주요 FTA에서 나타난 원산지결정의 각종 기준에 관해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최초로 반영한 개성공단조항이 향후에도 일본 및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의 삽입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둘째, 서비스시장의 개방 및 투자와 관련된 제문제를 검토하였다. FTA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란 어떠한 것들이며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 대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하는 외에 서비스시장의 양허,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문제들을 그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고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적용규범, 관세·원산지 문제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FTA의 기타 문제로서 투명성, 인적이동의 자유화 문제, 경쟁정책에 관한 정보교환 또는 조화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부조달, 지적재산권의 보호, 양국간의 협력, 분쟁해결의 틀에 관한 주요 국가들이 체결한 FTA의 내용 및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최근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체결하는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몇 개의 특수한 조항들을 찾아 볼 수 있는바, 노동 및 환경관련 조항이 그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칠레와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최초로 등장한 단기투기성자본(hot-money)규제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FTA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보다 실제적인 체결 사례와 협상과정에서의 당사국간의 논의내용 등도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의 동향과 경제적·정치적 입장이 다른 국가들간의 요구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서는 이론과 실제 모두를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주요 조문에 대하여는 각종 쟁점과 관련된 여러 FTA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FTA는 기본적으로는 WTO체제의 틀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국들에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상호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이 정하여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당사국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상호간의 무역이나 서비스 부문의 구조가 유사한가 차이가 있는가에 따라 크게 내용도 달라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부분을 상대국에게 양보하고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등 타협의 산물로 반영된 내용들도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연구서는 우리나라가 향후 체결한 FTA의 개별 조문에 대한 모범적인 내용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만으로 작성될 수는 없었다. 여러 FTA의 주요 조문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어떠한 당사국간의 협성과정을 통해 반영되었는가 또한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일본 및 미국이 체결하거나 교섭중인 FTA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를 살펴보고 이를 소개하였다.

제 2 장 WTO체제와 FTA: 보편주의와 지역주의

제 1 절 의의 및 체결목적

1. 의 의

자유무역은 적어도 세계의 후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최적의 무역정책이라는 것은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오랫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다. GATT출범이후 국가들은 종전에 설정해놓은 많은 무역제한조치들을 폐지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는 3가지 방식의 무역자유화를 채택하고 있다. 즉, 일방적인 무역자유화, 다자간 무역협상 및 지역적 무역자유화가 그것이다. 최근 지역적 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주로 FTA의 형태를 띠고 있는 바, 많은 국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바,⁴⁾ 특히 지난 10년간 아시아지역의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초 ASEAN(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 그 회원국들만으로 FTA를 체결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다른 많은 국가들도 이러한 FTA의 열기에 동참하고 있다.

FTA라 함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역내 회원국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간의 협정을 말한다. Jeffrey J. Schott의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정의는 잠재적인 자유무역지대 구성국들이 관심을 갖는 의제를 설정하여 협상을 거쳐 FTA를 체결하여 역내의 무역자유화와 무역 호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기타 비역내국가의 참여가 없기 때문에 협상과정이 비교적 신속하고 비교적 쉽게 무역분쟁 해결의 목표를

4)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제3의 경제통합의 조류가 일어났으며 FTA의 체결은 가장 중요한 경제통합 모델의 하나로서, NAFTA, ASEAN 등 국제사회에서 유명한 몇 개의 다자간 FT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양자간 FTA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달성할 수 있다.⁵⁾ 또한, Mirolav N. Jovanovic는 자유무역지대를 국가와 국가간에 무역감면 및 무역 수량제한에 대해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역내 구성국들은 제3국에 대해 각자의 관세 혹은 기타 무역법규를 보유하며 FTA의 기초는 원산지 규칙이라고 하고 있다.⁶⁾

역사적으로는 공통의 이해를 가진 국가들이 무역확대를 위하여 지역적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s Union) 등을 위한 지역적 무역협정이 관세인하를 통한 상호간의 무역촉진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지역블럭화가 목표로 하는 것은 경제시너지효과이다. 인접한 국가들간에 시장을 통합하여 경제규모를 키우는 것이다.⁷⁾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적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FTA가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WTO 중심의 다자간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말에는 세계 무역의 절반이상이 FTA체제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⁸⁾

5) Jeffrey J. Schott, *Free Trade Areas and U.S. Trade Policy*,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1989), p.15.

6) Mirolav N. Jovanovic,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New York: Routiedge, 1992), p.9.

7) 반면에 자유무역에 대한 반작용도 작용하고 있다. WTO출범 등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과 동시에 지역블럭화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체제는 GATT/WTO 중심의 다자간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지역적 무역협정이 존재하고 있었다.

8) http://www.fga.go.kr/fta_world/fta_wor.php?page=2&country_id: 세계가 FTA의 확산열기에 휩싸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FTA는 무역자유화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FTA가 확산됨에 따라 그러한 조류로부터 소외될지 모른다는 조바심이 현실이 되었다. 너무 늦기 전에 FTA를 체결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많은 국가들이 갖게 되었다. 요컨대, 모든 국가들이 점차 세계화시대에 최선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FTA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2. FTA의 체결 목적

FTA를 체결하는 것은 현재 국제무역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추세로서, 그 목적은 아래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1) 시장진입: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것은 정치·군사적 고려가 존재하는 외에 경제적 고려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과 한국을 예로 들면 이들 국가는 모두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미국시장에 진입하고 이를 통해 미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제301조의 무역보복을 하는 것을 회피하기를 희망한다.
- 2) 무역장벽 철폐 및 완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당사국 상호간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는 당사국들이 무역·투자의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며, 이는 당사국간의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수단의 하나가 되며 WTO의 정신에 부합될 뿐 아니라 국제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 3) 양자간 무역관계의 변화: 무역자유지대를 창설한 후에는 당사국 피차간의 무역거래를 비교적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더 긴밀한 무역관계로 나아가게 된다.
- 4) 무역전환(Trade conversion)의 촉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은 양국이 대규모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유발되는 긴장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 특히 미국과 같은 무역적자국 또는 일본과 같은 무역흑자국이 그러하다. 만약 그들과 FTA를 체결할 때,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국가에게는 정치적 이익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 5) 무역차별의 회피: 양국이 FTA를 체결하는 것을 일종의 무역방어 전략으로 삼을 수 있으며 특히 무역경쟁국에 대응할 때 그러하다. 왜냐하면 어느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일정 정도 그 국가와 타국(무역경쟁국)이 FTA를 체결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늦출 수 있어 무역이익을 선점할 수 있다.

3. FTA와 양자간투자협정의 관계

최근에 체결되는 FTA는 투자자유화를 포함하고 있어 흔히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라 불리는 양자간 투자협정과 관계가 문제가 된다.⁹⁾ BIT라 함은 양국간의 투자촉진 및 자유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국제협정으로서 체결 당사국간에는 상호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가 부여되어 양국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제3자에게는 배타적 역내국간 혜택이 허용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투자보장협정이 있다.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과 양자간 투자협정은 어느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타국에 투자를 할 경우 당해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사업적 위험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국들이 투자의 기본조건 및 가능한 보호방안을 규정하는 협정을 말한다.

금융위기이후 한국은 FTA 추진과 더불어, 미국, 일본과 BIT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FTA로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주요 무역과는 BIT를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확대하고자 한다.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요건에 맞는 외국인투자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BIT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판단된다.

BIT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해외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가간체 체결하는 협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투자기업의 재산보호, 투자상대국이 수용 또는 국유화를 한 때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고 보상금의 자유로운 본국송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기업을 대신하여 투자국 정부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9) 1995년 WTO가 발족된 후 OECD에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를 목표로 다자간 투자협정(MCI)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물론 이 다자간투자협정은 OECD 회원국간의 협상이었지만, 이것이 완성된 후에는 모든 국가에게 개발하여 WTO내에서의 협상의 토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다자간투자협정의 협상이 1998년 실패로 끝났다.

BIT가 투자보장협정보다는 포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자보장협정이 체결국의 현존하는 투자관련 법제와 투자허용수준의 틀내에서 투자자의 보호와 투자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 반해 BIT는 기존의 투자관련 법률체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 투자자유화와 투자자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 이를 협정문에 명문화한다.

즉, 투자보장협정은 기존 법률에 근거한 외국인투자 기업의 사후적 보호만을 규정한다면 BIT는 기존 법률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법률제도를 확립하고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분야를 확대하게 된다. 이와 같이 BIT는 투자 보호뿐만 아니라 투자자유화도 포함하고 있어 만약 FTA이 체결되면 투자분야에 대한 협상은 BIT에서의 투자자유화 부분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투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무역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이므로 BIT와 FTA는 서로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 2 절 보편주의와 지역주의의 관계

1. 지역적무역협정의 심화

지역적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은 개별국가들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¹¹⁾ 특히 WTO와 같은 다자간무

10) 한국·일본FTA 협의과정에서, 투자에 대해서는 2003년1월1일에 발효된 한국·일본투자협정이 현재까지 체결된 FTA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양국간투자협정(BIT)의 하나로, 양국간 투자의 보호 뿐만 아니라 투자의 자유화에 대해서도 최고의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의 모든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일본 양국은 공동연구과정에서, 한국·일본투자협정을 한국·일본FTA의 일부로 삼입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왔고, 한국측은 한국·일본 양국간 투자를 더한층 자유화할 가능성을 FTA협상에서 검토할 것을 주장해 왔다. 양국 정부간의 정식협상에서는 한국·일본투자협정을 기본으로 작성된 한국측의 FTA문안을 바탕으로, 한국·일본투자협정의 개선점 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11) 예컨대 칠레와 싱가포르를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는 바, 칠레와 싱가포르 모두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거나 교섭중이며 미국을 자국의 FTA 네트워크에 포함시키는 것이 자국의 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의 수입관세가 낮은 상황이므로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이 FTA를 체결한 주요 동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역체제를 통해서도 충족시킬 수 없거나 그 가능성이 적은 개별국가도 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WTO가 출범한 1995년 직후에도 지역적무역협정의 체결이 급증하였는 바, 이 시기는 WTO가 국제경제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WTO로 인하여 개별국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팽배하였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지역적무역협정이 증가한 것은 WTO를 통한 무역자유화외에 이해관계가 크면서도 입장이 일치하는 국가간의 무역자유화에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적무역협정에 대한 개별국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 각국이 처한 정치·경제적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1985년 체결된 미국·이스라엘FTA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능력을 제고하고 중동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은 북미지역과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MERCOSUR을 체결하였다.¹²⁾ 한편, 지역적무역협정에 대한 다자간체계의 규범이 느슨한 것도 지역적무역협정이 확산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WTO로 통칭되는 다자간 무역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최혜국대우와 무차별이지만 지역적무역협정은 특정조건하에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¹³⁾

그보다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국 시장의 매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농산품 수입 장벽은 높은 편이지만 싱가포르의 농산품 수출국이 아니다. 이들 국가와의 FTA는 미국으로서는 서비스 수출(특히 금융, 통신 분야), 투자의 권리,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계약 참가권을 보장받는 대신 칠레와 싱가포르에게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고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해주는 협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2) Krueger, A.O., "Are 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s Trade-Liberalizing or Protectionists?", *Journal of Business Perspectives*(1999), pp.105-124.

13) 양자간 FTA에는 크게 2가지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는 바, 첫째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배제한 채 서로 양자간 FTA를 체결하도록 자극할 수 있고 둘째, 기타 무역협정과의 차별적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 중 미국은 첫째 잠재위험 요인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WTO 발족이전과 이후의 FTA¹⁴⁾

	WTO 이전	WTO 이후(새로운 FTA)
목 적	정태적인 목적 관세인하 무역확대	동태적 목적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경제개혁
대 상	상품 및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투자, 노동, 환경, 경제협력
무역에 대한 시각	무역의 후생효과 강조 긍정적 효과: 무역창출 부정적 효과: 무역전환	무역창출효과 강조 자유화로 인한 무역창출
무역체제	블록화에 대한 우려 블록간 보호주의와 통상 마찰 우려	자유화 촉진효과 인정 체결국간 무역자유화가 세계 무역 자유화에 기여한다고 보는 시각
체결대상	유사한 경제발전단계에 있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무역자유화 의사 공유국

1990년대부터 WTO의 대다수 회원국은 지역적무역협정의 체결에 열중하기 시작하여 2002년 11월말까지 통보를 제출한 지역적무역협정은 약 250건이었고, 그 중 150건은 1995년 1월 WTO가 성립된 후에 통보된 것으로, 현재 세계에는 대략 170개의 지역적무역협정이 이미 효력을 발생했고, 또한 약 70여개의 지역적무역협정이 이미 발효중이지만 WTO

14) 삼성경제연구소, “FTA시대의 개막- 체결임박한 한국·칠레 FTA의 과제”, CEO in Finance, 제371호(2002.10.23), p.10.

에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일반적으로 2005년 말에는 세계의 지역적무역협정이 300개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¹⁵⁾

제2차 세계대전 이래의 지역적무역협정의 발전을 회고하면 대략 세 개의 통합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1950년대의 유럽에서는 유럽석탄·강철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유럽경제공동체(EC)를 결합하여 하나의 ‘유럽공동체(EU)’로 확대하였고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도 속속 서유럽 모델을 본 따서 관세동맹의 방식으로 경제통합을 진행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비록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국가의 숫자가 많지 않았으나 실험적 성격의 국가간 협력으로 간주하여 큰 기대를 하였었다. 제2단계 통합은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는데, EU, NAFTA가 체결됨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이 그러한 전례를 참고하여 FTA를 체결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1989년에 설립된 아·태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와 1992년에 창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 등이다. 이 시기의 지역적무역협정은 아직까지는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편이성 도모에 치중하고 있었다.

제3단계의 통합은 1990년대 중반기에 시작되었는 바, 이 단계의 절대 다수의 지역적무역협정은 FTA의 형식으로 출현하였으며, 1980년대의 관세동맹과 FTA의 비율이 비슷하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관세통합으로 경제통합을 진행하는 방식이 점차 도태되고 FTA로 대체되는 추세이다. 한편 새로운 시기의 FTA는 계속 무역자유화, 무역간편화, 무역협력의 방식을 향해 발전하는 외에도 더욱 심화되고 확대된 의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발전하여 그 구체적 범위가 투자, 원산지규정, 지적재산권보호, 상호인증, 자연인의 이동, 경쟁정책, 세관업무 협력과 통관절차의 간소화, 금융협력, 전자거래, 정부조달, 환경보호, 노동자대우, 인력자원, 방송, 교육, 여행 등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것이 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제3단계 FTA의 실질적 내용은 전통적 FTA와는 다르다고 하겠다.¹⁶⁾

15)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16) 향후 지역적무역협정의 경제효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FTA는 다중적인 동맹과 합병

2. 보편주의와 지역주의의 상호보완성 여부

지역주의의 확산의 주요배경으로는 상품과 서비스시장의 확대 및 상품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성 등을 통한 FTA의 역내국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들 수 있다. 또한, EU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지역적무역협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FTA의 체결에 적극적인 추세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 WTO의 다자간 합의 과정의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지역적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바, WTO 다자간체제는 회원국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자유화의 속도가 느리고, 개별국가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별국가들의 전략적인 통상정책 확대 등도 지역주의 확산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WTO 발족이전의 지역적 무역협정은 NAFTA, EU에서 보듯이 방어적 성격이 강하였다. 최근의 지역적경제통합체의 대부분은 관세동맹이 아닌 FTA에 의한 것인 바, 동일한 대외관세정책을 취하여야 하는 관세동맹에 비해 FTA는 개별국가들이 관세를 포함하여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신속한 협상과 다양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WTO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지역적 무역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 시장접근의 경우 역내무역자유화 자체와 지역적 무역협정의 체결이 세계무역자유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어 지역적무역협정의 체결이 다자간무역체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7년 USTR 보고서를 통해 지역적 무역협정이 세계무역자유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의 국익확보를 위하여 주요 무역파트너와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도 지역적무역협정의 다자간무역체제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있다. 1999년 일본의 통상백서는 EU, NAFTA 등이 다자간무역체제를 포함한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자간무역체제

의 새로운 추세로 나아갈 것이다. 예를 들어 AFTA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회의에서 인도네시아가 “호주, 뉴질랜드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위한 동맹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지역 경제체가 합병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와 주요 FTA당사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무역측면에서 볼 때 FTA가 다자간무역체제를 저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¹⁷⁾

즉, 지역적무역협정 체결로부터 파생되는 무역창출효과 또는 무역전환 효과로 인하여 수출업자들이 새로운 수출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배타적인 지역적무역협정을 옹호하게 되어 지역적무역협정내 수출업자들은 특혜적 조치를 계속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¹⁸⁾ 지역적무역협정이 다자주의를 보완하기 보다는 지역주의를 공고화하고 다자주의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인가, 혹은 다자주의와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지역주의의 확산은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을 심화시키고 보호주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통합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와 WTO가 지향하는 다자주의가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가 또는 상호대립적 경쟁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WTO 다자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자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현행 협정상위 지역주의 조항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를 대표하는 자유무역시대의 존재와 다자주의를 대표하는 WTO 사이에는 어떤 상호작용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대략 경쟁론과 상호보완론으로 대별된다.

(1) 경쟁론

경쟁론을 주장하는 학자는 자유무역시대의 존재가 WTO의 다자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며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17) FTA는 사실상 WTO체제내에서 국가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FTA라는 이름 대신 양자특혜협정(BPA)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18) 1994년 1월 1일 발효한 NAFTA는 3억 6천만 명이 거주하고 총무역규모는 6조 억달러에 달하였으며 15년에 걸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였는 바, 이로 인해 아시아국가로부터의 무역전환이 발생하였다(Jisu Kim, "Impact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on East Asia : A Korean Perspective," *Am. U. J. Int'l L & Pol'y*, Vol.8(1993). p.881).

- ①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성과로 역내당사국간의 무역장벽을 제거할 수 있지만 역외의 비당사국에 대해서는 장벽을 형성하는 효과를 초래하여 “역내는 자유로우나 역외로부터는 보호를 하는” 현상을 야기하여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모든 WTO 회원국들에 보급되기 어렵게 하고 그 결과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 원칙이 심각하게 잠식되어 WTO의 다자무역체제의 기능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¹⁹⁾
- ② GATT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에 대해 실체적 의무(예컨대, 비회원국의 무역장벽을 확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와 절차적 의무(예컨대, 회원국이 FTA를 체결하거나 가입하면 반드시 통보하고 자유무역지대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의 규정을 두었지만 현재 이미 존재하거나 형성중인 많은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 상당수는 GATT 24조의 의무요구를 소홀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GATT 제24조의 규정도 자유무역지대가 조성하는 사실상의 무역장벽을 적절히 바로잡거나 해결하지 못한다.
- ③ 무역자유지대의 창설은 비록 역내국가의 무역자유화를 촉진할 수 있지만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백한 무역장벽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EU나 NAFTA와 같이 지역경제규모가 클수록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력도 클 수 밖에 없다. 자국의 무역확대를 위협받는 역외 국가들도 상호 경쟁적으로 지역적 경제기구를 조직하여 생존을 추구하면 결과적으로 대다수 WTO 구성원들이 지역경제기구의 결성에 열중하고 WTO가 요구한 최혜국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저해 하게 된다.²⁰⁾

19) Jagdish Bhagwati, *The World Trading System at Risk* (New York: Harvest/ Wheatstheat, 1991), p.58-79.

20) C. Fred Bergsten, “Globalizing Free Trade,” *Foreign Affairs*, Vol.75, No.3(May/ June 1996), p.105-120.

(2) 상호 보완론

상호보완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것이 역내 국가들의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고 무역자유화를 가속화하여 WTO가 추구하는 이상을 조속히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지역경제기구의 창설은 비록 역외의 제3국에 대해 무역장벽을 확대시키지만 1980년대 중반이래로 미국과 EU의 무역분쟁은 양자간 협상을 통해 대부분 해결되었다. 그러므로 2 또는 그 이상의 지역경제기구간의 충돌은 무역협상을 통해 상호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무역체제를 안정적인 것으로 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② WTO는 지역경제기구에 대한 심사와 감독 메커니즘이 없고 또한 지역경제기구의 원칙, 목표 및 내용은 대다수가 WTO의 이념 및 목표와 일치하므로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것이지 상호 모순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 ③ 일부 지역경제기구의 무역자유화 발전수준이 때로는 WTO의 다자간체제보다 높다. 예를 들면 EU의 금융서비스 자유화가 대표적이다. 한편 지역경제체제는 WTO가 규율하지 아니하는 의제를 규율하고 있는 바, 예컨대, NAFTA의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및 투자문제에 관한 규범과 그 시행은 장래에 WTO의 다자간 무역규범을 안출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 ④ 지역경제기구는 GATT1944의 최혜국대우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예외라고 하겠으나 GATT 제24조의 규정은 현실을 고려하여 부득이 두게 된 것인 바, 지역경제기구의 구성국이 비교적 소수이고 흔히 정치적·경제적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에 지역내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성공률이 비교적 높으며 따라서, 지역경

제의 통합은 WTO의 이념을 실천하는 과도단계 혹은 임시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지역경제기구가 갖는 긍정적 효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²¹⁾

제 3 절 WTO규범과 FTA

1. WTO의 諸원칙

(1) 최혜국대우

1) 의 의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s Treatment)라 함은 A국가가 외국(B) 또는 A국 영역내에 있는 B국 국민(자연인과 법인) 또는 B국 상품에 대하여 다른 국가(C) 및 A국 영역내에 있는 C국 국민(자연인과 법인) 또는 C국 상품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혜국 대우를 통하여 A국내에서 모든 국가와 그 국민 및 상품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혜국 대우는 외국인간의 무차별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²²⁾, 따라서 무차별 원칙의 내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²³⁾

21) John H. Jackson, *World Trade and the Law of GATT*, (Virginia: The Michie CO., 1969), p.621-623.

22) 최혜국 대우의 목적은 일방당사국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인하의 효과가 그 후 제3국에 대한 더 많은 관세인하로 인해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혜국 대우는 형평·무차별의 원칙으로서 국가간의 차별대우를 철폐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을 확보하고 일국의 관세를 최저수준으로 수렴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적 발전단계를 무시하고 최혜국대우를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차별을 초래하게 된다. 예컨대,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최혜국대우의 일률적 적용에 따른 실질적 차별 또는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3) 이러한 최혜국 대우는 흔히 우호통상항해조약,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쌍무적인 협정에 그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다자간 무역·경제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협정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최혜국 대우가 인정된다면 굳이 쌍무적인 조약이나 다자간 조약에서 그러한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무차별 원칙은 당사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조약

2) GATT와 최혜국대우 원칙

GATT에서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는 WTO 회원국이 자국영역내에서 동종(like) 상품에 대하여 제3국 또는 제3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관세, 통관, 수출입에 대한 규칙 및 절차상의 모든 혜택을 다른 회원국 또는 그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하여 이러한 최혜국 대우는 회원국의 기본적인 의무의 하나이다.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무역조약을 체결하는 일방의 체결국이 만약 무역, 통상, 항운, 공민법률지위 등의 방면에서 모 일방에게 감면, 특권, 우대 혹은 면제를 부여할 때 기타 체결 당사자도 동일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최혜국 대우를 향유하는 국가가 수혜국이고 최혜국대우를 제공하는 국가는 혜택 공여국이며 우대 표준으로서의 제3자는 최혜국이다.²⁴⁾

일반적인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GATT 24 제1조 제1항은 1) 수출입 및 수출입대금의 국제적 이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과징금, 2)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규칙과 절차, 3) 내국세와 기타 국내규제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회원국은 타국의 원상품 또는 타국에 적송되는 상품에 대하여 부여되는 이익(advantage), 특전(favor), 특권(privilege), 면제(immunity)를 다른 회원국 영역

상의 근거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다. 최혜국 대우의 적용대상은 관련 조약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지만, 경제활동, 수입상품의 취급, 내국세, 관세, 재산의 보호, 권리구제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는 그 동안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끌었던 부분이다.

24) GATT가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에 학자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대략 아래의 몇 가지이다. 1) 만약 각국정부가 무역조치에 대해 일치된 표준을 채택하면 상품의 원산지가 어떤 국가이든 상품의 분배와 생산을 시장 메카니즘에 따라 운영할 수 있고 나아가 경제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2) 최혜국대우가 무역을 자유화하는 효과는 협상의 당사국에 제한되지 않고 그 결과는 제3국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 무역정책 자유화와 일반화를 가속화하여 전면적인 무역자유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3) 국내 정치의 각도에서 말하자면 최혜국대우 원칙의 무역정책은 비교적 투명성을 갖추고 관리가 쉬우며 원산지 규정을 창설하여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관 행정을 간소화 할 수 있다(John H. Jackson, *The World Trading System*, (Cambridge: MA: MIT Press, 1992), pp.134-135).

내의 동종 상품이나 동 영역에 적송되는 동종 상품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GATS와 최혜국대우 원칙

‘서비스무역일반협정’상의 최혜국대우 원칙은 ‘상품무역협정’과 달리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되는데, 회원국은 제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고, 동 부속서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혜국 대우원칙을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조 제2항). 그러나 최혜국 대우 면제조항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개방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쌍무적인 서비스 시장개방의 압력수단이 될 수 있다.²⁵⁾

GATT 1994와 다자간 상품무역협정상의 최혜국대우 원칙이 “관세와 과징금의 부과 및 부과방법,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규칙 및 절차, 내국세와 기타 국내규제”를 다른 회원국의 동종 상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데 비해, 서비스 무역일반협정상의 최혜국 대우원칙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모든 조치(measures by Members affecting trade in services)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내국민대우원칙

1) 의 의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라 함은 조약 당사국이 자국영역 내에서 다른 당사국의 국민 및 상품에 대하여 자국민 및 자국 상품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며 내국민대우조항은 양국간의 우호통상항해 조약 또는 무역협정 및 GATT협정과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에 삽입된다.

25) 예컨대, 미국과 같은 몇몇 회원국은 무조건적인 최혜국 대우원칙이 모든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면,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쌍무적 협상수단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이미 상당 부분이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가 실현된, 통신, 재정, 금융서비스 등에 있어 최혜국 대우 면제를 신청하였다. 특히 특정 서비스 분야에 있어 자국만큼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개도국에 대하여 선진국이 최혜국 대우 면제조항을 남용할 경우, 최혜국 대우원칙에 입각한 서비스규범체제의 근간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며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원칙에도 위배된다.

최혜국대우가 자국내에 있는 외국인간의 무차별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내국민대우는 내·외국민간의 무차별 대우를 의미한다. 최혜국 대우는 국가별 무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며 내국인 대우는 内外 평등을 의미한다.²⁶⁾

2) GATT와 내국민대우 원칙

GATT 1994 제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라 함은 회원국이 수입상품에 대한 내국세 및 기타 내국 과징금의 부과, 수입상품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안·구입·운송·보급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기타 요건(requirements)에 관하여 동종의 국내상품(like domestic products)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국은 자국 또는 자국민에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권리와 특권을 자국 영역내의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나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제3조 제1항은 상기 조건들이 수입상품이나 국내상품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선언하고 있다.²⁷⁾

26) 예컨대, 어떤 수입상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10%, 판매세가 10%를 부과하고 동일한 자국 상품에 대해서는 5%의 판매세를 부과한다면 당해 수입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수입관세는 15%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관세인하는 그 의미가 크게 감소하게 되며, 수입국의 내수시장에서 가격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27) 일반적으로 동종 상품에서의 “like”라 함은 동일한(identical) 또는 대단히 유사한(very closely similar)을 의미한다. 종전에 GATT 패널에서는 동종 상품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데 상품의 물리적 특성 및 품질, 최종용도, 구성성분, 제조방법,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 일반적으로 통일된 관세품목분류기준, 제3조의 목적(국내산업 보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내국세(internal taxes)는 동종 상품은 물론이고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대체가능한 상품”(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s)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내국세 및 기타 과징금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제3조 제2항). 따라서 경쟁상품에 대한 차별과세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내국민대우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하여 국산부품을 일정비율이상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는 local contents requirement의 금지를 내국민대우 원칙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특정 국가의 세법 기타 국내법상의 규정이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에 적용되지만 사실상 또는 실질적으로는 수입상품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3) GATS와 내국민대우 원칙

GATT 및 상품무역협정과 달리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상의 내국민대우 원칙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즉, GATT 및 상품무역협정상의 내국민대우는 각 회원국이 수입상품에 대한 내국세 및 무역관련 국내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의 동종 상품과 무조건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하는 일반적 의무로서 규정된 데 반해, GATS의 경우, 내국민대우는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가 아니라 구체적 수락내용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GATS의 내국민 대우는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양허의 형태로 규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서비스 무역장벽의 상당부분이 국내규제조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상품무역과는 달리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GATT협정’과 달리 GATS협정에서는 내국민대우가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고 양허계획에 포함된 이유는 분야별로 국내규제나 제조상의 차이로 인하여 일반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외국인사업자에 대한 사전적인 거주요건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기타 원칙

1)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원칙

이 원칙은 GATT 제11조 제1항의 후단에 규정되어 있는 바, “어떤 체약국이든 다른 체약국의 모든 상품의 수입이나 수출, 또는 다른 체약국 내에 수출하여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와 내국세 또는 내국과징금을 부과하는 외에 할당, 수출입 허가증 또는 기타 조치로 각종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신설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된다.”²⁸⁾

28) Article XI, para.1 of the GATT.

2) 관세 양허 원칙

GATT의 목적은 모든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있다. 관세와 비관세 조치는 국가가 수출입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두 가지 조치인 바, 여러 가지 명목으로 행하여지는 비관세 조치에 비해 관세조치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것이 공개성과 계량 가능성을 갖추어서 관세의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GATT에 있어서 관세는 유일한 합법적 보호방식이며, 관세를 무단히 낮추어 자유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GATT의 매우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3) 호혜의 원칙

호혜라 함은 이익 또는 특권의 상호간의 또는 상응하는 양허를 의미하며 체결국은 반드시 호혜이익의 기초위에서 관세양허, 상호 이익, 특권 또는 면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목적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다.²⁹⁾ 이 원칙의 정신은 GATT 제28조 제2항 (a)목에 나타나 있다.

4) 무차별 원칙

이 원칙은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 원칙과 제3조의 내국민대우 원칙을 통해 나타나는데, 외국 상품에 대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고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의 원칙

WTO의 분쟁해결 매커니즘에 관한 문건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달성한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서(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에 27조의 조문과 4개 항의 부속서를 포함하는 외에 “서비스무역 일반협정

29) <http://www.hecom.gov.cn/wtofadian/wen/wtolw/lw70.htm>

분쟁해결 절차의 결정”,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서의 실시와 심의에 관한 결정”, “GATT1994의 제6조 협정 또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제5부분에 따라 분쟁을 처리하는 선언” 및 WTO 각 항의 규정 혹은 부속규정 중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종전의 GATT체제하에서도 현행의 WTO체제하에서도 모두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면 우호적인 협상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GATT의 제22조 제1항에서는 모든 체약국이 어떤 기타 체약국의 이 협정의 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동정적인 고려를 하여야 하며 충분한 협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⁰⁾ 이상의 각종 원칙 중에서 이 보고서에서 논의하고 있는 ‘FTA’³¹⁾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최혜국 대우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FTA는 바로 이 원칙의 예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역적무역협정에 대한 GATT/WTO의 法源

(1) 의 의

WTO 설립협정의 전문은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을 달성하는 것을 회원국들의 공동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공동체는 역외국가에 대해 차별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GATT/WTO체제의 최혜국대우 원칙과 무차별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 앞서 설명한 최혜국대우는 WTO체제의 기본원칙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예외가 인정된다. WTO 체제상 GATT 체결당시의 유효한 관세특혜(GATT 제1조 제2항), 관세 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의 결성(제24조), 국가안보를 위한 수출입규제(제21조), 의무면제조항(제25조 제5항) 등에 따른 수출입규제 등에는 최혜국대우의 적용이 예외적으로 면제된다.

30) Article XXII, para.1 of the GATT.

31)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s)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때로는 모두 FTA로 약칭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전자는 경제통합 영역을 강조하고 후자는 협정체결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GATT 출범당시 최혜국대우원칙에 충실한 협정문을 채택할 경우 당시 유럽에서 진행중이던 배타적 경제통합에 참여한 국가들이 다자간무역체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GATT는 최혜국대우조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지역적무역협정으로서의 관세동맹 및 FTA에 관한 GATT협정 제24조의 조항을 채택하였다.³²⁾ 이와 관련한 주요 논쟁은 지역적무역협정이 다자간체제의 기능에 대한 작용을 둘러싼 것이며 기여하게 된다고 보는 입장은 지역적무역협정으로 역내 무역자유화가 전세계 무역자유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며 저해하게 된다고 보다는 입장은 배타적 지역적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야기되는 역외국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무역지대의 GATT/WTO에서의 法源은 대략 아래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GATT1979 Enable Clause(육성 조항)

1979년 11월 28일 GATT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별, 특혜대우, 호혜와 충분한 참여” 결정을 통과시켰는데, 이 결정의 제1조는 “GATT의 제1조에 체약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차별과 특혜대우를 하고 기타 체약국과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발

32) GATT 제24조 제4항은 회원국은 자발적인 FTA를 통하여 FTA 당사국간에 보다 긴밀한 경제적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무역의 자유화를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목적이 동 구성영역간의 무역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그와 같은 영역과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대한 장애를 증대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제4항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켜 제5항은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a) 관세동맹 또는 관세동맹의 형성을 통한 잠정협정과 관련 해당 관세동맹의 창설 또는 해당 잠정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당해 동맹 또는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회원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은 해당 관세동맹의 형성 또는 해당 잠정협정의 체결 전 이들 지역내에서 적용되어온 관세 또는 기타의 상업적 제한의 일반적 수준보다 더 높거나 더 규제적이어서는 아니된다. b) 자유무역지대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위한 잠정협정과 관련, 각 구성영역에서 계속 실시해 왔고 또는 동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또는 동 잠정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해당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국 또는 당해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회원국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또는 기타의 상업적 제한보다 더 높거나 더 규제적인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c) 또한 (a) 및 (b)에 규정된 잠정협정에는 적당한 기간내에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전 정도가 비교적 낮은 국가가 경제적이 어려움과 특수한 무역수요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이들 국가에 대해 가능한 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발도상국이 체결한 특혜무역협정이 GATT 회원국에 대해 무역장벽을 창설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³³⁾

(3) GATT 제24조 제4항

GATT 제24조 제4항은 “체약국들은 자발적인 FTA를 통하여 동 FTA 당사국 경제간의 긴밀한 통합을 발전시킴으로써 무역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각 체약국은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목적이 역내의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체약당사국의 당해 역내와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설정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³⁴⁾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GATT/WTO가 인정하는 지역적무역협정은 최소한 FTA 이상의 경제통합수준에 도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역적무역협정은 GATT/WTO의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이고 자유무역지대는 지역적무역협정의 경제통합유형의 하나이며 또한 이미 GATT의 조문에 의해 합법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자유무역지대는 WTO원칙의 예외하의 일종의 경제실체라고 할 수 있다.

GATT 제24조 제4항에 명문으로 체약국이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할 수 있음을 허용한 것 외에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GATT 제24조의 ‘해석 양해서’중에서도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을 형성하는 경우 체약국은 반드시 GATT의 기타 회원국의 무역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동맹의 구성은 개발도상국 간의 지역무역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경로이고 또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모델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유무

33) “Differential and more favo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the developing countries”, http://www.epawatch.net/documents/doc66_2.doc.

34) See Article XXIV, para.4 of the GATT.

역지대 또는 관세동맹은 높은 관세 장벽으로 기타 비당사국에 대항해서 는 안 되고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에서 각 당사국에 대해 실시하는 관세 혹은 무역 규제의 일반적 제한보다 높아서도 아니된다.

(4)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5조(경제통합조항)

GATS 제5조 제1항은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는 FTA는 상당한 분야 별 적용범위를 가져야 하고 기존 차별조치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욱 차별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러한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분야에서 GATS 제17조(내국민대우)의 의미상 당사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조치를 폐지하도록 규정할 것을 정하고 있다³⁵⁾.

또한 GATS 제5조 제3항은 “지역통합경제FTA의 당사국이 만약 개발도상국이면 반드시 그들 국가의 발전정도에 따라 전체와 개별 산업부문에 대해 GATS 제5조 제1항 제2목에서 규정한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⁶⁾

35) GATS 제5조 제1항은 “서비스무역의 당사국이 경제통합협정을 체결할 때는 그 회원국 간의 무역거래의 편리에 치중해야 하고 이 협정이외의 회원국의 관련 업종부문에 대해서 이 협정보다 높은 서비스무역 장벽을 창설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6) GATS 제5조에서는 GATT 제24조처럼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관세와 쿼터 등의 무역장벽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고 또한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을 서비스무역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도 법관념상 어울리지 아니하며 서비스무역의 경제통합영역이 공동의 서비스무역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GATS 제5조의 입법 초점은 지역적으로 통합한 역내에서의 서비스무역장벽 특히 차별성 조치를 배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는 FTA는 당사자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FTA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FTA이 체결되기 이전에 적용 가능한 수준과 비교하여 각 서비스분야 및 업종에서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장벽의 수준을 높여서는 아니된다(제5조 제4항).

또한, 서비스무역자유화를 위한 FTA의 체결, 확대, 또는 중대한 수정을 하는 때에 회원국이 자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들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구체적 약속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 최소한 90일 이전에 그러한 수정 또는 철회를 사전통보하여야 한다(제5조 제5항). 서비스자유화협정의 일방 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는, 이러한 FTA의 당사자의 영토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FTA이 부여하는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제5조 제6항). 한편, FTA 당사국은 당해 FTA과 당해 FTA의 확대 또는

또한, GATS 제5조의2 규정(노동시장 통합협정, UR협상시 신설)은 회원국이 노동시장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되, 그러한 협정은 (a) 협정 당사국의 국민을 거주 및 근로허가와 관련된 요건으로부터 면제하는 것이어야 하고 (b)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거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공급형태 즉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인력이동을 사전에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GATS 제17조 제1항은 각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과 제한에 따라”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의 동종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즉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따라서, 일단 양허를 약속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양허표상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이 경우에도 GATS의 제11조(이전 및 지불), 제12조(국제수지보호를 위한 제한), 제14조(일반적 예외) 그리고 제14조의 2(안보상 예외)에 따라 허용되는 조치는 할 수 있다.

3. WTO의 지역적무역협정기준의 한계

GATT 제24조 제8항 (b)목은 “자유무역지대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세 영역이 해당 영역 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피차 관세 및 기타 제한성 무역법령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⁷⁾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유무역지대의 당사국들이 각자 국내에서 생산된 상

증대한 수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의 요청을 받은 경우 동 이사회가 입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 이사회는 통보받은 후 작업반을 창설하여 GATS 제5조에의 합치여부를 검토·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서비스자유화협정 당사국은 그 이행에 대하여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제5조 제7항).

37) See Article XXIV, para.8 (b) of the GATT.

품에 대해 피차 관세와 기타 무역제한을 취소할 것을 승낙하고 당사국이 비당사국에 대해 관세와 기타 무역제한을 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지대는 반드시 원산지규정을 창설하여 역외의 비당사국의 수출 상품이 역내의 관세가 낮은 국가에 들어와서 다시 역내의 관세가 높은 지역으로 수출하여 관세를 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³⁸⁾

WTO가 지역적무역협정의 허용기준을 정해놓고 있지만, 그 협정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실제로 해석·적용하는데 문제가 적지 않다. 먼저 역내국가에 대한 조건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서 제한이 제기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해놓고 있지 아니하여 검토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WTO 지역무역위원회(CRTA)에서는 HS 6단위 기준이 95%이상 자유화될 비로소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조건이 충족된다는 입장이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WTO CRTA는 지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며 지역주의의 체결을 WTO CRTA에 사전 통보하는 구체적인 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³⁹⁾ FTA체결의 통보가 늦어지는 경우 현실적

38) Norris C. Clement, Eduardo Zepeda & James Gerber, *North America Economic Integration-Theory and Practice*, (U.S.A.: Edward Elgar Publishing, 1999), p.48.

39) 제7항은 (a)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한 잠정협정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회원국은 즉시 계약당사국(Contracting Parties)에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당사자단이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보고 및 권고를 회원국들에 대하여 행할 수 있도록 동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정보를 계약당사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b) 계약당사자단은 제5항에 규정된 잠정협정에 포함된 계획 및 일정을 동 협정의 당사국과 협의 검토하고, 또한 (a)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적절히 고려한 결과, 동 협정에 의하여 결정 당사국이 의도하는 기간내에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될 가능성이 없거나, 동 기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동 협정의 당사국에 대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당사국이 권고에 따라 잠정협정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때에는 동 협정을 유지하거나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c) 제5항 (c)에 언급된 계획 또는 일정의 실질적인 변경은 계약당사자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단은 동 변경이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협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킨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회원국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단과 협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으로 발효후 시행되고 있는 FTA를 뒤늦게 검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자간무역체제가 그러한 FTA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즉, 지역적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된 후 지역적무역협정 체결이 WTO에 통보된다면 다자간무역체제를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예컨대, 일본·싱가포르 EPA에서는 형식상으로는 농산물 부문도 예외로 하지 않고 있지만, 새로이 관세철폐 대상으로 포함된 품목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농산물분야가 제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협정이 성립된 것은, 싱가포르측의 농산물 생산이 거의 없고, 따라서 농산물무역의 자유화 여부가 문제시 되지 않았던 특수한 예로 볼 수 있으나, WTO규정에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GATT제24조의 지역적무역협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실질상 모든 무역』에 관한 자유화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상 모든 무역』이라는 문언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규정과의 정합성을 분석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즉, 『양적기준』에 의한 정합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주요부문이 자유화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등을 문제시하는 『질적 기준』을 주장하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합한 기준을 만드는 안이 제시되어 있다.

『양적기준』에 대해서도 규범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EU를 비롯하여 지역적무역협정 체결 당사국들의 대부분은 가맹국간 무역의 90%이상이면 양적기준이 충족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해석을 기준으로 하면, 일본-싱가포르EPA는 GATT/WTO규정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으나, 『질적기준』에 의한다면, 농산품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일본측에 의한 해석의 시비는 제쳐두고, 실제로 자유화가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GATT/WTO와의 정합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볼 수 있다.

4.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의 FTA

FTA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체약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FTA⁴⁰⁾는 유사한 경제통합의 한 형태인 관세 동맹⁴¹⁾과 비교해 보면, 모두 회원국이 비회원국들에 대해 무역을 제한하는 역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FTA는 가맹국이 비회원국에 대해 관세를 각각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비해 관세동맹은 비회원국에 대해 공동의 관세를 부과하는 단일관세 주체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⁴²⁾ 이와 같이 FTA체결국들은 역외국에 대해서 체결국 각자가 별도의 관세와 무역정책들을 유지하므로 공동역외관세를 유지하는 관세동맹과 차이가 있다. 더구나 FTA의 경우 회원국이 비회원국에 대해 관세

40) GATT 제24조 제8항 (b)는 “자유무역지대는 구성영역간 동 구성영역 원산품의 모든 무역에 대해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필요한 경우에는 GATT의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1) GATT 제24조 제8항 (a)는 “관세동맹이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2개 혹은 그 이상의 관세영역을 단일관세영역으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 (i) 동맹 영역간의 모든 무역 또는 적어도 동 지역 원산품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필요에 따라 GATT의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의 실질적인 폐지를 위한 목적, (ii) 제9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동맹의 각 구성국의 동 동맹 이외의 지역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2) GATT 제24조 제5항은 회원국간의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를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한 경우 허용하고 있다. a) 관세동맹 또는 관세동맹의 형성을 통한 잠정협정과 관련 해당 관세동맹의 창설 또는 해당 잠정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동 동맹의 구성국 또는 동 협정 당사국이 아닌 회원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은 해당 관세동맹의 형성 또는 해당 잠정협정의 체결전에 이들 지역내에서 적용되어온 관세 또는 기타의 상업적 제한의 일반적 수준보다 더 높거나 더 규제적이어서는 아니된다. b) 자유무역지대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위한 잠정협정과 관련, 각 구성영역에서 계속 실시해 왔고 또는 동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또는 동 잠정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해당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국 또는 해당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회원국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또는 기타의 상업적 제한보다 더 높거나 더 규제적인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c) 또한 (a) 및 (b)에 규정된 잠정협정에는 적당한 기간내에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를 각각 독자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비회원국 상품에 대해 고관세 정책을 취하는 역내 회원국으로부터 간접 수입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형태는 수준에 따라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으로 분류된다.⁴³⁾

그런데 최혜국대우원칙은 GATT 제24조에서 지역적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지역적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역외에 대해 더 높은 무역장벽을 창설하여 지역적무역협정밖의 국가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는 상황은 금지하였다. 기본적으로 세계무역자유화와 지역경제의 목표가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처음부터 각국이 모두 무역자유화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전술을 채택하여 우선 지역적무역협정관계를 체결하여 당사국간에 무역장벽을 낮추고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여 당사국들의 경제발전과 무역증대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한편, 만약 역외 국가들에 대해 더 높은 무역장벽을 창설하지 않는다면 차별대우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역외 국가들이 무역경쟁에서 밀려나게 하지도 않을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그 지역적무역협정은 지역 내·외 국가들 간의 무역발전도 이끌어내어 전차 세계무역자유화의

43) 일본은 최초로 체결한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부터 줄곧 경제제휴협정(EPA)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 EU 등이 FTA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GATT제24조 및 GATS 제5조에서 정의하는』 FTA와 구분하여, 경제제휴협정(EPA)을 『FTA+(무역원활화, 경제제도의 조화, 협력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폭넓은 협정으로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체결 또는 협상중인 FTA를 모두 EPA로 칭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정국가 또는 지역간에 무역이외에 투자 및 인적이동 등 여러가지 분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폭넓은 제휴관계를 규정한 협정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는 FTA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으나, 일본정부에서는 『무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쾌히 나타내기 위해 EP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즉, 『주로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을 FTA라 하고, 『그러한 FTA를 포함한 폭넓은 경제제휴관계를 규정한 협정』을 EPA로 구분하여 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역적무역협정(RTA)의 범주를 자유무역협정(FTA) 및 관세동맹(CU)과 더불어, 경제제휴협정(EPA)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견해마저 나오고 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GATT/WTO가 최혜국대우의 원칙하에 지역적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유이다.⁴⁴⁾

지역적무역협정은 경제통합의 정도에 따라 여섯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 1) 특혜무역약정(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PTA) : 이것은 가장 초기의 경제통합형태로, 당사국 상호간에 특혜성 무역대우를 하고 비당사국에게는 이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무역상의 약정 GATT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종주국이 전통적으로 부속지역에 대해 특혜대우를 하는 등의 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GATT/WTO는 이러한 약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 2)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s, FTAs) : 자유무역지대의 당사국들은 피차간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동의하지만 당사국들은 각자의 대외 관세와 무역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자유무역지대의 당사국들은 공동의 대외 관세나 무역정책은 없다.
- 3) 관세동맹(Customs Union, CU) : 관세동맹의 당사국들은 한편으로는 피차간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동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공동의 대외 관세와 무역정책을 협의하여 수립한다.
- 4) 공동시장(Common Market, CM) : 공동시장의 당사국들은 피차 무역의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하는 외에 생산요소(노동력과 자본 같은)의 자유 유동도 허용한다.
- 5) 경제동맹(Economic Union, EU) : 공동시장의 당사국들은 반드시 경제정책, 심지어 화폐정책까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 6)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 이것은 가장 높은 지역통합의 단계로, 각 당사국간의 화폐, 재정 및 사회 등의

44) John H. Jackson, William J. Davey and Alan O. Skyes,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Cases, Materials and Text*, (U.S.A.: West Group, 2002), pp.453-455.

정책이 완전히 통일되고 또 초국가적인 기구를 창설하여 정책을 주재한다.

GATT 제24조 제4항은 “체약국들은 자발적인 FTA를 통하여 동 FTA 당사국 경제간의 보다 긴밀한 통합을 발전시킴으로써 무역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각 체약국은 또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목적이 구성영토간의 무역을 원활화하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체약당사자의 동 영토와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세우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⁴⁵⁾ 규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GATT/WTO가 인정하는 지역적무역협정은 최소한 FTA 이상의 경제통합 정도에 도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역적무역협정은 GATT/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이고 자유무역지대는 지역적무역협정의 경제통합유형의 하나이며 또한 이미 GATT의 조문에 의해 합법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지역적무역협정은 WTO원칙의 예외하의 일종의 경제실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통합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관세 부 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 경제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창설·운영
FTA (NAFTA, EFTA 등)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완전 경제 통합 (EU :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이후의 EU)				

45) See Article XXIV, para.4 of the GATT.

지역통합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 말 이전에도 주로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와 EC(유럽공동체)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80년 말 이후 냉전체제의 붕괴와 변동환율제 정착에 따른 국제 금융체제의 변화, 무역개념의 확대와 기업활동의 세계화 경향 등 경제활동의 자유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국제경제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정책적 대응방안의 하나로서 1990년대 이후 지역주의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FTA의 역내산 상품에 대한 무관세 조치로 인해 역내국가간 무역이 증대되나, 역외국가는 역내시장에서 역내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게 된다. 또한 FTA체결국들은 역내산 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두어 원산지 충족기준을 강화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특혜를 받기 위한 역외국들의 역내투자가 촉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FTA에 관련하여 양자간 또는 소지역만의 FTA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인 WTO이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FTA 등 지역주의가 다자간 무역체제를 발전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WTO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양자간 또는 소지역내 FTA를 WTO와 합치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FTA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첫째, 역내국간의 역내국산 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서 관세 및 기타 제한적 무역조치들이 제거 되어야 하며(GATT 제24조 제8항), 역내국산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substantially all discrimination)”이 철폐되어야 한다(GATS 제5조 제1항).

둘째, 역외국에 대해서는 상품과 관련, 지역적무역협정 체결이전보다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정들이 더 높거나 제한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정 체결전보다 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의 일반적 수준을 인상시켜서는 아니된다(GATS 제5조 제4항).

셋째, FTA를 형성하는 전단계인 잠정협정은 FTA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이행기간(reasonable length of time)”이 부여되는 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이내에 시행해야 한다(GATT 제 24조 해석에 관한 양해 제3항).

또한 FTA를 체결하였거나, 신규 가입국이 생긴 경우에는 WTO에 통보해야 하며, WTO 지역협정위원회에서 상기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역협정위원회의 검토가 완료되며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일반이사회에 제출되어 합치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바, WTO 출범이후 아직까지 심사가 종료되어 일반이사회에 회부된 사안은 없다. 한편, 지역적무역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WTO회원국은 2/3 이상의 다수결에 의해 동 FTA를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GATT 제24조 제10항).

제 4 절 분단국 및 동일국가내부의 상이한 관세 영역간 무역과 WTO 규범 및 FTA

1. 남북한 무역거래 대우와 WTO 및 FTA

통일전의 동서독간의 각 분야별 교류·협력을 살펴보면, 양독간 무역은 ‘단일경제단위 원칙’ 하에 ‘민족내부거래’로 간주, 무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특혜를 부여받았다. 이는 원산지 문제와는 다소 다른 성격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북한 무역거래가 WTO체제상의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로서의 최혜국대우 등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이 상호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민족내부거래’라고 규정한 남북한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FTA의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별개의 국가로서 가입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면에서는 상호 상대방의 국가성을 인정하였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며, 다른 WTO회원국들 역시 남북한 무역거래를 국가간의 무역거래로 보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남북한 무역거래가 성사되자 1991년 4

월 한국 정부는 남한 쌀과 북한 무연탄 및 시멘트와의 직접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구상무역을 승인하였는데, 미국의 도정협회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미국 정부도 우리측에 남북한 무역거래에 대한 GATT법 적용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⁴⁶⁾

그런데, WTO체제에서 남북한 무역거래의 지위는 최혜국대우를 규정한 GATT 제1조가 남북한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여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GATT 제1조는 WTO회원국이 WTO회원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다른 회원국에게 무조건적으로 즉시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⁴⁷⁾ 따라서, 남북한 무역거래의 경우 WTO회원국인 남한은 WTO회원국이 아닌 북한에게 부여한 무관세 대우 등 특혜를 다른 WTO회원국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남북한은 서로의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며, 실제로 남한은 관련 국내법규정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GATT 제1조에서 규정된 최혜국대우는 GATT는 물론이고 WTO체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러한 GATT의 최혜국대우의 지위는 우선, GATT의 첫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WTO회원국이 가장 우선하여 준수하는 의무가 최혜국대우 의무인 것이다. 둘째, GATT 제1조의 수정은 WTO회원국들의 만장일치를 얻은 경우에만 가

46) 경향신문 1991년 4월 12일; 서울신문 1991년 4월 12일; 내외경제신문 1991년 4월 12일 등 참조.

47) GATT I: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With respect to customs duties and charges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or exportation or imposed on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payments for imports or exports, and with respect to the method of levying such duties and charges, and with respect to all rules and formalities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and with respect to all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III, any advantage, favour, privilege or immunity granted by any contracting party to any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any other country shall be accord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o the like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the territories of all other contracting parties.

능하다. 따라서, MFN대우의무의 변경에 대하여 전체 WTO회원국들의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북한에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남한이 부여한 특혜는 다른 WTO회원국의 동종상품에게 조건없이 즉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GATT 제1조의 내용이다. 남북한 무역거래에 GATT 제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주된 논거는 북한이 GATT 제1조상의 ‘외국’ (any other country) 이 아니라는 점이다.⁴⁸⁾ 이러한 논리를 계속 발전시키면 남북한 무역거래는 하나의 WTO회원국, 즉 남한의 내부거래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남한 헌법상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이 GATT에서 남한의 외국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될 수 있다.⁴⁹⁾ 1969년 『條約法에관한Vienna協約』 제29조에 따르면, 조약은 기본적으로 각 당사국의 전체 영토에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있다. 남한의 헌법 제3조는 영토적 적용범위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GATT가입에 관한 『1967년의 가입의정서』에서 남한의 GATT법상 의무의 영토적 적용범위가 휴전선 이남이라고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았다.⁵⁰⁾ 실제로 1967년 남한이 GATT에 가입한 이후 남한의 영토적 효력에 관한 헌법규정이 GATT 내에서 문제된 경우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GATT법상 권리와 의무는 실제에 있어서 휴전선 이남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휴전선 이북에 대한 남한 정부의 실제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남

48) GATT 제1조가 국가간의 국제무역에 적용되는데, 남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남북한 무역거래에 GATT 제1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에서 외국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남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남북합의서에서 남북한 관계가 정상적인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49) 남한 헌법의 영토조항 (제3조)과 남북한 법적관계에 대하여 장명봉, “남북한기본관계정립을 위한 법적 대응,” 남북한 UN가입과 한반도통일문제에 관한 공법적 대응, (한국공법학회 세미나, 1991); 제성호,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의 개폐문제,” 통일연구논총 (민족통일연구원, 1992), p.263 참조.

50) GATT, BISD 15S/44-46 (1968).

한과 별개의 독립된 통상법체제를 유지하고 있음도 유의하여야 한다. 남한의 영토조항을 충실히 해석하게 되면, 북한의 영토는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남한 헌법의 영토조항을 남북한 무역거래의 바로 당사자인 북한이 달갑게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마침 남북합의서에서 남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남북쌍방이 상대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남북정부의 실질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이다.⁵¹⁾ 남북한 관계에 관한 남북한 양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집약된 남북합의서와 남한의 헌법상 영토조항이 사실상 충돌하는 현실에서 남한의 헌법상 영토조항을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은 적어도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합의서에서 남북한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서 북한이 GATT에서 남한의 외국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될 수 있다. 남북합의서는 남북한 관계를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하는데, 이 특수한 관계는 남북한 양자간의 관계만을 의미함에 유의하여야 한다.⁵²⁾ 또한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을 민족공동체라는 하나의 지붕 밑에서 잠정적으로 양자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⁵³⁾ 그러나, 1민족 2체제의 남북한은 1991년 UN에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는 각기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의 존재를 확인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⁵⁴⁾ 즉, 한반도의 남북한 분단의 현실과 남북한 통일의 이상 사이의 간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남북한이 그들의 관계를 특수한 관계라고 규명한 것이다.

51)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1992), p.41.

52) 김명기, “기본합의서상 잠정적 특수관계의 의미,” 법률신문 (1992년 3월 16일), p.14 참조.

53) 장명봉,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법적 구조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제1권 4호 (국토통일원, 1989), pp.247-248.

54) 이영준, “남북한의 UN동시가입과 한반도의 법적 관계,” 국제법학회논총 제36권 제2호 (1991.12), p.143 참조.

또한, 남북한 양측은 그들 자신의 국제법상 독립된 국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도 않다. 국제사회에서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독립된 국가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많은 국가들과 동시수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사실⁵⁵⁾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엄연히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이 국가가 가입할 수 있는 UN전문기구를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에 동시에 가입하고 있음도 중요한 사실이다.⁵⁶⁾

더욱이, 남한과의 관계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북한의 지위는 GATT 제1조의 적용에서 무의미하다. GATT 제1조에서의 외국은 WTO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한이 UN에 가입한 이상 북한의 국가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은 WTO의 관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국가성과 같이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 (essentially political matters)에 대하여는 WTO 자신이 결정하기보다는 UN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관행이다.⁵⁷⁾ 국제법상 북한이 국가인지의 여부는 북한이 남한과 같이 UN에 가입함으로써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⁵⁸⁾ 북한은 적어도 국제법상 엄연한 국가이다. 이렇게 UN에서 인정된 북한의 국가성은 WTO에서 그대로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WTO체제 내에서 북한은 GATT 제1조상의 하나의 국가, 즉 남한과의 관계에서 외국에 해당한다.

더욱이, GATT 제1조의 적용을 위하여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에서 국가로서 외국이냐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WTO에

55) <http://www.mofat.go.kr/main/top.html>.

56) 남북한 수교현황과 국제기구 가입현황은 다음의 자료 참조: 박영호, 오재완,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간 협력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12), pp.54-55, 158-63.

57) 예컨대, 대만정부의 GATT체약국단 회기의 옵서버 자격 요청에 관한 1965년의 토의에서 당시 체약국단 의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The CONTRACTING PARTIES had followed the policy expressed in Article 86 of the Havana Charter, namely to avoid passing judgement in any way on essentially political matters and to follow decisions of the United Nations on such questions. GATT Doc.SR.22/3, at 21 (1965).

58) 백충현, “남북한 UN 동시가입과 법적 문제,” 국회보, 1991년 9월호, p.64.

서 국가가 아닌 ‘관세영역’⁵⁹⁾ (customs territory)과 ‘국가’⁶⁰⁾ (country; State)를 분별하고 있으며, 국가는 물론 관세영역도 WTO의 회원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⁶¹⁾ 따라서, 서로 다른 관세 및 통상 규정을 유지하고 통상관계의 수행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은, 상호간의 관계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WTO법상 적어도 별도의 관세영역의 관계가 된다.⁶²⁾ 다시 정리하면, WTO의 회원국이 되는 자격은 ‘대내외적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독립성’ (material economic independence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을 보유한 ‘어떠한 조직’ (any organism)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남한과 별개의 정치·경제적 실체를 인정받고 있는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서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될 수 있지만, 별개로 WTO회원국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GATT 제1조상의 국가(외국)가 될 수 있는 것이다.

GATT가 남북한 무역거래에 적용되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남북한 양측에서 최소한 남한이 WTO회원국이라는 사실이다. GATT의 적용에 관하여 북한은 WTO회원국이 아니지만 남한은 엄연한 회원국이라는 점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WTO회원국이 아닌 북한은 당연히 GATT 제1조에 관하여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⁶³⁾

59) FTA는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관세영역을 ‘통상관계 등의 수행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보유한’ 영역이라고 규정한다. GATT XII:1조. 또한 GATT에서는 ‘다른 영역과의 관계에서 별도의 관세 또는 다른 통상규정’(separate tariffs or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이 적용되는 영역을 의미한다(GATT XXIV:2조).

60) GATT XII:1조; GATT I:1조.

61) 홍콩과 같은 국가가 아닌 실체도 WTO회원국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세동맹과 같은 지역통합도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유럽공동체(EC)는 개별적으로 WTO회원국인 유럽국가들로 구성되며, WTO의 창립 회원국이다(GATT XI:1조).

62) 이러한 구분은 중국과 홍콩 및 마카오간의 관계에서 분명해진다. 영국의 관할 아래에 있던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중국과는 별개로 여전히 WTO회원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63)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를 창설하는 하바나 헌장 (Havana Charter) 제98조와는 달리 GATT에는 비체약국에 관한 규정이 없다. 비회원국에 관한 하바나헌장의 규정은 VI장에 존재하는데, GATT체약국은 이 VI장의 규정을 따르도록 요구된다. 즉, GATT체약국은 국내헌법절차에 따라 하바나

남북한의 남북합의서 및 교류합의서에서 남북한 무역거래의 지위가 규정된 점에서도 남북합의서 등과 GATT와의 관계가 검토될 수 있다. GATT의 어느 규정도 회원국이 비회원국과 무역에 관한 일련의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WTO회원국들이 체결하는 무역에 관한 양자조약은 동 조약과 GATT와의 관계를 규정한다.⁶⁴⁾ 그런데, GATT에는 GATT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조약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에는 상호 충돌하는 조약들에 관한 국제법 일반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⁶⁵⁾

특히, GATT에서는 GATT체제 밖에서의 회원국 사이의 협상의 권리와 회원국의 비회원국과의 조약 체결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약은 GATT와 일치하여야 한다. GATT와 다른 양자조약과의

현장을 수락할 때까지 ‘하바나헌장 I장부터 VI장까지 및 IX장의 일반원칙을 행정부 권한의 최대한도로’(to the fullest extent of their executive authority the general principles of Chapters I to VI inclusive and of Chapter IX of the Havana Charter)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GATT XXIX조. 그런데, GATT의 비체약국과 체약국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하바나헌장의 규정이 하나의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하바나헌장 당사국은 MFN의무를 포함한 헌장상의 대우를 비당사국에게 확대적용할 수 있지만, 헌장상의 의무를 비당사국에게 확대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하바나헌장의 비당사국이 당사국에게 특혜대우를 부여하면서 다른 당사국과는 유사한 협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당사국과의 협약은 금지된다. WTO회원국인 남한이 회원국이 아닌 북한에게 GATT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원국이 아닌 북한이 남한과 같은 GATT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64) 예컨대, 미국과 일본의 우호통상항해(FCN)조약 XXI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treaty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goods shall not preclude action by either party which is required or specifically permitted by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즉, 미국과 일본은 GATT상의 의무와 권리를 그들의 양자조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우선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5) 남북합의서를 초안할 당시 남북합의서와 다른 조약과의 관계에 관하여 남북한 쌍방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한측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의 폐회 선언을 통하여 일반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합의서가 기존 條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 두었다고 한다.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1992), p.11. 즉,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남한측은 본 합의서는 쌍방이 이미 각기 체결하여 발효중인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이나 협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라는 규정을 제안하였다.

관계에 관하여 체약국단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 일이 있다.⁶⁶⁾ 즉, GATT체약국단은 양자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결정은 체약국단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다만 문제의 양자조약에 따른 조치가 GATT에 일치하는 여부의 결정은 체약국단의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만일, GATT체약국단, 즉 현재의 WTO각료회의가 문제의 양자조약이 GATT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양자조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에게 그 양자조약상의 의무를 GATT상의 의무와 일치되게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 요청될 것이다. 둘째, 양자조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은 WTO각료회의에게 양자조약에 따른 GATT의 의무위반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면제(waiver)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의 두 가지 경우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WTO각료회의는 GATT 제XXIII조에 기초하여 발동된 절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문제의 양자조약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회원국의 양허와 의무의 이행을 정지하도록 허가할 수 있을 것이다.

GATT체약국과 비체약국의 특별한 무역관계에 대한 GATT체약국단의 다음과 같은 결정은 남북한 무역거래에 약간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우선, GATT체약국단은 미국의 남태평양 군도에 대한 무관세특혜 부여를 승인하였다.⁶⁷⁾ 즉, 국제연맹체제에서 일본의 위임통치를 받고 있던 Marshall, Caroline 및 Marianas 군도가 UN체제에서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들 군도의 경제적 발전과 이들 군도가 과거 일본 통치 아래에서 일본에 대한 수출에 특혜대우를 받았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미국은 이들 군도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무관세대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결국, 체약국단은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관하여 GATT 제1조상의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⁶⁸⁾ 미국과 이들 군도의 신탁통치

66) 미국의 제3국과의 협상에 의하여 쿠바에 대한 특혜관세의 폭이 감소되었을 때, 쿠바는 미국의 조치가 GATT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Margins of Preference, Decision of 9 August 1949, GATT, BISD II/11 (1952).

67) Waiver in respect of the Trust Territory of the Pacific Islands, Decision of 8 September 1948, GATT, BISD II/9-10 (1952).

68) 미국의 이들 군도에 대한 무관세대우의 부여가 미국의 GATT 제1조 의무를 위반

라는 특별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GATT법상 미국은 이들 군도와 별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 것이다. 즉, 이들 군도는 GATT 제1조의 외국(any other country)으로 인정되었다. 국제법상 국가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들 군도가 GATT 제1조의 적용에서 외국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점에서 GATT 제1조의 외국은 WTO회원국은 물론 GATT의 목적상 대내외적으로 국제경제적 독립성을 보유하는 국제법상 실체이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GATT체약국단은 이탈리아의 리비아에 대한 특별관세대우 부여를 승인하였다.⁶⁹⁾ 즉, 이탈리아는 제2차대전 전부터 리비아에게 특별관세대우를 부여하고 있었다. 리비아가 독립하고 리비아에 대한 이러한 특별대우를 중지할 경우 리비아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탈리아는 그 특별대우를 존속시키고자 하였다. 문제는 이탈리아의 리비아에 대한 특별관세대우의 부여가 리비아산 상품에만 국한되고, 다른 체약국의 동종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이었다. 즉, 이탈리아는 리비아와의 관계에서 다른 체약국들에게 대하여 GATT 제1조상의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GATT체약국단은 리비아에 대한 특별관세대우가 지속될 수 있도록 1952년 9월 30일까지 이탈리아의 GATT 제1조상의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셋째, 서독은 일관되게 동서독 무역거래에 대한 국제법상 특별한 지위를 요구하였으며, 결국 다음과 같이 그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우선, 1951년 영국의 토키(Torquay)에서 열린 다자간무역협상에서 GATT체약국단은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의무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GATT 가입으로 독일에서 생산된 상품의 독일내무역의 지위가 수정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렇게 서독은 동독에서 반입되는 동독산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받았다. 또한, 1957년

하는 것은 미국이 이들 군도에 대한 무관세대우를 다른 체약국의 동종상품에게는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69) Waiver for the Continued Application by Italy of Special Customs Treatment to Certain Products of Libya, Decision of 26 October 1951, GATT, BISD II/10 (1952).

유럽경제공동체 (EEC)를 창설하는 로마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독일내 부무역의정서』가 동 조약에 부속되어 독일의 분단된 상황을 고려하여 동서독 무역거래에 특별한 지위가 인정되었다. 참고로, 서독이 동서독 무역거래를 독일내 무역으로 인정한 것과 달리 동독은 동서독 무역거래를 국제무역으로 간주한 사실은 눈여겨 볼만 하다. 이러한 동서독 무역거래의 다른 성격 규명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서독과의 무역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서독은 서베를린에의 통행 보장 등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동독은 같은 언어의 사용과 지리적 인접성 및 동독산 상품의 서독내 무관세 반입 등의 이유로 서독과의 무역거래가 중요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GATT 제1조의 해석과 GATT의 관행을 고려할 때, WTO회원국인 남한이 관련된 남북한 무역거래에 GATT가 당연히 적용되며, 남한의 북한산 상품에 대한 무관세 대우 등 특혜의 부여는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남북한과 같은 분단국가의 GATT협상 지위는 그 동안 WTO 내에서 정식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었다.⁷⁰⁾ 그러나, 남북한 무역거래의 규모가 다른 WTO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WTO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남북한 무역거래는 남북한이 서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고 규명하고 또한 그 명칭을 민족내부거래라고 부르더라도 그 법적 성격에서 GATT가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WTO회원국인 남한이 일반 당사자인 남북한 무역거래에 특히 GATT 제1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50여년의 GATT/WTO 협정의 운용을 볼 때, 남북한 무역거래는 동서독 무역거래에 상응하게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WTO협정상의 '의무면제'(waiver)를 원용하는 것이다. 의무면제는 북한의 동의를 요구되지 않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WTO협정 제IX조에 규정

70) 동서독의 경우는 서독이 GATT에 가입할 당시 가입의정서에서 동서독 무역거래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박노형, “남북한 직무역의 GATT체제에서의 문제점,” 국제경제법연구 1992년호 (국제경제법연구회, 1992년), pp.130-34 참조.

된 의무면제에 따라 남한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최혜국대우의무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 동안 GATT/WTO체제에서 최혜국대우 의무에 대한 면제는 비교적 활발히 허용되었다. 다만, 의무면제가 허용되려면 WTO회원국들 중의 3/4의 찬성이 요구된다. WTO회원국의 수가 140개국에 넘는 현재의 상황에서 100여개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이를 외교적으로 극복하는 수 밖에 없다. 한편으로 남북한 무역거래는 남북한 분단의 역사적이며 정치적인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를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의 기초가 된다고 할 때, 남북한 무역거래의 특별한 지위가 WTO에서 인정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 점에서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이나 정치성을 주장하면서 남북한 무역거래에 GATT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남북한 무역거래에 GATT가 적용되지만 WTO체제에서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 남북한 무역거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보다 현명할 것이다. 남북한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창설이 좋은 대안이라는 주장도 북한이 남한과 진정한 내부시장을 의미하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에 합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남북한은 1991년 12월 남북합의서를 채택, 1992년 2월 19일 발효하였는 바, 남북한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규정하고⁷¹⁾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를 실시하기로 약속하였다.⁷²⁾ ‘이러한 물자교류’는 남북한간 무역거래가 국가간의 무역이 아님을 의미한다.⁷³⁾ 1992년 9월 채택

71)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72) 남북기본합의서 15조.

73) 동조항의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는 ‘trade of goods as domestic commerce’라고 영문으로 표기하고 있다. Economic Planning Boar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tatus and Prospects*, (January 1993), p.20.; 그러나,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국내 문제를 의미하는 ‘domestic’이라는 단어를

된 남북합의서의 『교류협력부속합의서』(이하 ‘교류합의서’라 함)는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국의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정 95.1.3 법률제4858호)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함에 있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협정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제1조)이라 할 수 있다. 이 법 제5조(민족내부거래)는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1995년 4월 그 동안 남북무역에 참여해 온 업체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인증범위를 완화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북무역품목통관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순수한 내국간 거래와는 당연히 다르며, 내국간 거래와 외국과의 거래의 중간영역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이 “무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동법 시행령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항도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외무역

사용하는 것은 남북한 관계의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비록 남북한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북한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에 보다 가까운 특별한 관계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상호간에 국가로서 승인하고 있지 않지만, 남북합의서는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1조), 또한 상대방의 내부분제에 간섭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기 때문이다(2조).

법은 원래 외국과의 무역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보면, 뿐만 아니라 동조 제4항은 동 법에 의하여 북한으로의 물품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 등”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동 제5항에서도 관세법 적용과 관련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명히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순수한 내국거래가 아니라 외국과의 경제교류의 특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동 시행령 제 51조 제3항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3조 제1항에서는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0년 12월 16일 체결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의 협상과정에서도 당초 우리 정부는 ‘내국민 대우 조항’을 넣으려고 했지만, 북측은 이를 수용할 경우 북측의 계획경제체제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최혜국 대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상대방 투자자의 대우에 관한 제3조는 제1항에서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와 그의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 대하여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주는 것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제3조 제2항에서는 “남과 북은 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과 관련한 협정, 지역 및 준지역적 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우나 특전, 특혜를 상대방 투자자에게 줄 의무는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표현을 보면, 남북간의 투자에 대한 대우는 다른 나라와의 “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과 관련한 협정, 지역 및 준지역적 협정”에 의거한 그 나라의 투자자에 부여하는 대우 등이 이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의한 상대방 투자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여기에서도 민족내부거래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8조는 “투자과 관련하여 이 합의서 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일방의 법령이나 남과 북이 당사자로 되는 국제협정 또는 일방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그 법령, 협정 및 계약에서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에 한하여 이 합의서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제8조는 결정적으로 이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민족내부거래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2. 중국 및 홍콩·마카오간의 경제제휴협정(CEPA)

(1) 배경

중국과 홍콩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홍콩의 기업단체인 홍콩총상회가 2000년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제안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유는 홍콩이 경제전환과 전 세계적인 불경기의 이중 타격에 직면하고 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01년 11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중앙 정부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중국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2002년 1월에 쌍방은 중국-홍콩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여 자유무역지대의 명칭을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한 “내지와 홍콩의 더욱 긴밀한 무역협력관계약정(Mainland/Hongkong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로 약칭)”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협정(Agreement)을 ‘약정(Arrangement)’으로 바꾸어 자유무역지대 운용에 탄력적인 여지를 남겼는 바, ‘약정’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및 무역투자의 원활화 등 세 개의 영역을 포괄하고 두 단계의 협상메커니즘, 즉 정책결정 차원의 고위층 협상과 실무차원의 고위 각료급협상을 통하여⁷⁴⁾ 다음과 같은 5개항의 협상원칙에 합의하였다.

74) 朱炎, 『中國大陸建立自由貿易區的進展和對兩岸經貿關係的影響』, p.9.

- 1) WTO의 규칙과 ‘一國兩制’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국가 주체와 그 단독관세영역 간의 무역관계약정이다.
- 2) 양 지역의 무역관계 발전추세에 적응하고 양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과 개선의 요구를 고려하며 현재와 장기적인 목표를 결합하여 호혜와 상호 이익의 효과를 달성한다.
- 3) 먼저 쉬운 것에서 시작하여 어려운 것으로 차례로 추진하는 업무방식을 따른다.
- 4) 양 지역의 정계, 공상계, 학술계 등 영역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한다.
- 5) 공동의 노력으로 이 약정을 적극 추진하여 부단한 진전을 획득한다.⁷⁵⁾

2003년 6월 29일에 중국과 홍콩은 정식으로 CEPA를 체결했고 또 동년 9월 27일에는 6개항의 부속서를 공포했는데, 이 무역약정의 주요 정책목적은 홍콩의 경제를 개선하여 홍콩의 국제무역 중개 역할을 다시 기사회생시키는 것이고 경제면에서의 주요 목적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점진적으로 쌍방간의 모든 상품무역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실질적으로 완화 또는 철폐하는 것이다. 둘째, 점진적으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 무역투자의 원활화를 촉진하는 것이다.⁷⁶⁾ 중국 내지의 입장에서는 홍콩과 CEPA의 창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기 반영되었다.

첫째, 홍콩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여 그로부터 ‘일국양제’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홍콩 경제의 침체와 불안정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홍콩의 중국 귀속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은 홍콩에 대한 정치적 명예를 만회하기 위해 홍콩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방법과 조치를 안출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둘째, 대만과 중

75) 蔡宏明, “CEPA實施後對兩岸四地經貿未來發展之可能影響”, 『經濟情勢及評論』, 2003年 12月, p.28.

76) “陸港簽署CEPA之可能影響分析”, 『一銀產經資訊』, 2003年 9月, p.61.

국의 대만과의 경제관계는 홍콩 다음으로 밀접한 것이어서, 홍콩이 중국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방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면 대만과의 CEPA 체결이 용이해지고 중국의 통일계획도 앞당겨지게 된다. 셋째, 중국이 홍콩과 CEPA를 체결하여 얻는 이익은 홍콩보다는 훨씬 작지만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조만간 대외적으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 하므로 홍콩에 먼저 개방하여 홍콩이 이익을 얻게 할 수 있으며 경험도 축적할 수 있어 시장의 완전한 개방후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중국과 마카오가 “내지와 마카오의 더욱 긴밀한 무역협력관계 약정” 체결은 2003년 6월 20일에 북경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약정’의 내용, 협상원칙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여 최종적으로 쌍방은 “내지와 마카오의 더욱 긴밀한 무역협력관계 약정”은 중국과 홍콩의 약정을 참고한다는 동의하였다.⁷⁷⁾ 2003년 10월 17일 중국과 마카오는 “내지와 마카오의 더욱 긴밀한 무역협력관계 약정” 및 6개 부속서를 체결하게 되어 세 지역간 무역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였다.⁷⁸⁾

(2) CEPA의 주요 내용

CEPA의 중문 정본은 ‘내지’, ‘홍콩’ 및 ‘약정’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중국의 주권적 지위를 부각시키고 CEPA와 FTA를 구분하려 하였다. 그러나 CEPA는 중국과 홍콩 간에 WTO체제하의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에 근거하여 체결한 FTA라고 그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다. CEPA가 중국과 홍콩간의 대부분의 무역과 투자 장벽을 제거하면서 다른 국가의 이 두 지역에 대한 무역투자 장벽을 확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FTA에 관한 WTO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CEPA의 중문 정본의 제2조에서도 CEPA의 체결, 시행 및 개정은 WTO의 규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77) “內地與澳門特區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安排」的磋商正式啓動”，2003年 6月 30日 中國 商務部 뉴스 브리핑.

78) 朱炎, 『中國大陸建立自由貿易區的進展和對兩岸經貿關係的影響』, p.44.

CEPA에서 ‘A’는 Agreement가 아니라 Arrangement인 바, Arrangement는 통상적으로 비교적 임시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주권국가간에는 모두 Agreement의 명칭으로 FTA를 체결한다. 주권국가간에 Arrangement의 명칭으로 FTA를 체결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뉴질랜드와 호주가 1983년에 체결한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CER로 약칭), 뉴질랜드와 싱가포르가 2000년에 체결한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CEP로 약칭), 인도와 스리랑카가 2003년에 체결한 CEPA 등은 모두 Agreement를 사용하였다. 중국이 홍콩, 마카오와 체결한 Arrangement는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의 특별행정구이고 주권이 독립된 국가가 아님을 애써 강조한 것이다.⁷⁹⁾

CEPA 본문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주요한 내용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과 무역투자 원활화와 관련된 것들이며 부속서1(상품무역의 무관세 실시)에 관해, 초기에는 273 항목의 상품을 무관세를 실시, 부속서2(상품무역의 원산지규정) 및 부속서3(원산지증명의 발급과 검사절차)은 상품무역에 관한 것이고, 부속서4(서비스무역부문 개방), 부속서5(“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것이며 부속서6(무역투자 편리화에 관해)은 무역투자 원활화에 관한 보충 규정이다.

1) 상품무역 분야

① 수입관세 무관세

CEPA를 살펴보면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이 원산지인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하고 중국은 2004년 1월 1일부터 273개 항목의 홍콩과 마카오가 원산지인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한다. 그 중 홍콩과 마카오의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항목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중국·마카오 CEPA 무관세 항목 중에는 125개 항목만이

79) <http://www.tier.org.tw/ctasc/issue/FTARTA>.

중국·홍콩 CEPA의 내용과 동일하다. 한편 중국과 홍콩 마카오의 CEPA는 모두 쌍방이 서로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비관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홍콩, 마카오가 원산지인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쿼터를 실시하지 않고 쌍방은 서로 반덤핑, 상계관 제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또한 쌍방이 CEPA의 실시로 인해 부속서1에 열거한 어떠한 상품 수입의 급증을 초래하여 타방이 동종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타방은 서면형식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임시적으로 이 품목의 상품의 수입 특혜를 중지할 수 있으며, 조속히 협상을 개시하여 협의의 도달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 규정

상품무역 특혜의 실시와 관련 특혜가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원산지 규정을 두었으며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a. 제조 혹은 가공절차: 일방의 영역내에서 가공한 후 얻어지는 상품의 기본 특징의 주된 제조 또는 제조과정을 말한다.
- b. 세목 변경: 일방이 원산지가 아닌 원자재를 자신의 영역내에서 가공 생산을 거친 후 획득한 상품을 '상품명칭 및 코드 조정제도' 중에서 네 자리수의 세목분류에 변경이 발생하고 당해 일방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어떠한 네 자리수 세목분류의 변경도 진행하지 아니한 생산, 가공 혹은 제조를 말한다.
- c. 증가 백분비: 완전히 일방에서 획득한 원자재, 부속 조립, 노동가치 및 상품개발 가치의 합계가 수출 완제품의 본선 인도가격(FOB)에서의 비율은 반드시 3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또한 최종적인 제조 혹은 가공 공정절차는 반드시 당해 일방의 영역내에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d. 혼합 표준: 상기의 3가지 기준중 2 또는 그 이상의 기준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확정한다.

e. 기타: 상기의 '제조 가공 공정절차', '세목 변경' 및 '종가 백분비' 외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원산지를 확정한다.

③ 발급 및 검사 절차

홍콩과 마카오에서 중국대륙으로 수출하는 상품이 관세 특혜를 향유하려면 반드시 각각 홍콩 공업무역서와 마카오 특별행정구 경제국이 인가하여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원산지 규정을 순조롭게 실시하기 위하여 쌍방의 발급 및 관리감독 기관은 인터넷 망의 연결과 전자 데이터의 교환제도를 확립하였다.

2) 서비스무역 분야

① 18개 서비스업종의 개방

CEPA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에 2004년 1월 1일부터 모두 18개 서비스 업종을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이 먼저 중국이 WTO 가입과 더불어 행한 시장개방의 약속내용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여기에는 전기통신, 관리자문, 회의 및 전시, 광고, 회계, 부동산 및 건축, 의료와 치과 의사, 소매, 물류, 화물운수 대리, 창고, 운수, 여행, 미디어, 법률, 은행, 증권, 보험 등이 포함된다. 몇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문턱을 대폭 낮추었는데, 예를 들어 홍콩과 마카오의 은행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자산 규모의 요구를 중국이 WTO에 승낙한 20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낮추었다.

②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홍콩과 마카오의 기업을 규율하기 위해 CEPA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는데, 자연인은 당연히 '특별행정구의 영구 주민'이고 법인은 중국 혹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 혹은 설립된 모든 법률실체이다. 홍콩과 마카오의 서비스 제공자가 중국에서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때는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

의 등록 혹은 등기를 하고 또한 유효한 상업 등기증을 취득해야 하며 그 외에도 홍콩과 마카오에서 실질적인 상업경영에 3-5년간 종사해야 한다.

3) 무역·투자 원활화 분야

중국과 홍콩, 마카오는 7개 범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동의했는데, 여기에는 무역투자 촉진, 통관 편리화, 상품 검사와 검역, 품질표준, 식품 범주, 전자 상거래, 법률·법규의 투명성, 중소기업 협력, 중의약산업 협력 등이 포함된다. 각 부문의 협력 내용과 형식을 협의하여 정하는 외에도 향후 새로운 무역투자 원활화 영역을 추가할 수 있다는 데도 합의하였다.

제 3 장 한국의 FTA체결현황과 전망

제 1 절 한국의 FTA 추진정책

1. 무역정책의 전환

한국의 경제구조의 특징으로는 “수출주도형 경제”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한국은 GATT/WTO라는 다자간 틀에 머물러 있었으며 다자간 무역협정에 부합되는 무역정책을 시행하는데 관심이 있었을 뿐 FTA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WTO 출범이후에도 FTA는 계속하여 확산·심화되고 있어 현재 아시아 일부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지역적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다. 과거 북미지역에서 NAFTA가 추진될 당시 국내에서 우리나라의 FTA정책 추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으나, 이후 UR에서 농산물개방을 둘러싼 국내외 사정으로 논의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한국은 FTA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국책연구기관에서 FTA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 한국은 무역정책을 재구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무역당사국과의 FTA체결을 무역정책의 목표의 하나로 간주하게 되었다.⁸⁰⁾ 이에 따라 1998년 11월 칠레와의 FTA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는 바, 한국의 기본적인 전략은 칠레 및 중소규모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그 후 미국, 일본 및 중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과 추가적으로 FTA를 체결한다는 것이었다.⁸¹⁾

80) 1998년 11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대외경제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도 FTA를 추진키로 공식 의결하였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해수부, 농림부, 재정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과 관련기관 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창설하였다.

81) 한국이 FTA를 추진하게 된 원인은 1)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 유지, 2) 지역주의

과거에는 FTA를 통하여 회원국간의 배타적 특혜무역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FTA 체결을 폐쇄적인 무역정책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FTA 체결 자체가 개방적인 무역정책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과거의 FTA는 주로 관세철폐가 주요 내용이었으나 1990년대이후 체결되는 FTA는 관세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지적재산권, 반덤핑, 보조금 등 가장 선진화된 형태의 통상규범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WTO, OECD 등에서 지역적무역협정이 전세계 무역의 자유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실도 한국의 FTA정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⁸²⁾

2. 주요 국가와의 FTA 추진경과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칠레와 FTA추진을 결정하였고, 1999년 12월부터 6차례협상을 거쳐 2002년 10월 24일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FTA가 타결되었으며 2005년 싱가포르와의 FTA도 체결되었다. 그 밖에도 현재 일본, 뉴질랜드, 태국 등과 양국간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1999년에 일본과 FTA공동연구를 시작한 이후 한국·일본 양국은 FTA비즈니스포럼을 결성하여 민간차원에서 양국간 FTA추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2002년 3월 한국·일본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태국과 뉴질랜드와도 FTA체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연구하였다. 태국과의 경우를 보면, 1998년 11월 14일 한·태 통상장관회의에서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3)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4)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5) 동반자 관계의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개혁과 개방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IMF 직후 취했던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FTA와 투자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82) WTO는 FTA가 역내국가로부터의 저비용 수입품이 자국의 고비용 상품을 대체한다면 소비자는 이익을 얻게 되는 무역창출효과를 가져오며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및 기술이전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역내국가들의 무역조건의 개선을 가져온다고 판단하고 있다(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fta.htm).

양국은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1999년 11월 1일 제11회 한·태 무역공동위에서 공동연구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이후 양국정부는 연구기관을 지정,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1999년 7월 방한한 뉴질랜드 수상은 양국간 FTA논의 개시를 제안했고, 1999년 9월 15일 한국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시 경제협력의 긴밀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양국 민간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 3월 외교통상부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까지 50개국과 FTA 협상을 추진할 것이며 그중 적어도 15개 이상의 국가와 공식적인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약 20여개 국가와 FTA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거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불과 1년전 고작 1개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던 것과는 큰 대조가 되는 것이다.⁸³⁾ 2005년 현재 한국은 칠레⁸⁴⁾ 및 싱가포르⁸⁵⁾와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EFTA, 아시아국가로서는 일본, 중국 및 ASEAN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제 2 절 한국이 체결한 FTA의 내용분석

1. 한국·칠레 FTA

(1) 의 의

우리나라가 1998년 칠레를 첫번째 FTA 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무역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칠레가 농산물 수출국이었기 때문이다. 즉, 한국과 칠레의 산업 및 무역구조가 보완적이

83) 1999년 9월 및 11월 한국은 뉴질랜드 및 태국과 각각 FTA에 관한 공동타당성연구를 개시하였으며 한국·태국은 2001년 중간보고서 결과를 완성하였다. 그러한 공동연구보고서는 각각 양국간의 FTA협상을 진행하는데 귀중한 기초로서 활용될 것이다. 한국은 또한 2003년 10월 발리에서의 한국·아세안 정상회담에서 FTA에 관한 공동연구에 합의하였고 멕시코 및 미국과도 FTA 체결을 고려하고 있다.

84) 2003년 2월 1일 협정에 서명하고 2004년 4월 1일 발효하였다.

85) 2005년 8월 4일 공식으로 서명하였다.

고 칠레와의 FTA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⁸⁶⁾ 향후 한국이 거대 경제권과 본격적으로 추진할 FTA에 대비하여 미리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특히 칠레는 이미 10여개의 FTA를 체결한 경험이 있으므로 칠레와의 FTA를 통하여 칠레의 FTA 무역규범 설정에 관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1999년 4월 양국 정부는 FTA의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세 가지 협상원칙에 합의하였다. 첫째, GATT/WTO원칙과 일치하는 FTA 체결. 둘째, 상품, 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분쟁해결 등을 포함하는 모든 부분에서의 자유화. 셋째, 투명성 확보 등이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양국은 6차례의 협상라운드를 가졌으나 제4차 협상라운드에서 민감한 부문들의 관세양허에 관한 의견불일치가 드러났다. 한국은 일부 농산품에 대한 관세양허 적용배제를 제안하였으나 칠레는 예외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한국은 칠레로 수출되는 일부 공산품에 대한 관세양허의 배제를 대가로 하여 일부 민감한 농산품에 대한 관세양허의 적용배제를 얻어내었다. 제5차 및 제6차 협상라운드에서 관세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을 거쳐 2002년 10월 24일 협정문을 타결시켰다.⁸⁷⁾

한국·칠레 FTA는 전문 및 2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상품무역,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범(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

86) 우리나라는 농업부문에 대한 잠재적 산업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산품은 포도, 키위, 토마토 등의 일부 과일에 한정되어 있었다. 포도의 경우 칠레는 지리적으로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국과 계절이 정반대였으며 칠레 역시 한국과의 FTA 체결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한국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한국이 다른 이웃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연결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87) 한편으로 칠레와의 FTA 협상은 농업부문과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농업인들은 첫 번째 FTA가 결국은 국내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유사한 협정의 체결을 불러올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에 칠레와의 FTA 체결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칠레와의 FTA는 4년의 협상을 거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2004년 2월 국회의 비준을 얻어 2004년 4월 1일 발효하게 되었다. 동 협정은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에 실질적인 자유화를 달성하였으며 양국의 경제구조의 분석과 협상의 결과를 보면 칠레 농산물에 의한 한국농업에 대한 피해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는 관련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으며 농업부문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권,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 등)등 포괄적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첫 FTA의 타결로 우리나라도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한국·칠레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통상규범까지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추진될 우리나라 FTA의 모델케이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GATT/WTO의 지역적무역협정에 대한 규정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WTO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소위 WTO 플러스적 조치)까지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통상제도 및 통상환경 개선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칠레 양국은 경쟁법 분야에서 상호 정보 교환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는 바, 이는 WTO에서도 아직 다루고 있지 않는 사항으로서, 우리나라로서는 한-칠레 FTA를 통해 최초로 경쟁법에 입각한 통상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2) 주요 타결 내용

FTA 협상과정에서 칠레측은 모든 농업품목이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제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전기 등 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즉시철폐를 제안하였고 칠레는 승용차, 화물차,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파이프, 주방용품) 등에 대해 즉시철폐를 제안하였으나 양국이 합의한 시장접근양허안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이 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되고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하고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아니한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하는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칠레는 품목수 기준으로 각각 약 96%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 관세를 10년이내에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자유화 비율면에서 균형을 이루

었으며 FTA 체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 우리 나라의 관세양허 카테고리는 농산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농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 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하고 민감도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예외로 설정하거나 계절관세부과, DDA 협상타결후 논의하거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배정하는 품목으로 설정하였다.

기간별로는 즉시철폐, 5년 철폐, 7년철폐, 9년철폐, 계절관세(국국내 비생산기간에 한해 10년 철폐), 10년철폐, 16년철폐, TRQ+DDA이후 논의, DAA논의, 자유화제외 등 10개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총11,170개 품목중 87.2%인 9,74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협정 이행과 동시에 철폐하였는 바, 그 대부분인 9,101개 품목은 공산품이고 농산물 224개, 임산물 138개 수산물 277개 품목이다. 한편 10년 이내 자유화율은 96.2%로 공산품, 임산물 및 수산물의 전 품목과 농산물의 70.3%인 1,007개 품목이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민감품목인 쌀과 사과, 배 등 과일류 일부 민감한 품목을 자유화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킴으로써 농업계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하였으며 쇠고기, 닭고기, 자두, 맨더린, 유장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수요가 많은 계절에는 포도에 대하여 계절관세⁸⁸⁾를 부과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마늘, 양파, 후추 및 낙농제품의 시장개방에 대하여는 진행중인 WTO DDA협상 타결까지 연기하기로 하고 다른 민감한 부분 즉, 어류와 산림제품에 대해서는 10년의 과도기간을 설정하였다.

칠레측 양허안은 즉시철폐, 5년내철폐(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 7년내철폐, 10년내철폐(고무제품, 철강, 섬유·의류 등)⁸⁹⁾, 13년내철폐, 자유화 제외 등 6개로 구분된다. 이중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 즉시

88) 11월-4월까지 수입되는 포도에 대해 관세를 10년에 걸쳐 균등 철폐한다.

89) 협상초기부터 한국은 공산품에 대해 협정발효즉시 철폐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전기동(7년내 철폐)을 제외한 전 품목을 협정 발효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타결하였다. 반면에 칠레측은 6개 양허 카테고리 모두에 제조업 품목을 배정하고 즉시자유화대상 품의 경우 한국의 對칠레수출비중은 약 67%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의 對칠레수출의 5-6%에 해당하는 세탁기와 냉장고는 자유화의 예외로 설정하였다.

철폐비율은 41.8%로 총 품목수 5,854개중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및 기계 등 2,450개 품목이 해당(한국의 칠레수출품의 3분의 2이상에 해당)되는 바,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칠레의 공산품 즉시철폐비율은 30.56%로 낮은 대신에 농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은 일부 특수품목 52개를 제외하고는 전품목을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칠레는 공산품 4,664개 품목을 포함한 5,648개 품목(총 품목수 대비 96.5%)를 10년에 자유화하게 된다.

한편, 한-칠레 FTA 제6장의 Global Safeguards조항에 의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장의 반덤핑 조치와 제7.7조의 분쟁해결 조항에 근거해 협정 발효 후 對칠레 농수산물 수입이 급증할 경우 그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협정문 3.14에 의하여 창설된 '상품무역 위원회'를 통하여 시장접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수단외에도 제4장의 원산지표지, 제8장의 위생 및 검역조치에 의한 간접적인 수입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다.

무역규범 분야에서도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협정을 포함시킴으로써 한국기업들이 칠레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비경쟁적 조치가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경쟁법 분야에서 상호 정보교환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한국 · 싱가포르 FTA

(1) 의 의

싱가포르는 1998년 이후 한국의 10번째 무역국이며⁹⁰⁾ 양국은 2005년 8월 4일 FTA에 서명함으로써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경제관계를 강화

90) 대부분의 동남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양국간 무역규모는 약 87억 달러로 싱가포르는 한국의 제8위 수출국, 제12위의 수입국이었다. 한국의 對싱가포르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선박 및 부품, 컴퓨터 등이다. 이들 5개 품목이 한국의 對 싱가포르 수출의 70%를 차지하여 공산품 중심의 수출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對 싱가포르 주요 수입품목 역시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이다.

하는 교량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의 주요 수출입품목의 무역구조는 상호 중첩되고 경쟁관계에 있다. 한국의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는 투자 실행금액을 기준으로 중계무역항을 활용하기 위한 도·소매업(68%)에 집중, 이외에도 제조업(16%), 부동산 및 서비스업에도 다수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협소한 국내시장을 탈피하고 기업과 정부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자국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노동력 부족, 고임금, 공업용지 부족과 같은 도시국가로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싱가포르의 대한국 투자는 27억 3000만 달러 한국의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액의 3배 규모이다. 전체 투자신고 금액 중 제조업에 17억 달러(69%), 서비스업중 도소매 및 무역업에 2.6억 달러, 전기가스업에 1.2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업체수별로는 도소매 업종에 76개사가 집중 투자, 다음으로 제조업(64개사), 운수창고업(15개사), 금융보험업(12개사) 순이다. 제조업중 제지 및 목재가공업에 3개 업체가 총 10억 달러 정도 투자하고 있으며, 식품업에 2개 업체가 3.7억 달러, 전기전자에 23개 업체가 1.6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2) 싱가포르의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법제도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기 전에도 싱가포르의 평균관세율은 6.5%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실행관세율(applied tariff) 0%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관세품목(tariff line)의 99.9%에 해당되는 품목에 0%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비관세장벽⁹¹⁾의 경우에도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무역자유화정책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관세장벽도 그다지 크지 아니하였으며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는 서비스분야에 대한 제한, 환경정책에 따른 특수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및 고율의 세금 부과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91) 비관세장벽(NTB:Non-Tariff Barriers)이라 함은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자국상품과 외국상품(또는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을 차별하는 직·간접적인 선별적 규제를 말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의 안녕질서, 보건,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예: 마취성 술 및 담배, 씹는 껌, 권총형 담배 라이터 등)하고 있었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일부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고, 정부조달의 경우 ASEAN 국가에 대해서는 미화 4만 달러 미만의 정부 공사에 한해 非ASEAN 회원국보다 입찰가액의 2.5%를 우대해주고 또한 토목건설 공사시 입찰참가 기업의 싱가포르 주식 소유지분에 따라 2.5~5%를 우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비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정부조달분야에서의 차별은 상당히 큰 것이었다. 지적재산권분야에서도 WTO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라 특허법(96.1), 저작권법(98.2)을 각각 개정하였으나 소프트웨어, 비디오, 음악CD 등의 불법제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었다.

(3) 서비스시장 등의 장벽

외국 법률회사의 경우 자국 국내법, 국제법에 대한 서비스만 가능하며 싱가포르 국내법 관련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고 다만 99년 6월 이후 싱가포르의 5개 법률회사와 외국 법률회사간의 합작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및 건축회사의 임원 구성 요건중에서 회장 및 이사회회의 2/3는 국내 관련단체(Professional Bodies)에 등록된 엔지니어, 건축가 또는 토지 전문가이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법인의 파트너 중 최소한 1명과 공인회계사는 싱가포르 거주자이어야 하며 싱가포르 공인회계사청(Public Accountants Board of Singapore)에 등록된 공인 회계사만이 세무컨설턴트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은 철폐되었으나 지분 소유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내의 과반수가 싱가포르인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은행에 대해 새로운 지점 개설, 기존 지점의 자유로운 재배치, 현금자동인출기의 은행주변의 창설, 운영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투자제한과 관련하여, 맥주, 담배, 냉장고, 에어컨 등 11개 업종에 대해서는 제조업 규제법(Control of Manufacturing Act)에 따라 정

부의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또한 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신문 및 출판사의 경우 모든 이사는 싱가포르 시민권자로 제한하고 있다. 인구유입억제정책에 따라 사전 자격증(Certificate of Entitlement)취득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환경보호목적으로 3년 이상된 중고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며 차량 보유 한도도 10년으로 제한한다. 외국인은 토지 구입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영주택공사아파트 및 5층 이하 아파트(flat)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4) 한국·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한국·싱가포르 FTA는 한국·칠레 FTA와는 달리 상품무역에서의 관세·비관세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기술표준(SPS/TBT) 상호인정, 금융감독당국 사이의 정보교환등의 금융 부문을 비롯해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다양한 경제협력사업외에 정보통신, 방송 부문의 다양한 협력사업으로 양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포괄하는 대단히 넓은 범위의 규율내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원산지, 통관철차, 정보통신, 무역구제, 전자상거래, 긴급수입제한 등에 대해서도 대단히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협정에 의하여 싱가포르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도 농산품⁹²⁾과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국은 향후 10년동안 싱가포르 상품의 91.6%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한국·싱가포르 FTA의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92) 이 조항은 칠레와의 FTA와 관련하여 한국의 농업부문으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경험을 살피 포함된 것이다. 싱가포르와의 FTA는 우리 농업계가 '농업을 제외한 FTA체제 구축'차원에서 그동안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제안해 왔던 사안이다. 특히, 앞서 체결된 일본-싱가포르FTA에서도 농업을 자유화의 예외분야로 설정한 바 있었다. 싱가포르가 농업분야 자유화에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는 농업 제외가 가능하나, 이 경우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할 다른 지역과의 FTA에서의 농업개방 문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분야자유화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양국은 이미 대부분 품목에 대해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FTA를 통한 양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로 양국간 무역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와의 FTA는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싱가포르 FTA에서 농업을 제외한 바 있으며 한국과의 FTA에서도 농산물에 관한 규정은 없다. 싱가포르가 농업분야 자유화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의 실행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그 만큼 관세율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입량의 증가에 따른 피해(구조조정, 수입품과의 경쟁 압력 등)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실행관세율과 양허에 따른 관세의 인하 정도에 따라 수입 수요가 달라지게 된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관세율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수 있다. 특히 싱가포르가 거의 모든 품목이 이미 무관세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 양허는 우리 업계에만 일방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현행 관세율이 높으면서 수입량이 많은 품목의 경우 동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효과가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민감한 품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관세율이 높거나 수입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국 상품의 경쟁력이 싱가포르보다 앞서는 품목의 경우 관세율 인하의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다. 싱가포르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 자본재, 부품소재 등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높은 관세를 인하할 경우 국내 가공업체에는 경쟁력 제고 및 수출증가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품목의 경우, 오히려 과감한 관세인하를 통해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양국간의 투자는 어느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과 운송, IT산업 등이 발달한 싱가포르와의 FTA로 금융이나 물류, 통신서비스등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싱가포르의 인구와 내수시장의 규모, 관세를 포함한 개방적인 통상시스템, 산업구조상의 경쟁관계 등으로 볼 때, 양국간 FTA로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의 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으나, 서비스 및 투자면에

서 중장기적 긍정적인 측면과 선진개방에 대한 학습효과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 시장이 열리게 됨으로써 싱가포르 플랜트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진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내 전문 자격사 제도의 상호인증의 길도 열려 전문 자격사의 싱가포르 시장진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은 한국에서 생산된 상품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이른 바 개성공단조항을 최초로 삽입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개성공단 및 對북한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싱가포르는 그러한 상품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데 기착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싱가포르는 상당 부분의 상품들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FTA발효후에도 우리나라 제조업 제품의 수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지만,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수입측면에서는 제3국 상품이 싱가포르를 통해 우회 수입되는 것은 늘어날 전망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동 FTA는 한국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싱가포르회사들의 한국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싱가포르의 선진 서비스 및 금융부문과의 밀접한 유대를 통하여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며 싱가포르는 한국의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⁹³⁾

넷째, 무역원활화를 통해 기업비용이 감소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통관절차, 상호인정체제 구축을 통한 시험·인증절차 간소화로 기업 비용 감소를 기할 수 있다. 또한 금융, 무역과 투자, 정보통신, 인적자원개발, 방송 등에서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양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협력을 통해 양국의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양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게 되었다.

93) Cheng In Kyo and Cho Jung Ran, "The Analysis of Tariff Concession in the Japan -Singapore FTA and Implications for Korea-Singapore FTA", *Economy and Trade Study*, (Kyungshang Nonchong), Vol.18, No.2, p.2.

그리고 금융협력을 통해 양국의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양국 민간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및 영업활동이 증대될 것이다. 한편 무역과 투자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내에 한국센타 설립, 수출보험기관간 협력,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통한 사업자 연결 등의 협력을 통해 무역과 투자가 증진될 것이다. 정보통신 측면에서 상호인정체제 구축, 무선통신기술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 협력 등으로 상대국 및 제3국으로의 정보통신사업 진출이 확대될 것이다. 방송부문은 방송콘텐츠 및 디지털미디어에 관한 정보교환과 사업협력으로 한국 방송물의 싱가포르 및 아시아지역 진출 확대 및 양국의 디지털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이 촉진될 것이다.

다섯째, 양국간 분쟁해결절차의 확립으로 무역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전략적 효과로는 먼저 한국의 동남아 진출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는 동남아 및 ASEAN의 금융, 운송, 물류의 hub로,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하여 동남아 시장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ASEAN과의 FTA추진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한국·싱가포르 FTA를 통해 싱가포르측의 동북아 진출 확대 및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가무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다자무역체제의 보완 및 강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싱가포르 FTA는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제반 경제협력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세계무역자유화에 기여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촉진시키는 보완적 기능을 할 것이다.

제 3 절 추진중인 주요 국가와의 FTA

1. 일본, 중국 및 ASEAN과의 FTA

(1) 의 의

최근까지 중국과 일본은 다른 지역에서 지역주의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지역적무역협정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아시아금융위 기이후 그러나 태도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한국, 일본

및 중국이 마닐라 3국정상회담에서 북동아시아에서의 보다 강력한 경제 협력체제의 구축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 후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세안+3정상회담에서 당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Northeast Asian Free Trade Area(NEAFTA)의 타당성 연구를 제의하였으며⁹⁴⁾ 이에 따라 3국간 공동연구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연구결과가 2003년 10월 발리에서의 3국간 회의에서 보고되었으며 분야별 영향과 정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3개의 북동아시아 국가들은 상호간의 무역의존성이 대단히 높으며 3국간의 밀접한 경제적 통합은 이들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게 무역과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3국의 수출구조는 점점 유사성을 띠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세계시장에서의 3국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이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하고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3국은 각기 다른 발전단계에 있으며 특히 제조업분야에서 상당한 수직적 분화(vertical differentiation)가 형성되어 있고 3국간의 무역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일본 및 중국간의 FTA는 유럽연합 및 NAFTA의 확대에 대처하기 위한 가능한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다.⁹⁵⁾

(2) 한국·일본 FTA

1) 배경

1990년대 말 일본은 GATT/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지역적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무역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무역파트너들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2년 1월 일본·싱가포르FTA의 그 첫 번째 산물이다. 이 FTA에 의하여 일본과 싱가포르 무역의 94% 이상 3,800개 이상의 품목이 관세가 면제되게 되었으며 그 밖에도 투자

94) 당시, 일본측은 동북아 3국간 FTA 보다는 한-일 FTA와 일-중FTA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을 역 제안한 바 있다.

95) Jung Taik Hyun and Jin Young Hong, op.cit., p.22.

와 서비스의 자유화, 경쟁정책의 조화 등도 이 FTA에 포함되었다. 일본은 싱가포르의 일본투자를 20부문이상 추가하여 개방하였으며 금융분야와 IT분야에서의 협력 촉진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2004년 3월 멕시코와의 FTA를 타결시켰으며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⁹⁶⁾ 한편, 일본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의 우위를 중국에게 상실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ASEAN과의 FTA 체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및 ASEAN과의 FTA를 통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하고자 한다.⁹⁷⁾

아시아 금융위기이후 한국과 일본은 FTA의 장점을 서로 인식하고 1998년부터 양국간의 FTA 체결에 관한 논의를 개시하였으며 2002년 3월 22일 한국·일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부기관, 산업계, 학계가 참여한 『한국·일본 FTA산관학공동연구회』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여 그 후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한국·일본간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96) 일본은 일본외무성이 2002년 10월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FTA는 『상품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칙 및 서비스무역의 장벽 등의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서 정의하는 협정』을 의미하고, 경제제휴협정(EPA)은 『FTA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계약국간에 경제거래의 원활화, 경제제도의 조화, 협력의 촉진 등 시장제도나 경제활동의 일체화를 위한 노력도 포함하는, 대상범위가 폭넓은 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체결 또는 협상, 공동연구중인 지역적무역협정의 명칭이 『경제제휴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EPA)』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여 『FTA의 요소를 포함하는(또는, FTA를 주축으로 하는) EPA』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그 의미를 혼동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또는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FTA, EPA라는 용어가 구분없이 사용되거나, 또는 FTA나 EPA 등 지역적무역협정을 포괄 혹은 대표하는 개념으로서 FTA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97) 한편으로 일본은 남미, 중동지역의 국가와도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는 이미 협상을 진행중이다. 예컨대, 칠레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미주지역의 주요국, EU 및 EFTA 등 유럽지역과 FTA를 체결하고, 아시아지역에서도 한국과 FTA를 체결한 후 중국, 인도, 태국 등과 FTA체결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일본으로서도 칠레에서도 일정한 규모의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EPA/FTA체결을 위한 공동연구회를 발족시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중남미지역에서 경제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MERCOSUR도 EU와의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얼마전까지 일본기업이 멕시코 시장에서 당해 온 불이익이 MERCOSUR역내에서도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동 지역과의 EPA/FTA체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일본 FTA는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모색해야 하는 한국과 10년이 넘는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 경제 모두에서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를, 한국은 일본의 비관세 장벽 제거로 인한 수출 증대를 FTA의 직접적인 효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사업이전과 투자 활성화까지 FTA를 통해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일본FTA에 의한 관세철폐는 한국의 후생수준 및 일본과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게 되고 한국의 중화학공업의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한국·일본 FTA의 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단기적으로 한국·일본 FTA체결이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향상과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측은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면서도 보완장치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일본의 수입수량할당제(import quota: IQ) 등 비관세장벽 완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측은 IQ가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것이므로 WTO정신에도 부합되며 IQ를 철폐한다고 해도 한국보다는 중국 등 다른 국가가 이득을 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⁹⁸⁾

2) 추진의 기본방향

한편, 한국·일본 FTA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접근하였다. 한국·일본FTA가 궁극적으로 중국 등 제3국에 문호를 개방

98) 또한 이 연구에 따르면 부품 소재 산업에 가장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한국의 산업구조를 노동집약적인 또는 경공업에의 극단적인 의존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지만,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경쟁력이 강화되어 실질적인 개선을 얻게 될 것이며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여 한국의 산업구조와 무역수지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상기 공동연구에 의하면 일본과의 FTA로 혜택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일본간의 FTA는 농산품에 관한 문제로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하며 FTA로 영향을 받게 될 제조업부문들과 농업부문 등이 그 체결을 반대하거나 연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야 한다는 우리측 언급과 관련, 일본측은 우선 한국·일본 FTA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일본 FTA 추진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 포괄적인 FTA를 추진한다. FTA협상에 농업 등 특정 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전체 산업을 포함하고, 관세, 비관세 장벽, 무역규범, 경제협력을 포괄한다. 즉 포괄적인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 무역자유화를 보완, 촉진하는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깊이 있는 자유화를 추진한다. 관세 철폐는 물론, 비관세 장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시장을 상호개방하며,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한 차원 발전시키는 실질적인 FTA를 추진한다. 셋째, WTO규범에 부합하고 대외적으로 개방된 FTA를 추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GATT 제24조 규정과 현행 WTO/DDA논의에 부합, 역외국가에 배타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FTA, 그리고 향후 동아시아 지역통합 논의의 기준을 지향한다. 넷째, 양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FTA를 추진한다. 무역자유화를 넘어서 구조개혁 촉진 등 경제전반에 긍정적 충격이 되도록 추진하고 양국간 FTA로 인한 이익이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3) 추진경과

한국과 일본은 2003년 12월에 개최된 FTA체결협상 첫 회합에서 2005년까지의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양국간의 FTA체결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유화, 상호이익의 확대, WTO와의 정합성, 포괄적인 FTA체결을 추구한다는 4대원칙을 책정하였다. 또한, 협상범위에 대해서는 일반원칙/분쟁해결, 상품무역(관세, 무역구제조치등), 비관세조치/SPS/TBT, 서비스무역 및 투자(금융, 전기통신 등의 서비스, 인적 이동), 기타 무역관련사항(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 양국간협력(무역투자촉진, 중소기업 등)의 6개 분야로 나누어서 협상을 진행키로 하였다.

이후 2004년 2월에 개최된 제2회 협상에서 상호승인분야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여, 같은해 4월에 열린 제3회 협상에서부터는 총7개 분야에 걸쳐서, 상품양허안을 제외한 양국의 협정문 초안을 토대로 협의가 진행되

었고, 같은 해 8월, 9월경에는 상품양허안을 교환하여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에 열린 제5회 협상에서 한국측은 국내에서 대일무역적자 확대 및 국내기업이 입게 될 타격을 우려하여 일본과의 FTA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격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본의 독특한 유통구조 및 상관행 등 비관세장벽의 해소, 정부조달의 투명성 향상, 상호인증, 단기체제비자의 면제, 김 등 수산물에 대한 수입할당제도의 대폭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일본측은 종래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에 열린 제6회 협상에서도 7개 분야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협상에 있어서 핵심부분인 상품무역분야에 있어서는 양허안의 교환 등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양허안의 제출시기를 계속 조정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쳐, 한국·일본 양국간의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 이후, 2004년 12월에 열린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2005년 1월부터 양국간의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FTA체결협상을 촉진시켜서 2005년중에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하였으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의 농수산물시장 개방 문제를 둘러싼 쌍방의 의견대립으로 협상중단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2005년 6월에 열린 한국·일본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협상재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으나, 고이즈미 일본수상이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검토한다는 회답에 그치는 등, 양국 모두 구체적인 양보나 접근을 하지 않고 있고, 2005년 11월 현재까지도 협상재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한국·일본 양국이 목표로 하고 있던 2005년내의 실질적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주요 쟁점 및 관심사항

한국·일본 FTA협상은 상품무역과 서비스 무역등 분과별로 진행된다. 한국·일본 FTA는 한국·싱가포르 FTA협상과는 달리 경쟁력에 입각하

여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있으며, 관련 연구를 통하여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일본FTA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투자 및 서비스 시장 자유화, 기술 장벽 및 위생 조치 등, 인적교류,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중소기업 협력을 포괄하는 경제협력으로 추구하고,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를 포함한 분쟁해결절차를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양국 무역 통계 분석을 통하여 양국간 무역구조 및 분야별 관세철폐 방안 등 관세 양허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여왔다.⁹⁹⁾ 더불어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 방지와 양국간 무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 마련 방안과 양국간 무역 원활화를 위한 통관 절차의 개선, 전자 무역거래(paperless trading)추진 방안도 협의의 대상이다.¹⁰⁰⁾

그러나, 한국과 일본간의 FTA체결협상은 개시후 2년이 경과한 2005년 11월 현재까지도 시장개방에 관한 협상의 진행방법에 대한 입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상호간에 양허안의 교환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측은 한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광공업품의 관세철폐,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투명성 확보, 지적재산 등의 분야에 관심을 표명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측은 현행 평균관세율(9.2%)이 일본(2.7%)보다 높은 관계로, 관세철폐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한 피해가 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99) 일-싱가포르 EPA는 NAFTA보다 훨씬 광범위한 경제연계협정이지만 일·싱 양국간의 무역에는 농업이 커다란 무역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어서 농수산물중 무관세 품목에 대해서만 자유화 대상품목으로 한정시켜 실질적으로 일본의 민감분야를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한국·일본 양국간 무역에서는 농수산물 무역의 비중이 커서 관세철폐에서 이를 제외하면 WTO 규정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양국의 취약한 분야는 비켜나가 포괄적인 FTA의 산업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의 지렛대로서의 의의를 무색하게 할 것이다.

100) 유통, 투자, 환경, 인력이동 등 전 산업분야에 걸친 진입장벽이 제거될 것이며 원산지 규정, 검역제도 등 수출입 관련 제도도 상호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정부부처별로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및 개방 요구안 마련 양허방식과 관련, 허용분야 열거방식(Positive list)과 금지분야 열거방식(Negative list)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하고 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최혜국 대우 부여문제, 전자상거래 포함 문제 검토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전체품목의 자유화제안 수준을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한국측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농림수산품의 관세철폐, 수산물 수입쿼터(IQ)의 철폐, 비관세조치, 상호승인, 정부조달, 항구적 사증면제의 조문화 등에 관심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수산물 수입쿼터제도는 자원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WTO협정과 합치되는 조치라고 주장해 왔고,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민간의 상관행까지 규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항구적 사증면제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중이지만, 이 문제는 어찌되었건 일방적 조치이기 때문에 FTA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한국·일본 양국간의 FTA체결 협상은 2004년 11월 이후로 중단된 상태인데다, 그 이전의 협상과정에서도 기본원칙과 협상대상분야에 관한 상호간의 입장을 이해하는 정도에 그치거나 논의를 개시한 단계에 불과하고, 각 분야별로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한국·일본FTA의 논의에 있어서 한국산업의 최대관건은 대일수출증대 및 대한 직접투자의 확대여부이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실적은 아시아 경쟁국가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이는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기업의 평가 및 향후 한국에서의 투자전망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일본FTA 체결이 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협정문안의 작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5) FTA체결효과

먼저 일본은 한국·일본FTA가 체결될 경우 역내국가로서 대한투자에 대하여 창출효과와 감소효과를 동시에 갖게 된다. 우선, 원산지 규정, BIT 서비스시장 개방,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협력의 증진, 인적이동 원활화로 인해 투자가 활성화될 수도 있지만, 역내 무역자유화와 관련 규범의 정비를 통하여 시장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로 투자보다는 무역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¹⁰¹⁾ 한국·일본 FTA는 우

101) 일본과는 현실적으로 국내생산비용이 중국 등 주변국가에 비해서 크게 높으며 대

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업종별로 보면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반면, 자동차, 기계, 전자 등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일본 FTA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일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일본 시장 및 제3시장 개척등이 필요하다.

한국·일본 FTA는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양국의 본격적인 대응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동북아에서 가장 구매력이 높은 1억 7천만 인구의 시장과 전세계 GNP의 17%를 차지하는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게 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한국·일본FTA는 대규모 지식을 축적하고 산업 기반을 갖춘 거대선진경제권과의 본격적인 FTA로서 시장확대효과외에도 장기적으로 기업 체질 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고, 외국인 직접 투자(FDI)와 첨단기술 및 지식 이전의 통로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격차를 극복하여 일본의 소득수준에 수렴(converge)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양국기업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나아가서 이를 통한 제3국 공동 진출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일본FTA는 한·중·일 FTA 또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등 더 큰 규모의 경제통합체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작용하며, 또한 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 기술, 정보의 양국간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 “동북아 경제중심”건설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한·중 FTA

중국은 2004년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로서 미국을 앞질렀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총수출의 20%를 넘어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이후 한국기업들의 외국인투자의 3분의 1이상이 중국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적 의존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양

부분의 對 한국투자가 국내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한 한국과 그렇지 아니한 일본간의 FTA를 통한 양국간 무역자유화가 일본기업의 한국에의 투자를 크게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은 양국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FTA의 체결 필요성을 더욱 더 느끼고 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2005년 3월부터 양국간 FTA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왔다.¹⁰²⁾

그러나, 양국간의 급속히 증가하는 경제의존성으로 인한 FTA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아직 이 문제에 관한 정부간 공식적인 협상 추진을 주저하고 있다. 한국은 FTA가 세계 최대 농업인구를 가진 중국의 대규모 농산품 유입으로 취약한 농업부문에 큰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하이테크 분야의 중국회사들이 FTA에 의하여 관세가 철폐된다면 더 큰 가격경쟁력을 갖게 될 한국 전자제품에 의하여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의 FTA는 이제 회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2000년말 FTA 추진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의 양자간 FTA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일본보다는 한국과의 FTA를 선호하는 편이라는 의견이다. 정치, 역사적 문제 외에 경제적 격차가 주요 이유이며, 한국과의 FTA에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일본에 대한 견제와 동아시아 FTA주도권 확보 및 경제적 이유 등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은 2002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세안-중국 간 전면적 경제협력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Association of East Asian Nation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을 체결하고 중국과 아세안 6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이 2010년 이전에, 중국과 아세안 10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에 원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더해)이 2015년 이전에 17억 인구를 포함하고 경제 생산액이 2조 달러에 달하

102)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enefits All(1)”, *China Daily*(2005-03-30). http://english.china.com/zn_cn/business/news/11021613/20050330/12206606.html.

게 되고 무역량이 1조 2,300억 달러에 달하게 될 대형 자유무역지대를 수립하기를 희망하였다. 2003년에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서 개최된 아세안-중국 정상회담에서는 ‘아세안-중국의 평화와 번영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동남아 우호협력 조약’, ‘아세안-중국의 전면적 경제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2004년 11월에 아세안과 중국은 “아세안-중국의 전면적 경제협력 기본협정의 상품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또 제조업 협상을 완료하고 ‘분쟁해결 기제’를 제출하여 장래 FTA의 구체적 내용으로 삼았으며 2005년부터는 서비스무역과 투자내용에 대해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아세안과 중국은 FTA 협상과정에서 일종의 ‘사전수확계획’을 실시했는데, 즉 한편으로 협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실시를 하여 첫 번째의 많은 농어축산품과 일부 공산품을 포함하고 또 중국이 일방적으로 먼저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것이 2004년 1월에 이미 실시되었다.¹⁰³⁾ 또 2004년 11월에 체결된 ‘상품무역 협정’에 의하면 2005년 7월부터 2010년 사이에 전체 상품의 95%에 달하는 7,445종의 상품 대부분에 무관세를 실시하고 일부 민감한 상품은 점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개방된 상품이 중국과 아세안간 무역 상품총액의 약 95%를 차지하고 상품의 개방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경제적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의 ASEAN과의 FTA 체결에 대한 관심은 중국의 WTO가입, 한국과 일본의 FTA추진, 지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대응 및 지역적 통합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한 것이었다. ASEAN 국가들은 몇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였다. 즉, ASEAN국가들은 ASEAN 협정을 중국과의 FTA를 통하여 다른 국가들에게 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원래의 ‘아세안+3(중국, 일본, 한국)’의 대화도 확대추세에 있어 2005년 연말에 말레이시아에서 시범 실시하고 기제를 아세안의

103) 洪財隆, “『中國與東協自由貿易協定』의來龍去脈與政經效應”, 『APEC2004議題論叢』, 台灣經濟研究院, 2005年 3月, 39-40쪽.

10개 당사국과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하는 ‘ASEAN10+3’정상회담으로 확대하고 명칭도 ‘동아시아 정상회담’으로 바꿀 예정이다.¹⁰⁴⁾

(4) 한국·아세안 FTA

한국과 ASEAN은 2005년 2월 제1차 공식회의를 자카르타에서 개최하고 2009년까지 협상을 통하여 모든 상품의 80%이상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한다는데 합의를 하였다. 이 첫 번째 협상은 2005년부터 2년 이내에 FTA를 체결한다는 2004년 11월 개최된 한국-아세안 정상회담의 “Joint Declaration on Comprehensive Cooperation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Korea”에 따라 공식적으로 개시된 것이었다. 한국과 한국의 15번째 무역파트너인 ASEAN은 상품, 서비스 및 투자의 확대를 통한 상호경제관계의 잠재력을 최대화한다는 목표로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초까지는 투자와 서비스분야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고 2006년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데 합의하였다.

(5) 한·중·일 3국간 FTA

한국, 중국, 일본 3국간의 FTA에 대해서는, 1999년11월에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3국의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한 것이 발단이 되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 온 한·중·일 3국의 연구기관은 2003년도의 연구주제를 『한국-중국-일본간의 실현가능한 자유무역권(FTA)의 경제효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3국정부에 대한 정책제언을 포함한 보고서를 2004년 11월에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3국간 FTA의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하여, 3국간 FTA가 생산, 무역, 경제후생의 측면에서 3국 모두에게 커다란 경제후생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3국공통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국의 많은 기업들이 3국간 FTA에 찬성하고 있으며 조기실현을

104) “中共·東協下月起逐步撤關稅”, 『中國時報』, 2005年 6月 28日 A13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의 중장기 산업 정책 및 주요기업의 발전/투자전략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한·중·일 FTA를 체결한다는 명확한 의사표명이 없음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석유화학산업 및 철강산업 등 몇 가지 산업분야에 있어서 과잉생산력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중·일 FTA가 3국공통의 장래의 목표라는 것을 한·중·일 3국이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¹⁰⁵⁾

그러나, 이러한 민간연구기관의 연구 및 경제계의 희망과는 대조적으로, 3국 정부간에는 아직 3국간 FTA체결 또는 공동연구에 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11월에 개최된 한·중·일 3국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주용기(朱鎔基) 총리가 3국간 FTA체결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해 일본은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맹한 상태이므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결단을 유보하였고, 한국도 『공동연구를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회답에 그치고 있다.¹⁰⁶⁾

(6)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협정: ASEAN +3 또는 ASEAN +5 FTA

1) 의 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ASEAN+3국(ASEAN plus Korea, Japan, and China) FTA체결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공식적·비공식적

105)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한·중·일 3국의 경제단체들은 2004년 10월, 『제3회 한·중·일비즈니스포럼』을 개최하여, 『한-중-일FTA』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2005년중에 발족시킬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고, 우선은 민간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 규격의 통일,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실현가능한 부분에서부터 협력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106) 한국, 중국, 일본간의 FTA체결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WTO가입시 약속사항의 이행 확보 및 국내법/제도의 정비가 우선이며, 한·중·일 FTA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과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투자에 대해서는, 2004년 11월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비즈니스환경개선을 위한 정부간 메커니즘』 및 『투자관련 법적기본틀에 관한 정부간협약』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여, 2005년 5월에는 북경에서 3국간 투자협정체결을 위한 제1회 정부간협약의가 개최되었는데, 이것이 3국간 FTA체결을 위한 기반 다지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논의도 진행되어 왔다. 일본은 2002년 11월의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희망을 표시한 바 있으며 더 나아가 홍콩, 타이완까지 포함하는 “ASEAN plus five”안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20억 인구의 통합시장을 형성할 수 있어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지대의 확대움직임에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10년이전에 그러한 안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 역시 ASEAN+3국 FTA안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현재, 우선적으로 일본, 중국 및 ASEAN과 각기 양자간 FTA를 체결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간 즉 한국·일본·중국간 FTA 또는 ASEAN+3 FTA를 체결하는 방향전환을 할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것 같다.

2) 경 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1997년에 시작된 아시아통화위기를 통하여 혹독한 시련을 겪고, 또한 WTO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및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 특히 미주 및 유럽지역에서의 지역경제통합의 진전 상황을 배경으로, 지역내의 협력이 결핍되어 왔다는 점과 미국경제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는 것에 대한 반성의 기운이 높아져 왔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지역내 통합 및 협력강화를 향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지역통합/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로서 제기된 『동아시아(경제)공동체』구상이 최근 수년간 주목을 받아 왔고, 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¹⁰⁷⁾

또한, 2000년 11월에 개최된 제4회 ASEAN+3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에 의하여 창설된 정부관료차원의 협의체인 『동아시아 스터디그룹(EASG)』은, 2002년 12월에 열린 제6회ASEAN+3정상회담

107) 이러한 구상의 발단은 1998년12월에 개최된 제2회ASEAN+3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경제/정치/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서 장래의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 가능성과 그 방안의 협의를 위해 창설된 민간전문가간의 협의체인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이 2001년11월의 제5회ASEAN+3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하여』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에서 EAVG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확인의 의미를 지닌 EASG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장래에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st Asian Free Trade Area)』를 창설하고, 기존의 ASEAN+3(한·중·일)정상회담을 『동아시아 정상회담(East Asia Summit)』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EASG는 최종보고서에서, EAVG보고서의 제안이 동아시아의 평화/안정/성장에 유익한 것으로 평가하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단기적인 사안(17개항목)과 중장기적인 사안(9개항목)으로 나누어, 합계 26개의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과 『동아시아 정상회담』의 실현을, 우선도가 높은 장기적 시책이면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하고 있다.

ASEAN+3각국 정상들은 EASG최종보고서에 입각하여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삼고, 그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ASEAN+3경제장관회담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각국 정상간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단, 현재 한국·일본간, 일본·ASEAN 각국간에 양국간 FTA가 추진되고 있는 것 이외에, 한·중·일 3국은 제각기 ASEAN과의 사이에 별도로 FTA/EPA체결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당초의 예정대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0년 전후가 되면 동아시아 지역에 한국·ASEAN(2009년), 중국·ASEAN(2010년), 일본·ASEAN(2012년)의 3대 자유무역권이 출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3개의 자유무역권이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이라는 기치하에 하나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한편, ASEAN+3정상회담을 『동아시아 정상회담(EAS)』으로 발전시키는 문제는 당초 2000년11월의 제4회ASEAN+3정상회담에서 다수의 정상들이 제안했던 사안을 EAVG가 검토하게 되었던 것인데, EASG는 이 EAS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ASEAN+3의 바람직한 목표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에, 우선도가 높은 장기적인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단, EAS는 진보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모양과 실질을 진보시키

는 유일의 신뢰가능하고 현실적인 협의체로서 ASEAN+3가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이렇게,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 East Asian Free Trade Area))의 형성문제와 함께 장기적인 과제로 제안되었던 『동아시아정상회담(EAS)』 개최문제에 대해서는, 2004년 11월에 열린 제8회 ASEAN+3정상회담에서 2005년 11월에서 12월사이에 첫 회합을 개최하기로 합의되었는데, 참가범위와 개최방식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 5월의 ASEAN+3 비공식 외무장관회의를 거쳐, 같은 해 7월의 ASEAN+3외무장관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제1회 동아시아정상회담』은 2005년 12월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하고, ASEAN 가맹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TAC) 가맹국인 인도, 뉴질랜드, 호주의 3개국을 포함하여 16개국이 참가하게 되었다. 제2회 이후의 개최국(의장국)은 당분간 ASEAN가맹국이 순번으로 맡기로 하고, 개최빈도는 3년에 1회 개최안과 2년에 1회 개최안이 나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후에 조정하기로 하였다.

2. 한국·미국 FTA

(1) 의 의

2001년 한국과 미국간의 FTA 교섭비용과 유리한 점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농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 대하여 시장개방을 하도록 한다면 양국의 경제적 이득이 클 것이며, 양국 각각의 기존 무역 흐름이 양국간의 무역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변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 으로서는 FTA의 체결로 (제1차적으로는 개선된 무역조건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복리 증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입장으로서 는 그러한 FTA상의 의무에 따라 국내경제개혁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더 큰 개혁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¹⁰⁸⁾

108) Inbom Choi and Jeffrey J. Schott, "Korea-US Free Trade Revisited", Jefferey J. Schott(ed.), *Free Trade Agreement: US Strategies and*

물론, 국내경제개혁은 미국과의 FTA체결 여하에 관계없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수출업자의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의 개선은 미국의 양보 없이 실현되기 어려우며 미국이 체결한 다른 FTA 특히 NAFTA로 인해 한국 수출업자들은 미국의 한국으로부터 다른 국가로의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이라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일리 있는 말이다. 또한 미국과의 FTA는 한국의 외국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무역환경은 크게 변화되었는바, 새로운 기회가 생긴 측면도 있는 반면 한국과 미국간의 FTA에 대한 새로운 도전도 아울러 발생하였다. 첫째, 2001년 WTO체제내에서의 Doha Round 교섭이 시작됨으로써 세계무역개혁 움직임이 재개되었으며 2002년 8월 미국무역촉진권한(US trade promotion authority)의 이동이 발생하여 행정부가 국회의 위임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권한은 이미 싱가포르, 칠레와 교섭한 FTA와 관련하여 행사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한국과의 FTA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미 의회로부터 한국과의 FTA가 갖는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다.

둘째, 국제무역환경은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 불확실하게 되었다. 도하라운드 시작으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ASEAN간의 FTA체결 교섭외에도 일본도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거나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2) 쌍무적 무역 및 투자

미국이 FTA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거나 심각하고 고려하고 있는 모든 국가중에서 한국은 미국과 가장 광범위한 무역관계를 가진 국가인바, 쌍방간의 상품거래는 2002년 560억 달러에 달하며 미국은 14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서비스무역은 2001년 110억 달러

Prioriti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 p.173.

에 육박하였다. 2002년 농산물은 총무역액중 5%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의 對한국수출의 11.6%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은 2002년 기준 미국의 7번째 무역대상국이다.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대상국이며 2002년 기준 한국의 대미수입은 수입총액의 15.1%이며 한국의 대미수출은 수출총액의 20.2%에 달한다. 2002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첫 번째 수출시장이며 한국의 대중국수입액은 대미수입액의 보다 훨씬 크며 중국의 공급업자도 빠른 속도로 미국과 일본기업들을 제치고 대미수출을 늘리고 있다.

일본은 아직도 한국의 첫 번째 수입국이지만, 한국 수입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1971년을 정점으로 하여 20%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시장점유율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FTA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밖에 없으며 동시에 한국이 일본 및 미국과의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타진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제조업 분야의 상품은 미국의 대한국 수출상품·서비스의 약 60%(주로 전기기계 및 장비, 항공기, 과학장비, 유기화학물 등)이며 한국의 대미수출품의 80%(주로 자동차, 통신장비, 반도체, 컴퓨터 및 부품과 의류)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2002년 한국과 미국간 무역의 30%가 Harmonized Tariff Schedule chapter 85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전기기계·장비(주로 반도체와 컴퓨터와 부품)이다. 컴퓨터 칩 무역의 경우 양국은 확실히 “동일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라는 유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은 하이테크 프로세서와 칩을 한국은 주로 메모리칩을 수출하고 있다.¹⁰⁹⁾

실제로 한국의 “동일산업내 무역”은 오랫동안 꾸준히 증가하여왔지만 미국과의 그러한 무역양은 한국의 다른 무역대상국보다는 낮은 편이다. 이러한 추세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 동일산업내 무역의 확대는 어느 정도까지는 비동일산업내 무역보다 일반적으로 조정(adjustment) 문제가 훨씬 작으며 향후의 무역마찰의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109) *Ibid.*, p.177.

그 밖에도 미국은 한국의 최대외국인직접투자국가이며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규모는 2001년말 기준으로는 100억불에 달하며 2002년 GM의 대우자동차 인수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된다. 그러한 투자는 미국 기업의 한국경제에 대한 관련성이 크게 증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미국의 투자자들은 통상적으로 100%소유자회사 또는 다수지분소유의 회사에 대한 제한으로 합작기업에서 소수지분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이후의 외국인투자관련법과 규칙의 완화는 미국투자를 촉진하게 되었으며 GM의 대우자동차 인수와 New-bridge Capital의 제일은행 인수는 가장 주목할 만 것이다. 이러한 개혁조치의 확립 및 그러한 개혁조치를 여러 가지 투자자보호조치와 더불어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미국이 체결한 싱가포르와의 FTA 및 칠레와의 FTA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마도 그러한 내용은 미국으로서의 한국과의 FTA 교섭을 함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¹¹⁰⁾

(3) 양국간 무역마찰

미국과 한국간의 무역관계는 그 규모로 보아 필연적으로 많은 무역마찰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분쟁은 FTA가 기존의 법률 및 규칙상의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해도 오히려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 양국은 특히, 무역장벽, 차별적 기준 및 조세와 정부조달정책을 망라하는 국내산업계의 불만을 연간보고서를 공표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한국주재 미국상업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도 양국간 무역거래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기업의 대한 무역 및 투자를 저해하는 한국의 무역 및 규제 행위에 관한 광범위한 불만사항들을 축적해놓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작성한 목록은 한국의 대외 무역장벽에 관한 2003년 보고서에서 23페이지에 달하며 미국이 FTA를 체결하거나 체결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많은 분량이며 일본, 중국 및 EU만이 한국보다 많다.¹¹¹⁾

110) *Ibid.*, p.178.

111) *Ibid.*, p.179.

그러나 많은 문제들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타결된 바에 따른 관세개혁으로 해소되었거나 한미간의 쌍무적 협정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쇠고기 수입에 대한 오랜 분쟁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양국간 무역의 수십억 달러 규모에 영향을 주는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다. 한국의 대미수출에서는 18.5억 달러 그리고 미국의 대미수출의 20.3억 달러가 1999년 양국간 무역분쟁 금액의 추정치이다. 이 숫자는 현재는 해결된 쇠고기 분쟁이 포함되어 있지만, 최근의 미국의 철강수입제한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다.¹¹²⁾

가장 지속적인 두드러진 문제는 자동차분야, 반도체 부문, 반도체 및 농업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측으로서는 한국내의 자동차의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제한이 여전히 미국회사의 주된 우려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8%라는 관세는 제조업분야 상품의 평균부과액과 거의 같지만 미국 자동차의 판매는 주로 한국내 제품인 중소형차보다 주로 수입품인 대형자동차에 부담이 가중되는 판매세에 의하여 더욱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수입 자동차는 한국 시장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국은 한국정부가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보조금이 미국내의 새로운 상계관세관련 제소를 야기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종전의 분쟁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3년 4월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미국수입이 50%이상의 상계관세 적용대상이 된다는 예비결정을 발표하였다¹¹³⁾. 그 밖의 미국의 관심 사항은 영화 상영쿼터,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과도한 규제 및 의약품가격책정관행 등이다¹¹⁴⁾. 농업분야에서 한국은 여전히 쌀시장 접근에 대단히 제한적이다. 기타 농작물에 대해서는 평균 62%의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다.¹¹⁵⁾

112) *Ibid.*, p.180.

113) *Financial Times*, April 2, 2002, p.15.

114) *USTR Report 2003*, pp.239-63.

115) Inbom Choi and Jeffrey J. Schott, *op.cit.*, p.182.

제 4 절 전 망

FTA의 확대·심화는 다자간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FTA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국가들은 경제적 손실이 가할 것이다. 내수시장의 규모, 무역비중 및 구조, 무역장벽 등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ASEAN, EU 등 주요 무역국가와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FTA 체결 대상국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가장 유망하고 다음으로는 ASEAN, 중국, EU 등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내수규모를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이 가장 유망한 FTA 대상국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중국도 유망한 대상국가 될 것이다. 요역비중과 보완성 측면에서는 일본, 중국, 미국이 가장 유망한 대상국가이며 EU는 내수시장, 무역의 보완성, 민감분야에서 유리하지만 무역장벽 자체가 낮고 제조업계의 관심이 낮아서 FTA 대상국으로는 그다지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

제 4 장 FTA의 주요 조문과 전략

제 1 절 FTA의 주요 조문 분석

FTA는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당사국간의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에 체결된 협정이나 개도국간에 체결되는 FTA는 당사국간의 무역자유화,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무역상의 장벽철폐외에도 서비스, 투자, 무역규범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TA가 반드시 모든 규범을 포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FTA의 구체적 대상범위는 당사국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한 포괄범위에 따라, 대상국이 누구인가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이익도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FTA의 대상범위는 체결국이 어떠한 국가이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NAFTA, 최근에 체결된 한국·칠레 또는 한국·싱가포르FTA 등을 보면 포괄범위가 상당히 넓다. 개발도상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FTA는 점차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장접근성 증대를 위한 상품무역의 자유화·원활화, 투자 및 서비스의 자유화,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등을 기본내용¹¹⁶⁾으로 하고 점차, 기준·인증의 상호인정(MRA),

116) FTA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앞에 위치하는 것은 전문, 최초조항 및 일반정의 등이다. 전문에서는 FTA의 체결을 통하여 양국간의 특별한 우호협력관계 강화, FTA 체결을 통한 상호간 무역과 투자의 확대, WTO 다자무역체제 및 기존의 다른 다자간·양자간 및 지역체제의 약속을 존중한다는 것,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 강화 등 FTA의 정신과 기본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게 되며, 이에 대한 FTA의 내용들은 다소의 표현상 차이는 있지만, 크게 대동소이하다. 또한, 최초조항에서는 양 당사국은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부합되는 FTA를 체결하고자 한다는 것, 기타, 협정의 목적에 대하여 정하고(예컨대, 한국·칠레FTA에서는 상호간 무역확대 및 다양화, 무역장벽 제거 및 무역활성화, 공정경쟁조건의 보장, 역내투자기회의 증진, 협정의 이행·적용 및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마련, 양국간 협력 및 다자간 협력 증진을 위한 틀의 구축을 목적). 양 당사국의 당해 FTA가 다른 국제협정과 상충될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협정이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한다. 다음

정부조달시장개방, 경쟁정책조화, 경제기술협력, 환경, 노동 기준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FTA인 NAFTA의 구성요소를 보면 관세 및 비관세장벽,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등으로 이루어진 상품무역분야, 투자 및 서비스무역분야, 표준·정부조달·지적재산권·반덤핑·환경·노동 등 무역규범 분야, 분쟁해결절차, 각종 협력 및 검토위원회 등 기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이 체결한 5건의 FTA를 살펴보면, 1985년 미국·이스라엘FTA, 1994년 NAFTA(이것은 1989년 미국·캐나다FTA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2001년 미국·요르단FTA, 2004년 미국·칠레FTA, 2004년 미국·싱가포르FTA이다. 이스라엘과의 FTA는 GATT체제하에서 체결된 것이고, NAFTA 역시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어 WTO가 출범하기 전에 발효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체결한 5개의 FTA중 요르단, 칠레, 싱가포르와의 3개의 FTA만이 WTO와 관련된 것이며 바로 이 때문에 앞서 체결한 두개의 FTA와는 내용상의 차이가 적지 않다.

먼저, 이들 FTA들의 분량을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스라엘과의 FTA는 부칙, 양해각서 등을 포함하여 25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요르단과의 FTA는 그 보다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 NAFTA, 칠레 및 싱가포르FTA처럼 수백페이지에 달하지는 않는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미국의 FTA는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⁷⁾ 이스라엘과의 FTA는 특별한 관계의 선언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세심한 상호무역관계의 설정에 관한 부분은 퇴색되어 있다. NAFTA는 세심한 상호무역관계를 설정하면서도 서반구(Western Hemisphere)통합의 典型을 보여주는 것이며 칠레와의 FTA도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¹¹⁸⁾ 한편, 싱가포르 및 요르단과의 FTA의 독창적인 내

으로 일반정의 조항에서는 협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를 규정하되, 2이상의 장(Chapter)에서 정의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정의의 장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117) Ewell E. Murphy, Jr, "Charting the Transnational Dimension of Law: U.S. Free Trade Agreements As Benchmarks of Globalization", *Hou. J. Int'l L.*, Vol.27(2004), p.60.

118) *Ibid.*

용들을 살펴보면, 상기의 이스라엘과의 FTA 및 NAFTA와는 다른 보다 독창적인 협정안을 교섭하였음을 알 수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와의 FTA는 고도기술 당사국간의 세부적인 무역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에 요르단과의 FTA는 미국과 개도국간의 무역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비교적 단순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¹¹⁹⁾ 여기에서 FTA를 비교하는데 필요한 두 종류의 비교표를 상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첫 번째는 6개의 경제적 요소들이고 둘째는 7개의 국내법 요소들이다. 경제적인 요소들이라 함은 상품,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및 (기업 또는 직업상의 비자 등을 통하여 최소한 접근이 허용되는) 사람이다. 국내법요소라 함은 적법절차,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 반부패 등이다.

그 동안 체결된 어떠한 FTA도 상기의 요소들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당해 FTA를 체결할 당시 당사자들의 목표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FTA 협정문상의 차이는 어떠한 문제에 대한 접근을 얼마나 세부적으로 하였는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접근에 대한 합의의 유무의 차이는 아니다. 예컨대, NAFTA에서는 “Telecommunications”라는 장¹²⁰⁾이 있으나 “Electronic Commerce”라는 장은 없다. 반면에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두개의 장 모두 가지고 있다.¹²¹⁾ 통신은 주로 사업의 수행을 위한(for the conduct of their business)¹²²⁾ 것이거나 또는 투자자들이 높은 또는 부가가치의 서비스(enhanced or value-added services)¹²³⁾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에게 통신에의 접근 즉 사업 자체로서가 아니라 어떠한 사업이 이용 또는 제공할 필요가 있는 보조적(ancillary) 서비스로서의 통신을 위한 접근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19) *Ibid.*

120) NAFTA 제13장.

121) U.S.-Chile Agreement 제13장과 제15장 및 U.S.-Singapore Agreement 제9장과 제14장.

122) NAFTA 제1302(1)조.

123) NAFTA 제1303(1)(a)조.

미국이 칠레 및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의 “통신”의 장에서는 그 개념을 보다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전자 상거래”의 장은 사업 자체로서의 전자상품(digital products)에 대한 접근의 약속을 추가하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게는 인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전자 부문(electronic sector)을 칠레와 싱가포르에게만 개방한 것은 아니며 NAFTA타결이후부터 칠레와 싱가포르와 교섭하던 기간동안 당사국들이 점차 전자부문을 독립된 국제무역의 부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⁴⁾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들 세 FTA는 모두 전자상거래에 대한 접근을 약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소한 협정문의 추가내용이 또 다른 법부분에서의 공통기준에 대한 약속에 해당할 수도 있다. NAFTA의 대안적인 분쟁해결에 대한 약속에 관한 다섯 문장이 바로 그 일례이다. 그러한 약속은 미국·칠레 FTA에서도 되풀이(다만, 특별자문위원회의 구성만이 빠졌음)되었는바 이는 서반구의 다른 국가들과의 향후 FTA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다. 미국·싱가포르FTA에서는 대안적인 분쟁해결에 관한 기준내용이 없으나, 네 개의 문장에 의하여 “국제적인 기업거래에서의 뇌물 및 부패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effective measures.....against bribery and corruption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이라는 획기적인 내용도 도입함으로써 미국의 향후 FTA에 대한 영향력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¹²⁵⁾

경제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 또는 법률부분에서의 공통기준 추가가 없다 할지라도 그 주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예가 국가간의 무역분쟁의 해결절차에 관한 NAFTA에서 칠레 및 싱가포르 FTA로의 진화이다. NAFTA는 국가간의 분쟁에서의 청문과 변론(hearing and pleading)은 비밀(confidential)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칠레와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결패널로 하여금 분

124) Ewell E. Murphy, Jr, *op.cit.*, p.61.

125) NAFTA 제1302(1)조.

쟁에 관한 NGO(nongovernmental entities)로부터의 요청내용을 고려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NAFTA는 분쟁해결패널의 보고서는 NAFTA위원회(Commission)가 달리 결정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칠레 및 싱가포르 FTA는 그러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진화는 그 동안의 공공정책(public policy)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들 다섯 개의 FTA를 비교분석해본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경제부문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접근에 관한 내용이 없는 미국·이스라엘 FTA외에는 4개의 협정이 완전히 일치하며 공통법률기준과 관련하여서는 NAFTA, 칠레FTA 및 싱가포르 FTA가 모두 각기 한 부문씩 빠져있으며 요르단은 4개 부분이 빠져있고 이스라엘은 오직 지적재산권 부문에서의 공통기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스라엘 FTA의 내용이 다른 FTA들과 다른 것은 이스라엘 FTA의 다소 강한 정치적 성격, 그 체결시기가 빠르다는 점, 미국과 이스라엘간의 다른 FTA들이 양국관계의 추가적인 요소들을 반영하였다는 점 등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각 FTA를 단순히 상품에 대한 접근만을 관찰하게 되면 상이한 범주의 상품, 상이한 쿼터량 또는 마지막까지 남게 된 기타의 무역장벽을 포함하여 당사국간에 합의된 상품의 접근 수준을 간과하게 된다. FTA는 통상적으로 당사국들이 특별히 이해관계를 갖는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규칙을 설정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NAFTA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특별한 규정 및 에너지와 기초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별도의 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NAFTA, 이스라엘과의 FTA 및 칠레와의 FTA에서는 농산품에 관한 광범위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NAFTA, 칠레와의 FTA 및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섬유와 의복에 관한 광범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FTA들의 많은 side letter와 두터운 부속서의 내용들은 서로 다르다.

한편, 미국이 체결한 다섯 개의 FTA에서 특히 세 가지 민감한 문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중 두개는 캐나다와의 FTA 교섭에서 비롯된 것이며 각각에 대해서 미국이 캐나다의 요구에 동의한 것이다. 그중 한 가지 요구는 미국으로부터의 침투로부터의 캐나다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캐나다의 상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에 관한 미국의 사법적 검토(judicial review)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었다.¹²⁶⁾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기 드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첫째, 문화산업은 이 FTA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¹²⁷⁾ 둘째, 5년의 실험기간동안 현지의 법원이 아니라 양국간의 무역패널에 최종반덤핑·상계관세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도록 미국과 캐나다의 상품수입업자에게 선택권을 인정한 규정¹²⁸⁾이 대표적인 것이다. NAFTA교섭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격렬한 논의끝에 당사국들은 그와 동일한 내용에 합의하였으며, 패널에의 항소를 5년의 실험기간이 아니라 항구적인 권리로서 인정하게 되었다.¹²⁹⁾

다음 세 번째 민감한 문제는 국제무역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다툼이 많은 문제이다. 즉, 무역협정위반에 대한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패소한 피고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벌칙을 부과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NAFTA의 경우에는 특혜의 정지(suspension of benefits)를 허용함으로써 GATT와 WTO 방식을 따르고 있다. 즉 승소한 원고는 피고국가에 대하여 NAFTA가 승소국에게 양허하도록 한 무역상의 우대(trade benefits)를 그 보상액만큼 유보함으로써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³⁰⁾ NAFTA의 노동 또는 환경관련 보완협정(supplemental agreement)의 위반에 대한 벌칙은 그와

126) Ewell E. Murphy, Jr, *op.cit.*, p.64.

127) 미국·캐나다FTA 제2005(1)조.

128) 미국·캐나다FTA 제1904-06조.

129) NAFTA 제2106조, 부속서 2106(문화산업), 제19장(패널항소), 이들 문제에 대한 당사국간의 교섭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Maxwell A. Cameron & Brian W. Tomlin, *The Making of NAFTA*, (Cornell Univ. Press: 2000), p.77, 97.

130) NAFTA 제2019조.

는 다르다. 즉, 패소국가는 집행추징금(monetary enforcement assessment)을 노동법의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또는 환경법집행이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금에 불입하여야 한다.¹³¹⁾ 칠레와 싱가포르FTA는 다른 벌칙유형을 채택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다소 독특한 선택방법을 덧붙이고 있다. 즉, 패소국가는 정지되었어야 할 우대의 50%에 해당하는 연간추징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우대의 정지를 회피할 수 있다. 추징금은 승소국가에 지불하거나 또는 집행기구(administrative body)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당사국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에 불입하여야 한다.¹³²⁾ 이러한 독특한 방식은 미국의 향후 FTA의 典型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³³⁾

FTA의 포괄범위 주요사례

구 분	미 국 · 이스라엘	NAFTA	미 국 · 요르단	FTAA	캐나다 · 칠 레	멕시코 · 칠 레	E U · 칠 레	ANZCE RTA ¹³⁵⁾
관세철폐	√	√	√	√	√	√	√	√
수량제한금지		√		√	√	√	√	√
세이프가드조치	√	√	√	√	√	√	√	√
반덤핑 · 상계관세	√	√		√	√		√	√
원산지규제	√	√	√	√	√	√	√	√
관세평가 · 세관수속		√	√	√	√	√	√	√
투 자		√		√	√	√	√	√
서비스	√	√	√	√	√	√	√	√

131) Labor Agreement(Annex 329) 제39조 및 Environmental Agreement (Annex 34) 제34조.

132) 미국·칠레 FTA 제22.16조 및 미국·싱가포르 FTA 제20.6조.

133) Ewell E. Murphy, Jr, *op.cit.*, p.65.

134) ANZCERTA는 호주·뉴질랜드경제관계긴밀화협정을 말한다.

제 4 장 FTA의 주요 조문과 전략

구 분	미 국 · 이스라엘	NAFTA	미 국 · 요르단	FTAA	캐나다 · 칠 레	멕시코 · 칠 레	E U · 칠 레	ANZCE RTA ¹³⁶⁾
기준·인증		√		√		√	√	√
위생식품검역	√	√		√		√	√	√
정부조달	√	√	√	√		√	√	√
지적재산권	√	√	√	√		√	√	√
경쟁		√		√	√	√	√	√
분쟁해결	√	√	√	√	√	√	√	
국제수지조항	√		√				√	
일반예외	√	√	√		√	√	√	√
경제기술협회			√				√	
합동위원회	√	√	√		√		√	
전자상거래			√					
인적이동		√	√		√	√		
환경		▲	√		▲			
노동		▲	√		▲			

주: NAFTA 및 캐나다·칠레 FTA의 환경, 노동관련조항은 보완협정에 규정.

제 2 절 상품시장접근을 위한 자유화 및 원활화

FTA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완화, 수량제한 금지, 세이프

가드조치, 반덤핑·상계관세, 관세통관절차 간소화 등 시장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상품무역의 자유화 및 원활화하는 규정들을 두게 된다.

1.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관세양허안 작성

FTA에서는 상품무역에 대하여 WTO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을 적용하고, 상대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양허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감축하며, FTA의 자유화대상 품목의 최혜국대우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당사국은 FTA상의 관세율 인하에 대하여 협의한다는 내용을 두게 된다. FTA협상과정에서 타결이 가장 어려운 분야가 상품무역분야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이다. 주요 쟁점사항은 기본관세율 및 관세철폐 시기의 설정과 대상품목의 선정이다. 관세인하 이행기간중에는 양자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통하여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FTA의 시장개방으로 단기적으로 문제가 크다면 협정 이행초기 시장개방의 폭을 축소하여 구조조정의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특정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FTA하에서 자유화이행기간 동안 허용되는 양자가 세이프가드는 이러한 산업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FTA에서는 협정 이행초기에는 민감하지 아니한 품목위주로 자유화를 실시하게 된다. 예컨대, NAFTA에서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는 품목의 비율은 50%이지만 이들 품목의 대부분의 컴퓨터, 통신장비 등 기존의 무관세 대상품목이거나 2% 미만의 저율관세가 부과되던 품목이었다.

산업경쟁력이 높은 나라가 아무래도 그렇지 아니한 국가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관세양허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국의 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관세양허안을 작성하여 제기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특히 FTA추진시 고려되어야 할 민감품목을 선정하는데는 그러한 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다자체제의 지역적무역협정 관련 규정

(주로 GATT 제24조)을 만족시키면서, FTA하의 관세 양허로 인한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양허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실행관세율은 양허안 마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현재의 실행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그 만큼 관세율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입량의 증가에 따른 피해(구조조정, 수입품과의 경쟁 압력 등)가 클 것이다. 현행 실행관세율과 양허에 따른 관세의 인하 정도에 따라 수입수요가 달라질 것이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관세율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수 있다. 예컨대, 싱가포르처럼 거의 모든 품목이 이미 무관세화되어 있는 국가와의 관세 양허는 한국에 일방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현행 관세율이 높으면서 수입량이 많은 품목의 경우 동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효과가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민감한 품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관세율이 높거나 수입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국 상품의 경쟁력이 FTA 교섭국보다 앞서는 품목의 경우 관세율 인하의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교섭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 자본재, 부품소재 등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높은 관세를 인하할 경우 국내 가공업체에는 경쟁력 제고 및 수출증가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품목의 경우, 오히려 과감한 관세인하를 통해 당해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흔히 FTA가 체결되는 즉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취약한 국내 산업이 단기간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통 5-15년에 걸쳐 단계적인 자유화를 실시할 수 있다. 산업별로는 공산품에 비해 농업, 수산업 등 기초산업에 대한 시장개방 협상이 어려우면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보통 FTA 발효즉, 5년후 철폐, 10년후 철폐, 15년후 철폐, 극히 민감한 분야에 대한 예외 등으로 분류된다. 외국의 FTA 체결 사례를 보면 공산품에 대한 대폭적인 양허를 하면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품목에 대한 양허를 유보시켰다는 점과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자유화의 폭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NAFTA에서는 무역 및 농산물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역외국가에 대한 관세 및 기타 비관세장벽은 제거되지 아니하였다.¹³⁷⁾ 멕시코는 NAFTA발효와 동시에 자국 수입곡물의 50%에 대하여 관세를 폐지하였으며 나머지 50%는 10년에 걸쳐 폐지하였다. 다만, 옥수수과 마른 콩(bean), 오렌지주스와 설탕 등과 같이 멕시코와 미국에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폐지하고 있다.¹³⁸⁾ 또한 3국은 국내가격지지(price-support)정책이 무역을 왜곡시키지 아니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한편,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는 국내적인 요인 때문에 또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모든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¹³⁹⁾ 싱가포르와의 농업 부문 협상 시 미국은 전

137) Jisu Kim *op.cit.*, p.887.

138) 미국·요르단과의 FTA에서도 상품 무역에 대해서는 10년내에 거의 모든 관세를 제거하되 1단계: 2년내에 5% 미만의 관세를 인하. 2단계 4년내에 5% 내지 10%의 관세를 인하한다. 3단계: 5년내에 10% 내지 20%의 관세를 인하한다. 4단계: 10년내에 20% 이상의 관세를 인하하도록 하고 있다.

139) 한국·일본 양국간의 FTA협상에 있어서 최대의 쟁점은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개방 문제인데, 일본은 농수산물분야의 자유화품목의 비율을 50%정도로 그치려 하고 있는데 대하여, 한국측은 90%이상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상호간에 관세양허안의 교환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관세양허안을 제시한 후 협상을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갈 것을 제안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측은, 우선 농수산물의 개방수준에 대해 개괄적인 합의가 없으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측은 “초기제안의 수준이 낮으면, 합의내용도 낮은 수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처음부터 관세품목 기준으로 90%이상의 철폐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일본측은 “협상과정에서 보다 나은 내용으로 만들어가면 된다”고 반론을 제기하며, 양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측은 이러한 자국의 입장에 대하여, “싱가포르, 멕시코와 체결한 FTA에서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선 21~40%를 개방하였다”고 설명하며 한국측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측은 이에 대하여, “우리는 칠레와의 FTA에서, 사과 등 극히 소수의 품목을 제외하고 90%이상의 품목을 개방했는데, 일본은 시장개방에 너무 소극적이다”고 반론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타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러한 한국·일본 양국간의 대립에는 양국간의 협상방식의 차이가 협상을 어렵게 하는 근원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일본은 최소한의 개방목표를 제시한 후 협상과정에서 개방대상 품목을 늘려가는 “리퀘스트(request)”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온 데 비하여, 한국은 최대의 개방목표를 제시한 후 민감한 품목을 제외해 가는 “오퍼(offer)”방식을 채용해 왔기 때문에, 양국간의 의견충돌은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측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완강한 자

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며 칠레와의 협상도 비교적 수월하였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의 농산물 수출국이 아니었고 대부분의 칠레 농산물이 미국 농산물과 수확 계절이 달라 경쟁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최장 12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농산품 시장을 개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두 국가와의 FTA에서 농산품 및 축산품 수입으로 인한 경쟁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¹⁴⁰⁾ 칠레산 와인에 대한 시장개방 조차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다. 이들 두 FTA는 현행 반덤핑, 상계 관세 관행을 유지한다는 것 이외의 다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는 맥주와 알콜음료에 관한 네 가지¹⁴¹⁾ 관세 lines를 예외로 하고 싱가포르는 수입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품무역에 관한 제2조의 규정은 싱가포르의 양허내용이

세를 납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2004년도에 2조엔에 달한 대일 무역적자가 FTA 체결로 더욱 확대되고, 전기, 자동차/자동차부품 등 기간산업과 관련 중소기업이 일본제품의 대두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국내 산업계 및 노동계의 뿌리 깊은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관련 산업계를 비롯한 국민여론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관세철폐 예외품목 및 유예기간의 설정 등 격변완화 조치와 함께, 농수산물의 시장개방을 일본으로부터 쟁취할 필요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40) 일본은 한국의 농산품수출의 36%, 수산품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농업종사자 및 수산업 종사자에게 있어서는 일본이 최대의 수출시장인 만큼, 일본과의 FTA체결로 인하여 공업제품 등 다른 분야에서의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측으로서는 농수산물 분야에서의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꺼리는 일본측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일본으로서도 농수산물 분야는 국내 농수산업 보호 차원에서 민감한 분야인데다가, 현재 EPA체결협상에서 기본합의에 도달해 있는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사이에도 최종 체결에 이르기까지 재론의 여지가 남아 있고, 이미 FTA가 발효중인 멕시코와의 사이에도 일부 농산품에 대해 재협의를하기로 유보한 부분이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에서도 양보를 강요당할 우려가 있는 등 단기간내의 동시다발적인 EPA/FTA협상으로 인해 대상국가별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1) 이와 같이 남아 있던 네 가지 관세는 ASEAN Free Trade Area내에서의 무역 및 뉴질랜드, 일본 및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미국과의 FTA에 의하여 이들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싱가포르가 사회적·환경적 이유로 증류주(distilled spirits) 및 와인, 담배상품, 자동차(모든 수입자동차) 및 휘발유에 대해서는 높은 간접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싱가포르 FTA 제2.9조에서 싱가포르는 수입되는 또는 국내의 증류주에 대하여 간접세를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양국은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를 모든 관세를 폐지함으로써 싱가포르를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국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도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미국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도 수입제한을 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FTA가 발효됨과 동시에 모든 대미 관세를 철폐할 것이며 미국 또한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칠레와의 FTA에서는 각 품목의 민감성과 상호 경쟁 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세 철폐기간이 각기 다르다. 미·칠레 FTA에 의하면 발효됨과 동시에 85%에 이르는 양자 무역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이외의 품목은 각각 4, 8, 10,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농산품의 경우 칠레 농산품의 대미 수출 쿼터가 12년에 걸쳐 매년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칠레산 와인의 미국수출관세 또한 12년에 걸쳐 서서히 철폐될 예정이다. 칠레 또한 민감품목에 대한 대미 관세를 12년에 걸쳐 철폐할 예정인데 민감 품목의 대부분이 농산품이다.

우리나라도 향후 FTA를 체결할 때에는 다른 국가 또는 관련 국가가 체결한 FTA의 관세양허내용을 고려하여 관세철폐 카테고리, 카테고리별 양허비중 등 양허안 작성 기준 연구가 필요하며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증가 및 국내산업 영향 등을 감안, 소관부처별로 품목별 상품양허안을 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사전적으로 양허요청 리스트를 교환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관분야 양허 관심품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일본 등 선진국과 체결하게 될 FTA에서도 무역자유화에 따른 관세율의 폐지 또는 인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¹⁴²⁾ 한

142)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가중평균 실행관세율은 2001년을 기준으로 각각 7.9%와 2.5%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일본 양국은 농산품 순수입국으로서 국내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한국84.04%, 일본10.6%)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피혁제품 및 신발류(11.0%), 섬유제품(9.3%) 등 공업제품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한국도 섬유/의류제품(9.76%), 신발류(6.73%)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농산품에 있어서 종량세 등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으며, 신발류 및 섬유제품 등의 분야에서도 종량세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국·일본 양국은 당초 FTA협상에서는 GATT제24조 8(b)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상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을 자유화대상

국·일본 FTA에 의하여 관세가 철폐된다면 대일 수입중간재 또는 자본재를 생산하는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의 경우 수입가격이 하락하므로 자본재의 수입대체 노력과 이를 위한 직접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대일 수입상품의 가격하락은 수출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이리저므로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한 산업에서의 수출용 대한 투자는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저한 경쟁우위산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 각각의 분명한 방향성 정립이 요구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산화노력이 필요한 경우 산업 또는 부문별 관세인하는 가능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별 관세인하(Stepwise Tariff Reduction)의 도입이 필요하다.¹⁴³⁾ 그러나, 기술적 자립성보다는 가격경쟁

에 포함시킨다는 기준에 따라, 특정 분야전체를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양국의 민감분야를 배려하여 유연히 대처하기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일본 양국은 실제의 협상과정에서, 일본의 민감분야인 농산물시장의 시장개방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전체의 협상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143) 한국·일본 FTA 체결과 관련하여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등 한국의 자동차 관련 4단체는 2004년 12월, 『한국·일본 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건의』라는 건의서를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정부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건의서에서 4단체는 『세계적인 FTA추진 확대는 지지하지만,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일본의 자동차산업에 비해, 국내 자동차산업은 규모, 기술, 품질, 생산성 면에서 열세이므로, 충분한 대응없이 한국·일본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정부에 대응책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건의 내용은 첫째, 승용차에 대해서는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7-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할 것(관세양허의 예외 및 단계적 관세인하), 둘째, 자동차산업에서의 일본의 유통계열화·판매소매점 지정 등 불공정한 유통관행을 개선할 것(비관세장벽철폐), 셋째, 한국·일본 양국정부와 업계에 의한 “자동차산업협력기구”(가칭)를 창설하고 첨단기술·환경분야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자동차관련 기술정보와 인재의 교류를 추진할 것(산업협력), 넷째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차 등 미래형 자동차개발 및 부품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경쟁력지원강화) 등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측은 2005년 7월, 일본측에 대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한국·일본FTA의 관세삭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일본양국이 2005년 6월에 열린 양국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개개를 위한 일련의 실무자급 협의를 해왔는데, 이 협의과정에서 한국측은 일본 자동차의 대량유입으로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피해를 입게되어, 자동차무역이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8%인 자동차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동 취지의 내용이 일본과 일부 한국내 언론에서 보도되었

력 확보와 수출증대에 보다 우선을 둔다면 이들 산업 또는 부문에 대한 관세철폐는 앞당겨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한 관련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도 적지 아닐 것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국내적으로 영향이 크거나 민감한 품목은 관세인하 계획에서 제외시키거나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UR과 같은 관세할당제도를 유지하고 쿼터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한국이 체결할 중국 등과의 FTA 체결시에도 고려하여야 할 요소라고 본다.¹⁴⁴⁾

2. 비관세장벽의 철폐

특정 국가의 비관세 장벽 또는 비관세장벽에 관한 조치를 식별하고 이를 정량화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특히 일본은 산업보호차원에서 관세이외의 각종 규제조치를 장기간 사용하여온 국가로서 1993년 이후 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적 규제와 중앙정부 역할의 축소, 비관세장벽의 완화, 시장접근수준을 개선하여왔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 규제(환경, 소음, 쓰레기, 안전, 위생규제 등)와 민간단체와 지방정부의 역할

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한국·일본 FTA협상과 관련하여 2005년 6월 20일에 열린 한국·일본 정상회담 이후, 양국정부가 현 상황 타개의 실마리를 모색하기 위해 실무선 접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측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분야를 한국·일본FTA의 관세철폐 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일본측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공동연구 과정 및 양국정상간 협상개시 선언 당시에 합의한 대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Comprehensive and High-level) FTA체결』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한국·일본FTA협상에 임해 왔으나, 일본측이 동 기본원칙에 어긋난 지나치게 낮은 농수산물 양허수준을 제시함에 따라 2004년 11월 제6차회의 이후 협상이 교착되어 온 것으로, 일본측이 높은 수준의 양허계획을 제시해 올 경우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44) 특정한 상품의 일시적인 반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는데, 칠레와의 FTA에서는 그러한 일시적 반입이 허용되는 상품으로 사업목적의 전문장비, 취재목적의 음향 및 방송장비, 스포츠와 전시 목적의 장비 및 상품, 상업적 견본품 및 광고용 필름을 열거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한국·칠레 FTA에서는 관세평가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의하며,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아니한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은 철폐하고 당사국간 수출품에 대한 수출세 부과는 금지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확대속에서 자주·자율규제가 늘어나면서 비관세장벽은 새로운 규제
틀을 쓰고 숨어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한국·일본 FTA와 관
련된 정량적 분석은 대부분 관세인하·철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일부 비관세장벽 철폐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비관세장벽의 식별과 정
량화가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사실 중국, 일본등과의 FTA의 효과는 비관세장벽의 시정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국내외시장가격차의 원인과 영향을
통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인식가능한 공적규제와 거래관행의 특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외 가격차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중에는 경
기변동적인 것과 구조적인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판단하기 어렵지만, 공
적규제요인, 거래완행요인, 경쟁제한, 거래의 불투명성 등 경제적·비경
제적 요인 모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적인 규제요인으로는 진입규제,
설비규제, 가격규제, 영업규제, 기준·인증제도, 검사·검증제도, 관세·
세제, 거래관중 특점제도등 판매지역과 취급상품제한으로 유통업자간의
경쟁과 가격인하요인을 저해하는 요인 등이다.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는 양국의 현행 제도하에서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관세
조치를 특정화하여 이를 제거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규율을 도입할 것
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일본 FTA의 교섭과정에서 비관세조치에 관하여, 한국은 지금까
지 일본의 비관세조치의 무역제한적 성격을 강조하고, 그러한 비관세조
치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을 일본에 요구해 왔다. 즉, 한국은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비관세조치에 관련된 문제에 직면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외국인의 시장참가를 제한하는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대응
책 마련을 위해 일본정부가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일본기업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비관
세조치로 고심하고 있으며, 양국의 비관세조치를 삭감하는 것이 한국·
일본간 산업관계 강화에 공헌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
이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

해 왔다. 한편, 정부간 협상과정에서 한국·일본 양국은 쌍방의 FTA문안을 기초로 비관세조치에 대한 논의를 해 왔는데, 한국은 특히, 일본의 독특한 유통구조 및 상관행 등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비관세장벽 위원회의 창설를 촉구해 왔다.

3.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조치

한국·칠레 FTA는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시장교란이 야기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FTA상의 관세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대우관세 및 FTA상의 양허표의 기준관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특한 것은 농산물만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경과기간중 일방 당사국으로부터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 타방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다만, GATT 94 XIX조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FTA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이에 따른 조치는 FTA상의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한국·칠레 FTA에서는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에 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실, 긴급수입제한조치라 함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조치라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WTO 세이프가드조치는 모든 수출국에 적용되어야 하고 한국·칠레FTA가 농산물만을 대상품목으로 하는데 반하여 모든 상품을 대상품목으로 하여 그러한 상품의 절대적·상대적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관세인하 또는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칠레 FTA와는 달리 피해 또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바, 시장점유율, 가동률, 고용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편 한국·칠레 FTA는 발동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잠정조치도 120일동안 허용되는 반면에 WTO 세이프가드는 최대 4년으로 하되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피해 및 우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200일까지 잠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또한 사전협의 전의 수출국의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칠레FTA는 수출국의 요청이 있으면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되, 30일이내에 합의가 안 된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수출국은 보복조치를 취하여 동등한 수준의 양허정지 및 관세인상을 할 수 있는 반면에 WTO 세이프가드는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30일이내에 합의가 안된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수출국은 보복조치를 취하여 동등한 수준의 양허정지 및 관세인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절대적인 수입증가가 이루어져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경우에는 3년간 보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¹⁴⁵⁾

한국·싱가포르FTA에서는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 FTA상의 관세인하 또는 철폐로 타방 당사국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추가적인 관세인하의 정지, 관세율인상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조사는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칠레 FTA와는 달리 그러한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WTO 세이프가드조치협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4. 반덤핑 및 상계관세

한국·칠레FTA에 의하면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은 WTO 및 GATT 1994 규정등 WTO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145) 일본-싱가포르EPA에서는 동 협정에 의한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의 결과로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국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입수량제한은 실시하지 않고, 발동기간은 1년(단,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는 최장3년) 이내로 하며, 협정발효후 10년내에 한정된 경과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조치는 FTA상의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은 11개의 부와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정부 보조금을 받은 상품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외국 상품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하여 상계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공정한 무역행위가 아니다.

보조금이라 함은 WTO 회원국의 영역내에서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금전적 기여가 제공되고 있고 그러한 기여가 “혜택”을 주는 것인 경우를 말한다. 금전적 기여라 함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정부소유기업까지 포함)에 의하여 직접적 자금이전, 세입포기 또는 징수불가, 일반적 인프라 이외의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물품의 구매 등을 말한다. 정부가 조달기관에 지급하거나 민간기구로 하여금 금전적 기여를 제공하도록 하는 위탁, 지시 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특혜”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계조치의 목적상 혜택의 존재여부와 금액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동 FTA의 다른 조항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보조금의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금지보조금은 회원국의 이익에 가장 큰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 보조금이 있다.

둘째, 조치가능보조금은 금지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보조금 유형으로 잠재적 제소 및 상계조치의 대상이 된다.

셋째, 허용보조금은 WTO 회원국간에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 보조금으로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1)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행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이러한 지원이 산업적 연구비용의 75% 또는 경쟁이전 개발활동 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①연구비용, ②전적으로 또한 영구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장치, 설비, 토지 및 건물 비용, ③구입된 연구, 기술지식, 특허권 등을 포함하여 연구활동만을 위해서 이용되는 자문 및 이에 상응한 서비스의 내용, ④연구활동 결과로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경

상비용, ⑤연구활동 결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운영비용 등에 한정된 보조금,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회원국 영역내의 낙후지역에 제공되고 수혜대상 지역내의 특정적이지 아니한 지원으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 및 3) 기존환경시설 개조 비용의 20%를 상회하지 아니하는 환경관련 보조금이다.

5. 통관절차

통관절차에서는 상품 수출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상품의 원산지증명 관련 의무등을 규정하고 당사국 정부의 상품 원산지 확인절차를 규정한다. 한국·칠레 FTA는 원산지 발급이 기본적으로 수출자와 생산자 자율 원칙에 따라 행하여지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이 정부 또는 정부에 의하여 위임된 기관에 의하여 입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양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수출국에 원산지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관당국은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서면 질의 및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수입국 세관당국은 수출국의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의 시설을 방문하여 생산관련 기록 및 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국 세관당국은 사전에 방문의사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인방문에 대해서 서면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그 방문대상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수입국이 원산지 확인 후 원산지 증명히 허위 또는 근거 없이 작성된 경우 원산지 규정의 준수를 입증할 때까지 특혜관세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통관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상품의 원산지기준 합치여부, 임시반입허용 등에 대하여 사전판정(advance ruling) 제도를 도입하였다. 원산지 판정에 대한 수출입자의 이의 제기 및 재심사가 가능하며, 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를 1년 이내에 환급할 수 있게 하였다. 수출입업자가 원산지 증명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 민사 및 행정적 책임을 부과한다. 원산지 증명 면제금액은 1,000달러이

며, 각 원산지증명은 1회 수입에 한한다. 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라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기타 문제에 관한 해석, 적용 및 운용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egulations)을 제정하고 이행한다.

6. 원산지 규정

(1) 의 의

원산지규정은 국가로 하여금 상품의 국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FTA에서는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만이 특혜관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다. FTA의 원산지 규정은 어느 정도까지 당사국의 영역에서 공정을 수행하여야 FTA의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원산지 규정은 양국의 산업경쟁력과 무역규모를 근거로 하여 상호 무역의 활성화, 우회수입방지, 외국인투자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지칭하며,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산지는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원산지의 중요성으로는 1) 정부의 재정수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세는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정확한 원산지 규정 및 관리는 정부 재정수입으로서 관세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 2) 자국산업보호 역할을 한다. 자국산업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미국 및 EU와 각각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예를 들어보자, 멕시코와 EU간의 FTA하에서 EU세관공무원은 멕시코로부터 상품이 국경에 도착하는 때(상품의 최종도착지는 불문한다)에 동 FTA상의 원산지가 멕시코인지 또는 미국이나 캐나다인지를 확인하여 멕시코인 경우에만 동 FTA상의 특혜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

한 NAFTA하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원산지가 멕시코인지 유럽인지를 확인한 후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같이 원산지규칙은 FTA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이 FTA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¹⁴⁶⁾

(2) WTO와 원산지 규칙

1994년까지 WTO는 원산지 규칙을 잠재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이라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원산지 규칙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가국과 협력할 책임을 지는 원산지규칙위원회(a Committee of Rule of Origin)을 창설하도록 한 1994년의 원산지규칙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과 더불어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 원산지협정 당사국간의 특혜를 정하는 것이 아닌 약정내의 원산지 규칙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FTA상에서 사용되는 원산지규칙은 흔히 특혜적원산지규칙에 관한 선언(Common Declaration with regard to 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알려진 동 원산지협정 부속서 II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혜약정에 해당한다. 1994년 원산지협정이 체결국은 무역상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산지 규칙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상기의 특혜적원산지규칙에 관한 선언은 그러한 금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를 Hoekmann과 Kosteck이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원산지규칙은 주로 특혜무역협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무역협정상의 원산지규칙은 WTO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영역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독도 없으며 많은 국가들이 지역적 통합에 관한 자국의 정책상의 자유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146) John Coyle, "Rules of Origin Instruments of Foreign Economic Policy :An Analysis of the 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in the U.S.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Yale J. Int'l L.*, Vol.29(2004), p.549.

무역상의 특혜 메커니즘에 어떠한 제한도 부과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WTO에서 특혜적인 원산지규칙에 대한 통제를 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원산지규칙은 그 기술적인 성격, 불투명성 및 상대적인 비표출성(obscurity)으로 인해 강력한 무역정책수단이 되고 있으며 보호주의적 수단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다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3) 원산지 결정의 혼합기준

원산지 규정은 역외국으로부터 역내국을 경유해 수입되는 상품을 제한하기 위하여 역내에서의 조달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정해두는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 기준 및 판정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즉, 역내국에서의 일정한 부가가치 창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부가가치기준, 원재료와 완성품의 관세번호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변경이 행하여지는 관세번호 변경기준, 제조가공작업이 행하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를 높게 책정하면 할수록 역내로의 무역전환 투자전환효과는 커지게 된다.

원산지 규칙은 문제의 상품이 어떤 하나의 국가내에서 당해 국가의 국내 투입요소만을 사용하여 생산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용이하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이상 통신과 운송의 기술혁신에 따라 더욱 많은 회사들이 상품을 생산하는데 여러 국가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상품의 가공, 조립, 포장 또는 완성이 여러 국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들은 보다 치밀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칙을 마련하게 되었다.¹⁴⁷⁾ 1974년의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는 상품의 원산지는 최종적인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한 국가라

147) *Ibid.*, p.548.

고 정의하고 있다.¹⁴⁸⁾ 바꾸어 말해서 어떠한 상품의 실질적인 변형(재료의 투입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변형)이 멕시코에서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멕시코 상품이 된다. 실제에 있어서 “실질적 변형”의 결정은 다음 세가지 기준의 하나를 적용하여 내려진다.

첫째, 원산지국에서 국내부가가치의 최소 비율을 요구하는 국내재료기준이다. 양 당사국에서 수확·채취한 식물 및 광물, 출생·사육한 동물, 양당사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로 처음부터 양당사국에서 가공한 물품등과 같은 양당사국에서 완전히 생산된 경우는 당연히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된다.

둘째, 원산지국에서 특정한 가공작업을 거치도록 하는 기술적 기준이다. 제3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는 바, 한국·칠레 FTA에서는 실질적인 변형의 판정과 관련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부가가치 기준 및 특정공정 기준으로 보완하고 있다.

셋째, 상품이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System(Harmonized System: HS)상의 세번을 원산지국에서 변경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세번변경(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기준¹⁴⁹⁾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riterion)은 원재료와 완제품을 비교하여 물품의 국제적인 분류기준인 HS코드가 일정한 기준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바, 현행 기준은 농산물의 경우에는 엄격한 2단위 변경(CC)이 많으면 공산품의 경우 4단위(CTH), 6단위(CTSH) 변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부가가치기준(value-added criterion)은 특정제품의 전체 가치중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며

148) *Ibid*,

149) Moshe Hirsch, “International Trade Law, Political Economy and Rules of Origin- A Plea for a Reform of the WTO Regime on Rules of Origin”, *J. World Trade*, Vol.(2002), p.171, 177.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번변경기준과 보완적으로 사용하며 세번변경기준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단독으로 사용한다. 현행 규정의 부가가치기준은 공제법(build-down method)으로는 45%, 직접법(build-up method)으로서는 30%기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 인정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기준은 캐나다·칠레 FTA의 35% 수준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NAFTA 등 대부분의 FTA에 규정된 부가가치수준은 60%이다.

특정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은 제조공정중 특정한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부품을 사용한 국가들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TV의 경우 브라운관 생산국이 원산지가 되도록 하는 예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 기준을 우회수입방지를 위하여 세번변경기준과 보완적으로 사용되며 섬유분야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경우의 원산지 인정방식은 첫째 최소허용(de minimis) 수준과 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and materials)기준이 있는 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전체 가격의 8%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역내산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구분하기 어렵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물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결정을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 제고관리법에 따라 행하여진다.

대부분의 FTA는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섬유와 자동차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¹⁵⁰⁾ 또한 어떠한 FTA에서는 이른바 “혼합기준”(hybrid tests)을 적용하고 있는 바, 예컨대 국내부가가치 내용물(content)의 최소한의 비율 기준, 실질적인 변형에 의한 세목변경 기준 모두를 적용한다.¹⁵¹⁾ 사실상, 상기의 어떠한 기준도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기준에 내재하는 자의적 해석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에 어느 원산지 기준에 의하면

150) 예컨대, 한국·칠레 FTA에서 혼합통조림과 혼합주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80%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51) John Coyle, *op.cit.*, p.549.

특혜관세의 대상이 상품이 다른 기준에서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 주요 FTA의 원산지 규칙

NAFTA에서도 엄격한 원산지규칙을 설정하였다. 역내무역으로 인정 받으려면 상품은 주도적으로(predominantly) 역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NAFTA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NAFTA 역외국가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원산지 규정을 적극 활용하고자 높은 현지 조달비율을 요구하여 양자간에 65%기준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일본기업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을 건설하여 수입부품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여 결국 62.5% 기준이 채택되었다.¹⁵²⁾ 즉,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순수비용(net cost)중 북미재료가치 62.5%라는 기준을, 기타 차량 및 자동차 부품은 60%가 북미에서 생산되었어야 역내원산지 상품으로서 무관세의 특혜를 받는다¹⁵³⁾.

미국·싱가포르FTA의 원산지 규칙은 다소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해협을 가로질러 불과 20킬로 정도 떨어져 인도네시아의 바탐과 빈탄으로 구성된 리아우(Riau)제도가 있다. 이 3국 즉,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는 15년전 “경제성장 삼각지대”(growth triangle),

152) 멕시코는 NAFTA의 가맹국이면서 EU와도 FTA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기 전까지 일본 기업들은 EU나 미국의 기업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등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FTA미체결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본은 멕시코와 EPA/FTA를 2004년 9월 체결하였고 2005년 4월 1일 발효하였다.

153) NAFTA 제10조하에서 자동차 산업은 최초 4년동안 역내재료기준을 57%까지 인상하고 그후 4년동안 62.5%에 달하도록 하였다. 협상과정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본의 기존 자동차산업투자와 향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러한 재료기준을 낮추고자 하였다. 사실 1988년 미국·캐나다FTA는 50%의 역내재료기준을 설정하였으나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그 동안 그 기준이 너무 낮아 일본과 다른 국가의 자동차부품의 수입을 억제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70%이하의 역내재료기준을 희망하였다(Jisu Kim, *op.cit.*, p.887).

“각 회원국이 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른 회원국의 보완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경제관계”를 형성한다는데 합의하였다. 그러한 합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왔다.¹⁵⁴⁾ 싱가포르의 대미 수출량의 60%는 싱가포르에 공장을 둔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다국적기업은 인도네시아의 리아우 제도의 넓은 공업단지와 값싼 노동력을 적절하고 충분히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상적인 경제통합은 미국과 싱가포르 양측 모두로 하여금 싱가포르에서 운영중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그 일부로 포함하는 FTA의 체결을 서두르게 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상호보완성의 지속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택한 메커니즘은 “the 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이하 “ISI”라 한다)”라고 부르는 원산지규칙이었다.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해보자,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있는 무선전화기 제조업자가 미국에 자신의 상품을 수출하고자 한다고 하자. 여기에서 생산된 무선전화기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때 이미 무관세 대우가 부여되어 있지만 그 생산자가 직접 미국으로 운송하려면 자신의 전화기가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라고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ISI의 조건에 따르면 그 생산자가 먼저 싱가포르로 전화기를 운송한 후 다시 미국을 운송한다면 원산지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절약되는 행정비용의 추정가액은 수입가액의 약 0.23%에 해당한다.

ISI는 비체약국인 제3국(특히 인도네시아)이 미국·싱가포르 FTA의 일정한 조항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준다. ISI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은 미국·싱가포르 FTA Annex 3B에 열거된 모든 상품들을 포함하며

154) 경제성장 삼각지대는 다국적 기업으로 하여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풍부하고 비교적 값싼 토지와 노동력 및 싱가포르의 선진 서비스인프라와 경영·기술지식 등 이들 세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형성된 것이다. 현재, 많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지역본부를 싱가포르에 두고 싱가포르를 세계 도처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지로서 활용하고 있다.

반도체, 컴퓨터, 통신장비 및 광범위한 하이테크 상품들을 포함한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인 Peter Allgeiger는 ISI가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적관세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공수수료를 제하여줌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일부 서류작업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품의 전세계 무역의 80%이상을 담당하는 WTO 회원국들에게 ISI는 관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국·싱가포르 FTA Annex 3B에 열거된 모든 상품은 WTO의 IT상품에 관한 각료선언에 따라 무관세로 싱가포르와 미국에 수출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WTO의 비회원국들에게는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통과운송을 함으로써 미국시장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국가들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 같이 싱가포르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에 ISI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경우만이 사실상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싱가포르 FTA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격과 관련하여 “당사국 일방 또는 쌍방 영역에서만 전적으로 획득 또는 생산된”(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것으로서 Annex 1에서의 상품특정 원산지 규칙에 부합되거나 또는 달리 제3조상의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본다. Annex 1상의 관세분류표상의 변경(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상품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액이 상품의 조정된 가액(adjusted value of the goods)의 10%를 초과하지 않고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다른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시켜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수출지향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¹⁵⁵⁾

한국·칠레 FTA는 NAFTA, EU-칠레 FTA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155) Sherrilyn S. Lim, *op.cit.*, pp.334-5.

국내산업구조와 칠레와의 무역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원산지규정은 총칙(general rules)과 품목별판정기준(specific rules)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전자는 원산지규정의 일반원칙, 용어의 정의, FTA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3국 우회수출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산물은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후자는 제3국산 원재료를 수입하여 칠레에서 가공할 경우 칠레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품목별로 결정하는 것이며 상세한 품목을 부속서에서 정하고 있다. FTA 본문에서는 원산지 관련 정의조항, 원산지판정원칙, 부가가치계산방식, 미소가공공정, 환적조항, 미소조항, 대체가능물품 등에 대하여, 또한 부속성서는 608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규정하였다.

한국·싱가포르FTA 제4.4.1조(역외가공)에 의하면 “..... 부속서 4C에 열거된 상품은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에 일방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친 후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경우에도 ①비원산지 투입요소의 총가액이 최종제품 관세가액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②원산지 재료의 가액이 최종제품의 관세가격의 45% 이상이고 ③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 수출되기 전에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획득 또는 생산되었거나 제4.16조의 불인정 공정 외의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고 ④수출된 재료의 생산자와 최종제품의 생산자가 동일하고 ⑤재수입된 상품이 수출된 재료의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통하여 획득되었고 ⑥생산 또는 가공의 최종 공정이 당사국의 영토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본다.

이러한 역외가공조항은 우리나라가 칠레와 체결한 FTA에는 없다. 싱가포르와의 FTA체결과 관련하여 무역업계에서는 싱가포르의 재수출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제3국 제품의 우회수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특혜 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요구한 바 있고 해당국 제품만을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방지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이 FTA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가공처리하여 대한민국이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우회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라

는 점에서 우회수출과 관련한 원산지 규제가 반드시 우리에게만 불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개성공단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향후 북한가공·조립 제품의 수출을 모색하여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남북경협에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산지 증명서 및 특혜대우의 신청 등 절차적인 문제는 제5장 통관절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칠레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부 규정사항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칠레와의 FTA에만 규정되어 있지만 싱가포르의 상품과 관련하여 적용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니할 내용들도 적지 아니하였다.

중계무역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싱가포르와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경쟁력 있는 산업이 상이하므로 원산지 규정의 강화는 우리나라에게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3) 국내 소비자를 보호한다. 원산지에 따른 상품의 품질과 선호가 다르며, 상품의 가격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원산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정책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며, 신뢰구축으로 인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4)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디지털재화의 원산지 및 저작권표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확대할 수 있다.

한국·칠레 FTA의 원산지 일반기준을 살펴보면 농산물의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세번변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부가가치기준을 높게 규정한 반면에 공산품의 경우에는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세번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부가가치기준을 낮추어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이 체결한 FTA중 가장 관대한(liberal)한 원산지 규정을 채택한 1985년 이스라엘과의 FTA를 살펴보면 상품이 다음 3가지 기준의 1을 충족시키면 이스라엘이 원산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상품이 이스라엘에서 전적으로 성장하거나, 생산 또는 제조된 경우
둘째, 상품이 이스라엘에서 그 구성부분으로 하는 물품 또는 재료를 새롭고 다른 물품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경우

셋째,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재료의 비용 또는 가액에 이스라엘에서 수행된 가공작업의 직접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당해 상품이 미국에 들어올 당시의 평가 금액의 35% 이상인 경우. 다만, 이스라엘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미국 재료를 사용한 때에는 그러한 재료가 가액이 당해 물품의 가액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비치지 아니한다. 미국이 요르단과 체결한 FTA의 원산지 규정도 이스라엘과의 FTA와 대체로 동일하지만, 섬유와 의류에 대해서는 중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¹⁵⁶⁾

일부 원산지제도의 복잡성에 주목하여 국가들이 FTA 체결과정에서 협상하는 원산지 규칙이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¹⁵⁷⁾ 어떤 학자는 GATT가 과거 50년동안 무역장벽을 자유화하여 왔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국내산업을 상당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으로 원산지 규칙을 좁게 창출해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¹⁵⁸⁾ 누적(cumulation)에 관한 규정은 생산재료의 투입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자들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시정방법이 되고 있다.¹⁵⁹⁾ 누적규정은 대단히 복잡하기는 하지만 제한적인 원산지 규칙이 자유무역을 촉진하지도 저해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가진 경제학자들은 누적규정은 값싼 공급원으로부터 재료를 획득하는데 차선의 해결책이라

156) Howard Rosen, "Free Trade Agreements as Foreign Policy Tools: The US-Israel and US-Jordan FTAs", Jeffrey J. Schott(ed.), *Free Trade Agreement: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p.55.

157) Moshe Hirsh, op.cit., p.171(그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서의 원산지규칙의 변칙적인 활용이 현행 무역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158) Joseph A. LaNasa III, "Rules of Origin and the Uruguay Round's Effectiveness in Harmonizing and Regulating Them", *Am.J.Int'l L.*, Vol.90(1996), p.p.625.

159) 누적(cumulation 또는 accumulation)은 국가들로 하여금 상품의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도 특정한 하나의 국가 또는 수개의 국가로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정책이다. 본질적으로 누적규정은 생산재료를 자유무역지대 밖에서 획득하고도 원산지 규칙을 결정하는 때에는 "국내 생산재료"로서 간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John Coyle, op.cit., p.550).

고 보고 있다.

(5) 개성공단조항

1) 의 의

한국은 향후 체결하는 FTA에 이른 바 “개성공단조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 조항은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며 미국, 일본, 중국, ASEAN과의 FTA에서도 그러한 시도를 할 것이다. 한국·싱가포르FTA 제4.3조(특정상품의 취급) 1과 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부속서 4B에 열거된 상품이 대한민국의 영역으로부터 싱가포르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 된다. 그 상품은 이 장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또한 원산지 재료가 된다.
2.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조 및 부속서 4B의 운용 또는 개정에 대하여 협의한다.

또한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상품) 제1절에서는 상품목록(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품목번호)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절 1과 2에서 각각 싱가포르가 대한민국에 선의로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은 3월간의 서면 통보로 제1절 목록에 상품을 추가할 수 있고 제1절에 열거된 상품은 개성공단과 한반도 내의 그 밖의 공업지구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양해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서면통보하여 제1절의 목록에 개성공단과 한반도내의 그 밖의 공업지구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국이 합의에 의하여 그 목록을 정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록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에게 향후 그 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양해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2) WTO체제와 개성공단조항

현재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50년이 경과하였으며 남북한은 분단국으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호혜적인 대우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예컨대, 남북한은 남북한의 무역을 국제무역이 아닌 민족내부간의 거래로 보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으로 반출되거나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 어떠한 의미에서 이러한 무관세조치는 WTO의 최혜국대우와 무차별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에 한국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은 WTO의 원산지규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 국제법 특히 WTO 규칙은 분단국의 특수한 지위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태만하였다는 점은 두말할 여지가 없으며 어떠한 면에서 남북한간의 무역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규범은 법적 진공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중국의 주권이 회복된 홍콩과 마카오와 FTA에 해당하는 CEPA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만도 그러한 FTA체제에 포함시키고자 한다.¹⁶⁰⁾ 물론 대만도 WTO의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취하는 접근방식은 우리와 다를 수 밖에 없다.

즉, 북한이 현재 WTO 회원국이 아니라는 상황 때문에 개성공단조항의 삽입을 외국과의 FTA체결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ASEAN, 미국, 일본 등은 그러한 조항을 FTA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을 WTO체제에 참여시키고 남북한이 명칭의 여하를 불구하고 FTA에 해당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일 것이다.¹⁶¹⁾

160) 중국의 경우, 2001년 12월 WTO회원국이 되었으나, 대만도 별도로 WTO 회원국이 되었으며, 홍콩은 중국에 앞서 별도의 WTO 회원이 되어 있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대만과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민족내부거래로서의 다른 외국에 비해 대만과의 경제교류에 대하여 실질적인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161) Lee Dongwook, "Legal Problems of the Two Koreas in the WTO Structure",

3) 중국의 대만과의 CEPA 체결방안

CEPA는 홍콩과 마카오의 서비스업이 중국에 진입하는 문턱을 낮추었는데, 비록 실질적으로 3-5년 영업을 했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외자기업이 홍콩 현지기업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CEPA를 통해 중국시장에 진입하는 상업기회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은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는 주력상품에 대하여 17%에 달하는 높은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여야 하지만 홍콩은 관세를 크게 신경 쓰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양안이 직항을 할 수 없어 추가로 증가되는 운수비용까지도 부담이 된다.

중국은 대만과 FTA 혹은 CEPA를 체결하는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 중국과 대만은 모두 WTO 회원국이므로 양안의 경제통합 모델에 대해 여전히 반드시 WTO '회원국'의 지위(즉, 국가 대 국가의 지위)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중국과 타이완이라는 두 개의 '독자적 관세영역'의 지위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꺼리고 있다.¹⁶²⁾

(6) 원산지규정과 투자유입의 관련성

우리나라도 매년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일본 등과 FTA를 체결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서 원산지 규정을 최대한 강화할수록 외국의 투자유입효과가 커질 수 있다. 반면에 외국기업으로서는 FTA에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불리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현재 한국의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입증을 위하여 부품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기업비밀과 관련된 사항까지 요구하는 등 원산지 표시방법이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원산지 표시의 폐지 또는 표시방법의 간소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¹⁶³⁾

Asian Law Review, Vol.2(2005), pp.159-152.

162) 대만과 중국의 경제통합 방식을 중국, 홍콩, 마카오의 CEPA방식으로 하게 되면 중국·홍콩·마카오의 CEPA가 Agreement가 아닌 Arrangement(약정)를 명칭으로 했듯이, 이러한 단어는 중주국이 부속영역에 대한 선언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대만으로서의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163) 한국·일본 양국은 종래부터 무역에 입각하여 발전해 온 국가라는 점에서, 불필요

이에 반해 일본·싱가포르 EPA에서는 일본기업은 양국간 섬유제품의 관세가 철폐되었지만 싱가포르내 섬유제품 생산은 매우 미미해, 일본 섬유업체는 주변국 섬유제품의 싱가포르를 우회한 對일수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 나아가서 한국·일본FTA에서 우리의 민감분야라고 할 수 있는 기계 및 자본재 생산부문에 대해 원산지 규정을 최대한으로 높게 책정하여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증대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일본 FTA에서 원산지 규정의 설정은 양국의 산업경쟁력을 기초로 무역활성화 측면(특혜관세 수혜범위의 확대), 우회수입방지측면,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양국간의 무역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원산지규정은 세번변경 기준처럼 가급적이면 용이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우회수입을 방지하는 원산지규정의 설정을 위해서는 세번변경 기준에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부가하는 등 까다롭고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일본 FTA 체결시 단기적으로는 대일 무역역조가 확대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는 경우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투자를 적극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일본투자협정(BIT)과 함께 양국간 재료를 일정수준이상 사용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제도(accumulatio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한편, FTA에서 관세양허 협상과 원산지 협상은 상호보완적인 것이며 이를 연계하여야 한다. 경쟁력이 약한 품목의 경우에 양허협상에서 완전배제하기보다는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계 복잡한 원산지규칙이 아닌 간결하고 이용하기 쉬운 원산지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원산지규칙의 효과적인 실시를 보증하고 한국·일본 양국간무역을 원활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일본 양국은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관세분류변경기준을 채용하고, 상품의 특성, 산업구조 및 양국간 무역과 투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부가가치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일본FTA를 교섭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규정의 합의는 그다지 쉽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된다.

7.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PS조치라 함은 동·식물병해충, 식품첨가제, 오염물질 등에 따른 위해로부터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당사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경우 어떠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조치도 채택·유지·적용할 수 있으나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위장된 수입제한 방식으로 적용하거나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학적 원칙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의 SPS조치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식품안전), OIE(국제수역사무국, 동물검역),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식물검역) 및 양국이 공히 회원국인 기타 국제기구의 기준, 권고 및 지침에 기초하게 된다. 과학적인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수출국의 SPS조치가 수입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동등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SPS조치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동등성 원칙). 또한 수입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국은 검사, 시험 및 기타 관련 절차에 대하여 수입국이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S조치는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에 근거하되, 관련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위험평가방법을 고려하며 위험평가지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병해충 또는 질병의 발생률, 병해충 또는 질병 무발생지역의 존재, 관련 생태학적·환경적 조건, 박멸 또는 방제프로그램의 유효성, 위생 및 식물위생 기관의 구조 및 조직, 상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통제, 감시, 진단 및 다른 절차 등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 기타 요소 등이다. 위험평가 및 SPS 조치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경제적 요소로는 병해충 또는 질병이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경우의 생산 또는

판매 측면에서의 잠재적 피해, 수입체약국 영역내에서의 방제 및 박멸비용,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방법의 상대적 비용/효율성 등이다.

적정보호수준 설정시 무역상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을 고려하도록 하고 무역에 차별을 초래하거나 위장된 제한을 구성할 수 있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구별을 회피하여야 한다. 한국·칠레와의 FTA에서는 WTO/SPS협정 부속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개정되는 SPS조치 정보를 상호 제공하여야 하고 주요 가축질병, 식물병해충 발생 및 사람 건강과 직결된 식품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24시간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 또는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동물 및 식물위생, 식품안전 및 무역분야 대표로 구성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Committee on SPS Measures)를 협정 발효후 30일내에 구성하여 2년마다 개최한다.

8. 표준관련조치 및 기준·인증의 상호인정(MRA)

품질기준, 성능, 안전성, 공업표준, 시험방법 등의 각종 기준인증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여 종래 국제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으로 존재하고 있다. 상호승인협정(MRA)은 검사와 인증에 동반되는 비용을 줄이고, MRA대상 제품의 시장화 기간을 단축시키므로써, 양국간의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다. EU·멕시코 FTA, 일본·싱가포르FTA, 향후 출범할 FTAA, AFTA 등은 모두 MRA를 포함하고 있어서 최근 MRA가 포괄적 FTA에 포함되는 것이 새로운 추세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U의 경우에는 기준인증에 대하여 자체적인 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EU사법재판소에서는 축적된 관례를 활용하고 있다. NAFTA와 EU·멕시코는 MRA를 포함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별도의 규정 없이 WTO의 TAB협정 및 기타 국제협정상의 권리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싱가포르 EPA에서도 상호승인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전기제품, 전기통신기에 대해서는 양국 상호간의 수출에 필요한 검사

수속 등을 자국내에서 행할 수 있게 되어, 비용 및 시간의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일본이 상호승인에 관한 FTA를 체결한 것은 일본·EU간의 MRA에 이어 두번째이다.

한국·칠레 FTA는 WTO/TBT협정 에 따른 기술장벽 제거 노력을 의무화한 것으로 표준 및 기술기준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합성 평가결과의 상호인정 추진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 장이 적용되는 범위를 표준관련조치로 한정하며 당사국은 법의 목적에 합치될 경우 자율적인 보호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되, 불필요한 기술장벽의 창설은 금지한다. 당사국들은 표준관련조치들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당사국의 기술기준간에 동등성을 인정하도록 노력한다. 적합성평가 절차의 적용에서 상대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명시 및 이를 위한 준수사항과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적합성평가결과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하고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표준관련조치 목록을 작성하고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되, 법집행에 방해가 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허용하였다.

한편, 한국·일본 양국은 1999년 양국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국·일본경제협력의제 21’을 통해 기준인증 등 5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중 기술인증에 관한 내용을 크게 인정분야의 협력과 표준분야의 협력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그 이후 양국간 MRA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다.¹⁶⁴⁾ MRA의 시행은 역내국가 어디에서든지 통일된 기준 및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므로 상당한 무역창출효과를 유발

164) 한국과 일본은 1999년3월에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간의 경제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일본 경제Agenda21』을 발표하였고, 거기서 제창된 5개 협력분야중의 하나가 상호승인/기준분야에서의 협력이었다. 그 일환으로 한국·일본 양국은 1999년7월과 11월에 두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양국의 표준화와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전기용품, 정보통신기기, 압력용기, 의약품/의료기기, 한국 국가표준(KS)/일본공업규격(JIS) 등 6개 분야에 걸쳐서 상호승인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전문가 회합을 개최해 왔다. 또한 2003년 6월에 발표된 양국정상의 공동성명에서는 상호승인에 관한 전문가회합에서의 진척상황을 바탕으로, 협상개시에 필요한 작업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해도 동일한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면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 대일 수출을 위한 일본기업 및 역외기업의 대한투자를 유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일본간 MRA는 한국의 취약산업인 기계산업의 발전과 동 분야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를 촉진시키는데 부분적으로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한국·일본간에 부품표준화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은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와는 정반대로, 종래 이러한 TBT를 극복하기 위한 동기의 투자는 협정 체결후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종래 한국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투자하였던 일본기업의 입3장에서는 굳이 한국에 생산하지 않고 일본에서 직접 수출하더라도 그로 인해 감소할 불이익은 종전보다 크지 않다. 따라서 MRA 역시 다른 무역규범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판매시장이 어떠한 국가이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제 3 절 국경간 서비스무역과 투자

1. 국경간 서비스시장의 개방

서비스 자유화는 양국간 시장개방의 범위가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에까지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비무역재이므로 현지 진출을 통해서 소비자에 접근할 수 밖에 없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후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는 품목보다는 FTA의 기타 조항을 특히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더 중시여기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서비스 무역자유화에는 은행업, 보험, 증권 등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와 관련 분야, 컴퓨터, 직접 판매, 통신, 시청각서비스, 건축 및 설계, 관광, 광고, 배달 업무, 건축가, 엔지니어, 회계사 등이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유통,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성인 교육, 환경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미국 경제의 75%를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양국과의 FTA에 포함된 최첨단,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에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이 반영되어 이들 FTA에서는 서비스 개방과 관련하여 미국으로서 는 최초로 negative system을 채택하여 금지된 서비스 이외의 모든 서비스업이 개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두 FTA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 다른 분야는 전자 상거래, 투자(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전문가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서비스 무역에 필수적인 일시적 입국 등이 있다.

GATS에 의하면 외국의 상품과 서비스가 수입된 후에는 자국 동종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내국민대우 원칙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국상품과 수입상품이 동종상품(like-product)인지를 가려내는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GATS에서 WTO회원국이 약속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관한 양허는 모든 서비스분야에 적용되는 수평적인 양허와 특정한 분야에만 적용되는 서비스 분야별 양허로 나눌 수 있다. 전자와 후자는 모두 시장접근제한조치, 내국민대우제한조치 및 추가약속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양허표는 WTO회원국마다 다르다.

FTA에서의 서비스관련 분야는 WTO의 서비스관련 협정을 근거로 표현되고 체결되기 때문에 우선 WTO 서비스관련 협정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GATS의 목적은 회원국의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양허한 서비스 업종에 대해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각종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축소시키는 것이다. 동 협정은 6부 29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문과 8개의 부속서, 8개의 각료결정, 1개의 양허 및 각국별 양허표로 되었다.

GATS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관련하여 동 협정은 조치, 영향의 범위 및 서비스 유형 등을 규정하여 간접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제공 서비스와 항공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가 GATS의 적용대상이 된다. GATS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일반원칙으로 하는 GATT와 달리 각 회원국의 개별 산업별로 차등 적용을 하여 국가별 서비스산업의 발전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점진적인 자유화를 보장한다.

여기에서 조치의 범위 중앙, 지역, 지방정부 및 당국에 의한 조치와 중앙, 지역, 지방 및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갖는 비정부기구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를 포함하며 법률, 규정, 절차, 결정, 행정행위 등 회원국에서 취해지는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1) 서비스 구매, 지불 또는 이용, 2)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회원국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3) 다른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상업적 주제를 포함한 회원국의 주제 등을 포함한다. 그러한 영향의 범위를 살펴보면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회원국의 조치는 GATS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서비스 무역의 내용은 진입장벽 형식의 국내규제조치에 의하여 통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GATS에서는 서비스 무역을 생산자, 소비자의 이동 및 생산요소의 이동 유무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고 국경간 서비스 이용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¹⁶⁵⁾

상업적 주제와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현지 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이동은 Mode 4의 규율영역이며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조치 등 시민권, 거주 또는 영구 고용에 관한 조치는 GATS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Mode 4에 양허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기업내 전근자 및 업무상의 방문자에 대해서는 GATS 적용대상이 된다.

165)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수입국 영역내에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제품 자체의 국경간 공급으로 정의되는 Mode 1(국경간 공급)과 서비스의 소비자가 본국외의 영역에서 소비행위를 완결하는 Mode 2(해외소비)가 있으며 전자는 국제전화, 운송 등이 이에 해당하며 서비스 자체의 이동 즉 생산물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후자는 유학, 관광, 의료 등 소비자가 이동하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수입국 영역내에 주재하는 경우로서 여기에는 서비스 수입국내에 서비스 공급업체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Mode 3(상업적 주제)와 서비스 수입국내에서 서비스의 공급인력이 주재(상업적 주제여부와 무관)하는 Mode 4(자연인의 주제)가 있는 바, 전자는 외국인직접투자 또는 지점의 형태를 띠게 되며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이 이동하는 것이며 후자는 외국어 교육 등 생산요소로서의 노동이 이동하는 것이다.

회원국의 의무는 일반적인 의무와 구체적인 의무로 구성된다. 전자는 양허표에 기재된 내용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최혜국대우, 투명성 등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것과 통보의무 등 양허된 분야에서만 일괄 적용되는 의무가 있다. 최혜국대우에 따라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른 국가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무조건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최혜국대우의 면제가 허용된다.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내적인 규제가 합리적·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내규제의 무역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요한 자격조건, 절차, 기술표준, 면허요건 등 구체적인 규율은 후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특히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 형태로 외국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분야는 각국의 양허표에 기재되어야 하며 기재되지 아니한 분야는 시장접근 분야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positive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GATS 제16조에 의거한 시장접근 조치의 유형과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제한의 경우 유형과 예시로서는 공급자 수의 제한 조치(주유소 제한 거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업인에 대한 국적 요건), 거래액 자산총액제한(국내 총금융자산중 외국은행 자회사 및 지점의 금융자산 점유비율을 20%내로 제한), 영업량 산출량제한(스크린쿼터), 총고용인력 제한(회사의 외국인노동자 고용비율을 총 고용인원 대비 30%로 제한)을 들 수 있다. 둘째 질적 제한으로는 법인형태의 제한(국내인과의 합작투자만을 허용함으로써 단독 자회사창설을 금지)과 외국인 지분제한(외국인 지분을 50%내로 제한하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FTA에서 어느 정도까지 서비스시장을 개방할 것인가는 당사국들이 분야별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¹⁶⁶⁾ 예컨대, 한국·칠레 FTA에서도 서비

166) 한국·일본 FTA의 교섭과정에서 서비스무역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정문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FTA의 기본구조, 권리/의무에 대한 논의를 하여왔으며, 자유화를

스무역에 대해서도 서비스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서비스 무역의 제한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양국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였다. 상업적 주체에 따른 서비스 공급을 제외한 국경간 서비스공급형태를 협정 적용대상으로 하되, 서비스 분야중 금융, 항공, 정부조달, 보조금, 상업적 형태가 아닌 공공서비스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현재주재오건(LP)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전문직 서비스 허가 및 자격 증명에 서비스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였다. 서비스 공급자의 수 및 공급형태에 대한 현지주재요건 금지와 내국민대우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부 분야의 수량규제(QR)현황을 부속서에 명기하였으며 현행규제(Annex I)와 수량제한(Annex II)에 대해서는 추가규제금지원칙이 적용된다.

NAFTA의 경우 금융서비스 부문은 최종적으로 멕시코의 광범위한 자유화 수용으로 합의되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멕시코는 점진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은행, 증권중개(brokerage)회사,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에 자국시장을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하였으며 이들 회사에 내국민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자국의 동종회사와 동일한 법적용을 받게 되었다.¹⁶⁷⁾ 이로 인해 금융서비스에 있어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을 NAFTA에 의거하여 의하여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들도 NAFTA 회원국의 금융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은행의 시장점유율 한도는 2000년에 폐지되었으나 은행 및 증권분야에 있어서 잠정적인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시되었다.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도 서비스무역에 관하여, 양국모두가 관련규제를 투명화하여 약속표에 명시토록 함으로써, WTO(GATS)에서의 자유화 정도에 비하여 자유화약속 분야가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상품무역의 경우와는 반대로,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는 싱가포르가 일본보다 폐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조정해 가기로 하였던 바, 금융서비스, 전기통신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협정문에서 별도의 장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167) Jisu Kim., *op.cit.*, p.889.

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싱가포르EPA에 의해 싱가포르측이 보다 큰 폭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결과가 되었다.

GATS에서는 서비스무역의 분야를 155개 분야(사무국분류)로 분류하고 있고, 일본은 이 중에서 102개 분야에 대한 자유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협정에 의거하여 일본은 싱가포르에 대해 32개 분야의 자유화를 추가로 약속하여, 총134개 분야의 자유화를 약속함으로써 전체 서비스분야의 약87%의 자유화를 달성하였다. 일본이 개방한 주요 서비스분야는 실무(연구개발, 제조업부대서비스, 경비업 등), 유통, 금융(연금운용 등), 의료/사회사업, 운수(국제해상운송, 도로운송, 화물운송대리점) 등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GATS에서 62개 분야에 대해 자유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협정에 의거하여 일본에 대해서는 77개 분야의 자유화를 새로이 약속하여 총 139개 분야의 자유화를 약속함으로써, 전체 서비스분야의 약90%의 자유화를 달성하였다. 싱가포르가 개방한 주요 서비스분야는 실무(연구개발, 리스), 전기통신, 유통, 교육, 환경, 금융(보험/은행), 운수(국제해상통운, 도로운송, 화물운송대리점) 등이다.

2. 투자의 대우 및 보호

(1) 투자의 형태

양국간투자협정, NAFTA 기타 FTA에서는 “투자”를 거의 모든 종류의 영업활동을 포함하는 대단히 광범위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투자의 정의는 일반적으로는 자산(asset)의 개념에 기초한다. 동산과 부동산, 회사에 대한 지분, 금전청구권, 계약상의 권리, 지적재산권, 양허(concessions), 라이선스(license)와 이에 준하는 권리 등 기업의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념은 포트폴리오(portfolio)투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보다 넓은 개념이다. 예를 들자면 미국·칠레FTA는 투자를 a) an enterprise; b) shares, stock, and other forms of equity participation in an enterprise; c) bonds, debentures, other debt instruments, and loans ; d) futures,

options and other derivatives; e) turnkey, construction, management, production, concession, revenue-sharing and other similar contracts; 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 licenses, authorizations, permits and similar rights conferred pursuant to applicable domestic law, and h) other tangible or intangible,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nd related property rights, such as leases, mortgages, lien, and pledges.

한국·칠레 FTA에서도 투자라 함은 자본이나 자원의 투자 약속, 이득이나 이윤의 기대 또는 위험의 인수와 같이 투자로서의 성격을 지니면서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한다. 투자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제10.1조).

1) 기업, 2) 주식, 증권 및 기타 형태의 기업지분 참여, 3) 채권, 회사채, 대부 및 기타 기업의 차입수단, 4) 터키, 건설, 경영, 생산, 양허 또는 수익배분 계약을 포함한 계약상의 권리, 5) 상업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성립되거나 유지되는 금전에 대한 청구권, 6) 지적재산권, 7) 양허·면허·인가 및 허가와 같이 국내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8) 기타, 유·무형의 자산, 동산·부동산, 임차권, 저당권, 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관련 재산권. 여기에서 보듯이 한국·칠레 FTA는 대단히 넓게 투자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칠레FTA에서는 ‘금전의 청구’로서 그 원인이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의 국민이나 기업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의 기업에 대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계약이나 무역금융과 같이 상업적 거래와 관련된 신용의 제공인 경우에는 투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법 또는 행정 소송 상태에 들어간 주문도 투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권리와 보호를 향유할 수 있는 투자의 범위를 직접 및 간접 투자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투자로 확대하되, 상업적 채권과 은행, 보험회사, 신용금고 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는 투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FTA발효후 4년이 경과한 때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를 협정적용대상 투자로 포함시킬 것인지를 재협상하기로 하였다.

한편, 일부 FTA에서는 투자를 외국인직접투자자로 국한하고 있다. 예컨대, 2000년 체결된 EFTA·멕시코의 FTA 제45조는 이 협정은 “특히 어떠한 사업의 경영에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주는 투자 등 어떠한 사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의 투자”(investment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lasting economic relations with an undertaking such as, in particular, investments which give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an effective influence on the management thereof)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⁶⁸⁾

일부 투자협정은 넓게 지적재산권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투자협정은 적용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과 엘살바도르간의 BIT 제1조(d)는 “투자”라 함은 “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patents, rights in plant varieties, industrial designs, rights in semiconductor layout designs, trade secrets, including know-how and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trade and service marks, and trade names”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⁶⁹⁾

일부 투자협정은 기술공정(technical process)¹⁷⁰⁾, 노하우¹⁷¹⁾ 및 영업권(goodwill)¹⁷²⁾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협정 체결당시

168) <http://www.sice.oas.org/Trade?mexefta/mexefta.asp>.

169) http://www.sice.oas.org/bits/usasal_e.asp.

170)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s of the Azerbaijan Republic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art.1(a)(iv)에서는 영업권, 기술공정 및 노하우를 언급하고 있다. http://www.unctad.org/sections/dite/iia/docs/bits/uk_azerebaijan.pdf.

171) Agreement Between EFTA and Singapore, 2002, art.37에서는 “기술적 노하우 및 영업권”을 언급하고 있다(<http://secretariat..efta.int/WEb/ExternalRelations/PartnerCountries/Singapore>).

172) 현행 지적재산권법에 의하면 비밀 “기술공정” 또는 “노하우”는 영업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undisclosed information)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39(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nex 1C); 영업권(goodwill)이라 함은 어떠한 기업의 총

에 존재하지 아니하던 형태의 지적재산권(예컨대, 식물변종(plant varieties))도 투자로서 취급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은 투자협정 자체가 현재 및 장래의 투자를 보호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또는 “무형재산”(intangible property)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규정의 적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자산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배(control)의 의미가 국내법과는 다르다. 어떠한 형태의 권리 또는 사실상의 상황(de facto situation)을 자산에 대한 실제적인 지배에 결부시켜야 한다는 국제적인 판단기준은 없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지배가 존재하는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 외에도 간접적인(indirect) 소유 또는 지배라는 광범위한 개념은 자본도입국에서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어떠한 투자가 다른 체약국에 설립된 회사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지만, 비체약국내에서 어느 당사자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이다.¹⁷³⁾

이러한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규정한 투자협정 또는 FTA는 적용대상 투자에 대한 예시적 목록을 채택하고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특별히 제외되는 분야에 대한 목록(negative list)을 포함하고 있다.¹⁷⁴⁾ MAI안의 교섭 과정에서 투자로서의 자격을 가지려면 일정한 특성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해석적 주석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한 특성이라 함은 “자본 기타 자원의 투여, 이득 또는 이익의 기대 또는 리스크의 인수”(commitment of capital or other resources, expectation of gain or profit, or assumption of risk) 등이다. 이러한 특성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미국·칠레 FTA, 미국의 모델양자간투자협정(BIT)안 등에서 나타

은 이름, 명성, 또는 관련성의 혜택 및 이점(the benefit and advantage of the goods name, reputation, and connection of a business)을 말하며(dishonest commercial practice에 규제를 하는) 불공정경쟁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Carlos M. Correa, “Investment Protection in Bilateral and Free Trade Agreement: Implications for the Granting of Compulsory License”, *Mich.J. Int'l L.*, Vol.26(2004), p.337.

173) 이러한 문제는 OECD 국가들이 1990년대 시도하였던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案의 논의과정에도 언급되었다(*Ibid.* p.338.)

174) 예컨대, NAFTA art.1101.2.

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무역이나 금융거래는 투자의 정의로부터 배제된다. 금전청구 기타 형태의 credit은 협정의 적용대상 자산이지만, 무역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은행예금을 포함하는 은행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S.D. Myers v. Canada 사건에서도 NAFTA중재판정부는 “투자자가 자본도입국내에 공장 또는 소매점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의 범위에는 특정한 부문에서의 시장점유율, 자본도입국에서의 시장점근 등의 자산이 포함된다.”라고 판시한바 있다.¹⁷⁵⁾ 요컨대, 거의 모든 형태의 기업활동은 보호를 받는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은 투자협정에서 특별히 투자로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로 간주된다. 그와 같은 열거조항 또는 배제조항¹⁷⁶⁾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에 대하여 광범위한 정의가 있다면 자본도입국에서 획득한 어떠한 형태의 지적재산권은 그것이 설령 TRIPS협정에서 특정하여 명시하고¹⁷⁷⁾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투자로 간주될 수 있다.

(2)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모든 FTA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및 투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章을 두고 있다. 미국이 체결한 FTA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체결한 FTA도 NAFTA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으나 몇 가지 중대한 변화도 찾아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NAFTA 제

175)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하여 2000년 11월 13일 내려진 S.D. Myer v. Canada사건의 NAFTA 중재판정부에서 Myer의 캐나다에서의 시장점유율이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http://www.dfait-maeci.gc.ca/tna-nac/disp/SDM_archive-en.asp). 또한, 2001년 4월 10일 내린 Pope Tailbot v Canada 사건에서도 NAFTA 중재판정부는 외국인투자에 의한 미국시장에의 접근을 보호받는 재산적 이익(property interest)으로서 정의하였다.(http://www.dfait-maeci.gc.ca/tna-nac/disp/pope_archive-en.asp).

176) 예컨대, MAI초안의 논의과정에서도 일부 대표들은 지적재산권과 그와 인접한 권리(neighboring rights)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투자로부터 배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177) 실용신안, 품종개량자의 권리(breeder's rights),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관리권(digital management rights)을 포함시키고 있다.

11장의 두 가지 분야 - “최소한의 대우기준(Minimum Standard of Treatment)”과 “수용(Expropriation)” -에 반영된 투자협정의 시행에 관한 미국의 시행경험을 살펴보기로 한다. NAFTA 제11장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외국인투자와 투자가에 대한 자본유치국에 의한 대우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내국인대우, 최혜국대우,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수출이행요구에 대한 제한, 최고경영진과 이사회 지명의 자유, 자금이체의 자유, 직접 또는 간접의 수용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NAFTA의 투자보호관련 내용은 우리나라가 칠레 및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에서도 큰 차이 없이 규정되어 있다.¹⁷⁸⁾ 설립 전단계의 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 이행의무부과금지, 국적의무부과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투자를 자유화하여 투자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고 회사 설립후 단계에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의무부과금지, 국적의무부과금지, 분쟁해결절차 규정을 통하여 이미 행하여진 투자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역내투자자와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며 국제관습법에 따라 공평과 형평에 입각한 대우를 부여하고 고위경영자 등에 대한 국적의무부과를 금지하고 국산품사용의무, 기술이전의무 등 이행의무부과도 금지하고 있다

즉, 한국·칠레FTA도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투자자(및 동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의 설립, 취득, 확장, 경영, 영업, 운영, 판매 또는 다른 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여건하에서 자국투자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10.3조)라고 규정함으로써

178)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도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투자가 및 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내국민대우의 원칙 공여,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래에 일본이 체결했던 양국간투자협정의 규정에 더하여, 투자 자유화의 요소를 확충시킨 수준높은 규정을 책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유화/수용시의 보상, 송금의 자유 등 투자의 보호, 투자전 내국민대우 부여(참가의 자유화)를 규정하고 있고, WTO(TRIMs)플러스의 규정으로서 기술이전요구나 연구개발요구 등 퍼포먼스(performance) 요구의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투명성 향상 차원에서 내국민대우, 자국산부품사용요구 금지에 반하는 모든 사항을 예외 리스트에 기재하였다.

서 투자에 관한 내국민대우외에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행하여지거나 실현된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 및 이러한 투자를 행하거나 실현한 타방 당사국 투자자에 대하여 어떠한 비당사국 투자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 실현된 투자 및 이러한 투자의 투자자에게 동일한 여건하에서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다.¹⁷⁹⁾

전쟁이나 기타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폭동, 반란, 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상황에 기인한 투자손실과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전투행위로 발생한 것이거나 긴급피난에 의하여 요구된 것이 아닌 재산의 징발이나 파괴로 야기된 손실을 입은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해 타방당사국은 원상회복, 보상, 배상 또는 다른 형태의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자국의 투자자나 어떠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중 당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106조).

또한, 한국·칠레 FTA에서는 투자의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건의 부과를 제한하고 있다(제10.7조 제1항). 즉 일방 당사국이 자국 영역내에 있는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 취득, 확장, 경영, 영업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도 부과하거나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어떠한 약속 또는 의무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정수준이나 비율의 수출
- 2)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산품 사용의무의 달성
- 3) 자국영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 이용 또는 특혜부여 또는 자국 영역내의 사람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 4)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입량이나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179) 그러나 일방 당사국이 자국이 당사국인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 또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지역경제기구를 설립하는 FTA에 의하여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나 비당사국 투자자에 대해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타방 당사국 투자자 또는 그 투자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지 아니한다(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당해 투자와 관련된 외화유입액과 연계

- 5) 투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국 영역내 판매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당해투자에 의한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관련시킴으로써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국 영역내 판매를 제한
- 6) 자국 영역내의 사람에게 기술, 생산공정 또는 다른 일신전속적 지식을 이전, 다만, 경쟁법 위반 협의를 시정하거나 이 FTA의 다른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 행정재판소 또는 경쟁당국이 요건을 부과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생산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정지역이나 세계시장에 대한 배타적인 공급자로서 행동 등이다.

(3) 투자의 송금

투자관련 송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10.11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된 모든 송금이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투자관련 송금에는 1) 초기 자본 및 투자의 유치나 증대를 위한 추가분, 2) 투자에서 비롯되는 이윤, 배당금, 이자, 자본이득, 로열티 지불, 경영지도비, 기술 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현물수익 및 그 밖의 금액, 3) 투자의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 또는 부분적이거나 완전한 청산에서 발생한 대금, 4) 용자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을 포함하여, 투자자 또는 그의 투자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불, 5) 수용 및 보상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6) 분쟁해결에 따라 발생하는 지불이 포함된다. 어느 당사국도 자국 투자자에게 타방 당사국 영역내에의 투자에서 파생하거나 그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 수익, 이윤 또는 다른 금액을 송금하도록 요구하거나 송금하지 아니하는 자국 투자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일방 당사국은 자국법의 공평하고 무차별적이고 선의의 적용을 통하여 1)

파산, 지불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2) 유가증권의 발행, 유통 또는 거래, 3) 형사범죄, 4) 통화나 기타 지불수단의 이전에 대한 보고, 5) 소송절차에서의 판결의 이행 확보와 관련된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FTA에서는 투자보호를 위하여 시장환율에 의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되, 형법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송금제한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4) 수용과 보상

대부분의 FTA에서는 원칙적으로 직·간접적인 국유화 또는 수용을 금지하되, 공공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는 동 협정에 따른 권리가 침해될 경우 직접 또는 투자기업을 대신하여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으며 제소된 국가는 중재절차에 참여할 의무를 지며 투자자는 투자국내 제소절차 또는 국제중재절차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

수용과 보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1-0.13조). 어느 당사국도 공공목적을 위하여 무차별원칙에 기초하여 적법절차와 국제상관습에 따라서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영역내의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상은 수용이 행하여지기 직전 즉 수용된 투자의 수용일 직전의 공정 시장가격에 상응하여야 하며 수용의도가 사전에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가격 변동도 반영하지 아니한다. 가격산정 기준은 계속기업가치, 유형자산의 세무신고액을 포함하는 자산가치, 그리고 적절한 경우 공정한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그 밖의 기준을 포함한다. 보상은 지체 없이 지급되고 완전히 현금화될 수 있어야 한다. 보상의 지급이 G7국가의 통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보상은 당해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실제 지급일자까지의 이자를 포함한다. 보상은 지급시점에서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수지, 대외금융상 위

기나 위협, 통화환율정책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자본이동에 대한 긴급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칠레에 대한 투자자는 중앙은행법에 의한 일반투자절차와 DL600등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특별투자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별투자절차에 따를 경우 FTA상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기업 민영화조치, 자본거래조치, 소외계층보호 등 현행 규제(Annex I) 및 장래 유보조치(Annex II) 리스트에 명시된 일부 분야의 경우, 투자협정의 기본원칙인 내국민대우, 이행의무부과금지, 국적의무부과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현행 규제의 경우 추가규제금지(standstill)원칙이 적용된다.

(5) 투자개발은행의 설립

한국·일본FTA 체결과 관련하여서는 한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한국·일본투자개발은행(Investment Development Bank)의 설립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유럽이 1957년 EEC의 경제통합과 역내저개발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럽투자은행이 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개발은행은 양국의 상호투자를 촉진하는 사업을 전개하게 될 것이며 그 재원은 한국과 일본 및 제3국 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해 마련하고 양국에의 상호투자를 희망하는 역내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기통신서비스

한국·칠레FTA는 투자 및 서비스활동에 있어서 전화 및 컴퓨터 등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하여 공중전기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였는 바, 기업과 개인에게 국내 또는 역내국간 정보전달을 위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고 접근제한은 공공서비스 확보 및 공중통신망의 기술적 통일성 유지 등 최소한으로 국한하였다. 또한 공중통신서비스료는 경제적 비용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부가가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허가 및 승인절차는 투명하고 무차별적이고 신속하여야 하며 공중통신망에 연결되는 통신기기에 대한 표준 조치는 공중전기통신망의 기술적 손상방지, 사용자의 안전 및 접근보장,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채택 또는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적합성 평가절차는 투명하고 무차별적이고 신속하여야 하며 협정발효 후 1년내에 적합성 평가관련 연구소 또는 시험기관의 결과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공중 통신망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나, 독점 사업자가 반경쟁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회계요건, 구조분리요건, 경쟁자에 의한 공중전기통신망 사용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4. 전자상거래

(1) 국제무역과 전자상거래

1) WTO에서의 논의

전자상거래는 단순히 지역적·전국적 또는 국제적으로 영업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다.¹⁸⁰⁾ WTO는 도하선언(Doha Declaration)이전에 국제무역에서의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제1차 각료회의에서 WTO는 범세계적 전자상거래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공표하였다.¹⁸¹⁾ 이 선언은 WTO 일반이사회로 하여금 범세계적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든 무역관련문제들을 검토할 종합적인 작업프로그램을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¹⁸²⁾ 일반이

180) World Trade Organization, Study from WTO Secretariat Highlights Potential Trade Gains from Electronic Commerce, WTO News, March 13, 1998, http://www.wto.org/english/news_e/pres98/pr96e.htm(여기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상품을 생산, 광고, 판매 또는 보급하기 위하여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81)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MIN(98)DEC/2(May 25, 1998)(이 선언에서는 범세계적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무역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조성되고 있음을 천명하고 일반이사회로 하여금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182) *Ibid.*, 이 선언은 또한 회원국들로 하여금 종전처럼 전자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아

사회의 그러한 작업프로그램은 1998년 개시되었으며 GATT등 주요 무역협정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 및 무역개발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로 하여금 전자상거래 규율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도록 하였다.¹⁸³⁾ WTO의 관련 위원회들 즉, Council for Trade in Goods,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및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전자상거래의 모든 무역관련 측면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을 개발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WTO는 정부 및 규제당국에 대한 다음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첫째, 인터넷의 혼잡성(congestion), 둘째, 가격왜곡정책, 셋째, 불충분한 법적 기반/frameworks) 넷째, 거래의 안전과 비밀이다. 2001년 11월 14일 발표된 Doha 선언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촉구하였는 바, “전자상거래는 모든 발전단계의 회원국들에게 무역과 관련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자상거래의 향후 발전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유지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라고 선언하였다.

한편, GATS가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이며 인터넷은 전자적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GATS는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투입요소들을 규율한다.¹⁸⁴⁾ GATS 규정은 의료, 법률, 컨설팅, 금융 등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며 GATS 제1조는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수행되는 서비스 및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까지 규율한다. GATS Annex중 2건은 금융서비스 및 통신에 대해 다루고 있는 바, 이것들은 국제전자상거래의 핵심요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비스 규칙에 관한 국제규칙은 확립은 아직도 요원하다. 전자상거래제도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

니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183) WTO Secretariat, Working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Background Note. C/G/W/128(Nov.5, 1998)(여기에서는 상품무역이사회, 가 논의하여야 할 문제들 예컨대, 국제무역상품의 분류, 관세, 수입허가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 등에 대한 목록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84) GATS Annex on Telecommunications, Art.XI.

는 추세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1998년 430억불에 불과하였으나, 3조 2천억불에 달하였다.¹⁸⁵⁾

2)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모델법

UNCITRAL 모델법은 1996년 작성되었으며 세계의 다른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典範이 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원칙과 개념을 조화시키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델법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정보거래의 정당성과 집행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바, 사실상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최선의 접근방법이 무엇인가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고 보다 세부적이고 절차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개별국가들에게 맡기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국가는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미국과 요르단간의 전자상거래공동성명은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WTO의 현재의 전자적 거래에 대한 관세적용의 유예가 연장되는 것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은 1) 무역파트너들이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조치를 회피할 것, 2) WTO 규칙들이 새로운 기술과 방법에 의한 무역을 차별하지 아니할 것, 3) WTO 규칙하에서 전자상품(digital products)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부여할 것, 4) 인터넷상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부여할 것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¹⁸⁶⁾

전자상거래 관세와 관련하여 미국·싱가포르 FTA 14.1조는 미국 측의 입장이 전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역장벽의 전면

185) 2004년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세계총상품거래의 8.7%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Mohammad Nsour, "Fundamental Facets of the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greement: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and Beyond", *Fordham Int'l L.J.* Vol.27 (2004), p.750.

186) Mohammad Nsour, op.cit., p.760; 2002년 2월 17일 발효한 미국의 개정통신법 (Amendment to the Telecommunication Law)에서 정보기술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바 여기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정보의 조성, 분석 및 저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http://www.reach.jo /legislative /changes.htm>.

철폐 및 사용이나 개발에 대한 장벽 철폐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한국·싱가포르 FTA 제2.1조에서는 “양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의 기회, 이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회피하는 것의 중요성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규범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2) 디지털제품의 분류와 적용규범¹⁸⁷⁾

한국·싱가포르 FTA 제14.1.1조는 “디지털 제품이라 함은 전달매체에 부착되거나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적으로 부호화된 프로그램·문자·영상·이미지·녹음 기타 제품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제14.4.2조는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양허한 자국의 관세평가에 따라 디지털제품을 실은 수입된 전달매체의 관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표준화된 컴퓨터소프트웨어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공급될 수도 있고 디스크와 같은 물리적 형태를 통하여 공급될 수도 있다. 따라서 S/W, 디지털콘텐츠 등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를 제품 또는 서비스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하느냐가 쟁점사안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밀접한 상호대체성을 가지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내용물은 동일하므로 이들 두 가지 형태에 대하여 동일한 규범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상품으로 분류시 자유로운

187) GATT와 GATS의 차이 (OECD문서 ,TD/TC/WP(98)는 다음과 같다. 1) GATT는 내국민 대우에 관한 일반적인 의무를 강조한다. 2) GATS는 정부가 시장접근 있어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량적 제한이 허용되나 GATT에서는 스크린 쿼터,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량제한, 세이프 가드 발동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수량적 제한이 금지된다. 3) 조세체계에 있어 회원국의 구체적 약속 상 내국민 대우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GATS는 관세 혹은 과세에 대하여 언급이 없지만 GATT는 관세율이 영세율이 아닌 한 관세의 부과를 상정한다. 4) GATT는 국경간 상품의 무역에 집중하지만 GATS는 국경간의 서비스 무역이외에 서비스 무역의 일부로 자연인의 이동 및 상업적 주재와 고정사업장도 고려된다. 5) GATT에는 정부 조달 및 세이프 가드 등 규정이 있지만 GATS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6) GATS에는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GATT에는 제한규정이 없음을 들 수 있다.

무역을 보장하는 GATT수준의 규범이, 서비스로 분류시 무역 제한이 보다 용이한 GATS수준의 규범을 적용하게 되어 시장개방 범위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¹⁸⁸⁾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싱가포르 FTA에서는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⁹⁾

디지털재화 분류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은 기술중립성을 근거로 offline상품과 같이 상품으로 분류(자유무역 원칙)를 주장하고, EU, 싱가포르 등은 서비스로 간주(무역제한을 폭넓게 허용)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2003년 체결된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는 디지털

188) GATT와 GATS의 차이(OECD 문서, TD/TC/제(98)30)는 다음과 같다. 1) GATT는 내국민 대우에 관한 일반적인 의무를 강조한다. 2) GATS는 정부가 시장접근 있어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량적 제한이 허용되나 GATT에서는 스크린 쿼터,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량제한, 세이프가드 발동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수량적 제한이 금지된다. 3) 조세체계에 있어 회원국의 구체적 약속 상 내국민대우를 지켜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GATS는 관세 혹은 과세에 대하여 언급이 없지만 GATT는 관세를 영(zero)세율이 아닌 한 관세의 부과를 상정한다. 4) GATT는 국경간 상품의 무역에 집중하지만 GATS는 국경간의 서비스무역 이외에 서비스 무역의 일부로 자연인의 이동 및 상업적 주제와 고정사업장도 고려된다. 5) GATT에는 정부조달 및 세이프가드 등 규정이 있지만 GATS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6) GATS에는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GATT에는 제한규정이 없음 등을 들 수 있다.

189) 싱가포르는 1999.7월 당시 제안서(WT/AC/W/247,1999.7.9)를 통해 디지털상품을 서비스 혹은 지적재산권으로 분류하고, 분류문제와 관계없이 MFN, NT 조항과 같은 기본원칙 적용 주장하였다. 즉, 1) 지적재산권으로 분류할 경우는 관세부과대신 royalty 지급 문제로 다룬다. 2) 온라인거래와 오프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동종상품간의 관세부과 차별문제는 ITA 적용을 가속화함으로 해결한다. 한편, 싱가포르는 2000. 10.11 일반이사회에서 디지털상품의 분류와 관련 각각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으로 보는 세 가지 견해가 있으나 성격상 서비스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GATS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2001.5월 일반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서 발표하였다. 1) 소프트웨어나 전자책처럼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유형들의 분류가 문제가 되는 바, 공급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그 서비스를 전송하는 것이 중요하지 소비자가 그 상품을 다운로드 하거나 프린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 그러므로 관련 규범은 GATS이다. 2) 전자전송되는 책과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출입되는 책은 적어도 HS 체제하에서는 동종상품이 아님. 상품분류는 전자상거래 운송수단 - 플로피 디스크, 필름, 책 등 - 에 바탕을 둔 것인데, 그러한 운송수단이 없으면 이러한 상품분류 주장의 근거가 없어짐. 콘텐츠에 대해서는 HS 분류가 없다. 3) 몇몇 국가는 GATS 적용시 양허에 따라 대우가 부여되므로 현재 ITA 품목이 누리는 것과 같은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 소프트웨어 같은 상품은 온라인상에서도 오프라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회원국간 FTA를 체결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외교통상부, WTO 전자상거래 논의현황 및 대응방안, 2001, pp.1-37).

재화를 디지털방식으로 코딩하여 매체에 저장 또는 전자적 전송이 가능한 재화로 정의하되 상품분류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제품 분류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등은 기술 중립성을 근거로 상품으로 분류(자유무역원칙)을 주장하고, EU, 싱가포르 등은 서비스로 간주(무역제한을 폭넓게 허용)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2003년 체결된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는 디지털 제품을 디지털 방식으로 코딩하여 매체에 저장 또는 전자적 전송이 가능한 상품으로 정의하되 상품 분류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제품의 분류 및 적용규범 비교¹⁹⁰⁾

구 분	상 품(GATT)	서비스(GATS)
개방 의무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적용	분야별 개방약속에 따라 상이
시장개방 제한	시장개방을 전제로 수량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	수량제한을 폭넓게 허용
관세부과 여부	관세부과 전제	관세부과 가능

한국·싱가포르 FTA 제14.3조는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조치가 제9장(국경간 서비스무역), 제12장(금융서비스), 제10장(투자)의 관련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범위에 속하고 그러한 의무에 적용될 수 있는 예외를 따르되, 제9.6조(비합치조치)에 따라 의무가 그러한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서비스 등 전통적 서비스는 전자상거래가 아닌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디지털제품과는 별도로 취급됨을 알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음악 등 콘텐츠는 계속 상품으로 분류하고, 기존 서비스는 서비

190) 정보통신부, 『한국·싱가포르 FTA 관련 전자상거래 분야 검토』, 2004, p.2.

스로 분류하게 되었다. 미국·싱가포르 FTA도 분류 규정은 두지 않고 정의만 규정(§152)하고 있는 바, 아직 상품분류에 대한 국제합의가 마련되지 않았다. 한국·싱가포르 FTA에서도 별도 분류규정은 두지 않고, 향후 WTO 논의 결과가 도출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탄력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류문제는 협상시한과 함께 각국의 규제제도 및 기존 양허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도 기존의 분류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조정을 하기 보다는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조정을 도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on-line 및 off-line 동시 무역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현황¹⁹¹⁾

관련분야	현황
컴퓨터 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TT상으로는 우리는 ITA가입국이므로 0% 관세부과 - GATS상으로는 1.B.b(software implementation service)가 근접한 카테고리이며 우리나라는 이 부분을 이미 양허하였음 - (내국민 대우 제한 없음)
서적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TT상으로는 0%의 무관세를 취해왔음 - GATS상으로는 출판업(인쇄업) 1.F.p 양허 (내국민 대우 제한없음)

191) 외교통상부, 『WTO 전자상거래 특별회의 의제 검토 요청사항』, 2002, pp.5-6.

관련분야	현 황
비디오 테잎(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TT상으로는 8%의 관세 부과 - GATS상으로는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 서비스”는 양허(내국민 대우 제한 없음)
음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TT상으로는 8%의 관세 부과 - GATS상으로는 음반, 제작 배급 서비스 양허 (내국민 대우 제한없음)
게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이기때문에GATT상 무관세 - GATS상으로는 정확히 어디에 속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음. <p>시청각서비스의 기타 서비스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의 기타 서비스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우리는 2개 분야 공히 미양허)</p>

WTO, OECD 등의 전자 상거래 정의에 있어서 기술 중립성¹⁹²⁾을 언급하고 있다. 기술 중립성이란 정부가 기술표준이나 상품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하고, 시장 스스로 표준이나 상품을 결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 중립성의 인정은 우리나라의 효율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며 비효율을 확대 할 것이다. 금번 2004년 2월 개최된 한·미 통상 협의에서도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는 위피(WIFI)¹⁹³⁾를 단일 기술 표준으로 설정하였다고 문제를 제

192) 기술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기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법제에서의 기본 개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전자상거래도 결국은 전통상거래가 그 기본 개념은 유지된 상태에서 ON-LINE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93) 국내업체들은 위피 개발 이전에 저마다 다른 플랫폼을 사용해왔다. 즉 SK텔레콤은 신지소프트등이 개발한 순수 국산인 GVM, GNEX 등을 사용해왔고 KTF는 브루와 맵(MAP) LG텔레콤은 자바계열의 왓(WAP)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이들 방식에 맞는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소비자들도 자신이 가입한

기하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이 텔레콤 분야에서 표준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미국의 상품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장(넓게 해석하면 기술 중립성 위배)하고 있다.

위피는 국내에서 개발된 무선 인터넷 플랫폼으로 위피가 통상이슈로 EJ오른 것은 통신 시장에 미치는 과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이며, 미국은 퀄컴사의 브루(BREW)도 위피와 함께 무선 인터넷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을 촉구한데 이어 최근 한국을 통상 문제 '주요 우려대상국'으로 분류하는 등의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 중립성을 언급하면 차후에 이러한 문제의 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협정문에서 기술 중립성은 언급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싱가포르 FTA 연구 보고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싱가포르간 FTA와 같이 분류 규정은 두지 않고 정의만 두었으며 전기통신, 금융서비스 등 전통적 서비스는 전자상거래가 아닌 별도 규정을 둠으로서 디지털 재화와 별도로 취급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대로 양국간 FTA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¹⁹⁴⁾

한편 분류문제는 협상시한과 함께 각국의 규제제도 및 기존 양허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분류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사의 무선 플랫폼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단점 때문에 모든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위피라는 단일표준을 개발하였다. 위피는 전세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90%이상이 채택하고 있는 자바(JAVA)언어와 C언어를 기본으로 제작됐으며 실행속도가 브루에 비해 다소 늦지만 안정적이고 보안에 강한 성격을 지녔다. 반면 퀄컴사의 브루(BREW)는 C언어를 기초로 자사칩에서만 구동이 가능하며, 실행속도는 위피보다 약간 빠르지만 바이러스와 보안에 약한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194) 향후 체결될 FTA에서 종래 재화로 거래 되었던 음악 등 콘텐츠는 계속 상품으로 분류하고, 기존 서비스는 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소한, 기존 재화가 디지털 거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상품 분류에 대한 국제 합의가 마련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단일 입장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도 분류 규정은 두지 않고, 향후 WTO 논의의 결과가 도출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탄력적 접근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산업의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해외시장진출의 기회확대와 국내산업의 보호실익을 검토한 뒤 전자상거래의 분류 문제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종의 거래 방식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규범 판단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자적 전달물에 기초하는 것이 합당하다. 디지털 재화 논의와 관련하여 GATT로 판단하는 경우 이미 낮은 관세율이 실현되어 있으므로, 미국은 경쟁력있는 자국의 콘텐츠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가급적 GATT를 선호한다. GATS로 판단하는 경우 디지털 재화 무역은 각국의 양허 조건과 국내규제에 의존하므로, EU는 디지털 재화 무역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보하고자 전략적으로 GATT를 선호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확대와 국내 산업의 보호 실익을 검토 한 뒤 전자 상거래에 대한 적용규범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조세 및 관세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가 조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문제이다.¹⁹⁵⁾ 전자상거래가 국가를 달리하는 익명의 당사자들간에 국경을 초월하여 행하여진다는 사실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문제를 놓고 논쟁이 지속될 것이다. 예컨대, 구매자는 다른 국가내에 소재하는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 거래세(sales tax)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이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상품을 구입한 구매자가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며 구매자의 국가는 조세수입이 감소된다. 미국과 요르단간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성명

195) 미국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Austan Goolsbee & John Zittrain, "Evaluat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Taxing Internet Commerce", *Nat'l Tax J.*, Vol.52('1999), p.413. 참고(여기에서는 판매세의 2%미만의 손실이 수년에 걸쳐 발생할 것이라는 계산결과를 내놓았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의 조세 문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Susan Teltscher, *Revenue Implications of Electronic Commerce: Issues of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ies*, UNCTAD, Apr. 2000) 참조(여기에서는 조세감소가 일부 국가에서는 더 높게 나타나지만 평균적으로 개개의 국가에서 총 1%미만일 것이라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은 양국으로 하여금 OECD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정하며 전자상거래의 조세부과에 관한 컨센서스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는 상품 분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만약 디지털 전송물이 GATT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관세부과 논의는 필요가 없지만, GATS적용을 받을 경우에도 내국민 대우 부문에 양허를 하지 않는다면 수입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재화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 및 기준 등이 문제되나, 기술상 한계로 현재는 물품을 추적하고 관세권을 확보하는 것은 곤란하다.

당분간 관세권 확보가 곤란하고 전자상거래 촉진 취지상 모든 WTO회원국이 당분간 무관세 관행을 연장하는 것은 동의하고 있으나 향후 무관세의 영구화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관세관련 주요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미국과 호주는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 주장하고 있는 반면 EU는 당분간 관세 부과 유예를 유지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영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인도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관세부과유예를 함으로써 기술중립성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며, 다른 수단으로 전송되는 물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물에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은 기술중립성 원칙을 해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싱가포르 FTA연구 보고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장벽 제거차원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 재화에는 영구적 무관세 혜택 부여 (153,155조)하기로 되어 있다. 다만, offline으로 수입되는 전송매체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은 해당 전송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재화가 아닌 매체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무관세 영구화 여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및 향후 관세 부과 기술의 개발추이와 함께 경쟁국들의 무관세 경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타 경쟁국에 비해 무관세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 향후 미국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 강국과의 협상시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을 감안, 협상 여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단계적 개방이 바람직하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온라인게임, 드라마,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디지털콘텐츠산업 전반의 해외 경쟁력 분석 및 향후 발전 추세에 대해서는 보다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국인 싱가포르와의 영구무관세 조치로 인한 혜택과 향후 미국등과의 FTA협상이 영구 무관세 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얻는 이익을 서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전자상거래 관세 관련하여 미국·싱가포르 FTA 제14.1조는 미국측의 입장이 전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전자 상거래에 대한 무역 장벽의 전면 철폐 및 사용이나 개발에 대한 장벽 철폐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미국·싱가포르 FTA 제14.3.1 조에는 전자적 전송(transmission) 형태로 진행되는 On-line전달 형태의 당사국간 거래의 경우 무관세로 하고 있다.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전자전송 형태의 디지털 제품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구무관세는 미국이 주장하는 논리이며, 영구무관세의 언급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은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문제는 타국의 불공정 관행, 관세, 비관세,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영어로 된 콘텐츠가 경쟁력이 있으며, 미국은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경쟁력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영구무관세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경우 영구무관세의 언급을 피하고 기술발전에 따라 검토하여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문구가 협정문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싱가포르 FTA 제14.4.1조는 “각 당사국은 전자적 전송에 의한 타방 당사국의 디지털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기타 세금,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무관세를 규정하고 있다.

(4) 전자상거래와 원산지

상대국의 디지털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일종의 원산지 규정이 필요한 바,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디지털 제품의 제조, 생산, 최초판매지 또는 그 생산자, 연출자, 배급자 등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즉, FTA효과는 양국간 기업에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제3국으로 파급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국에서의 우회수입을 방지하는 원산지 규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 원산지 규정은 까다롭고 높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정의를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디지털전송거래에서 원산지 규명을 위한 기술적 장치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실제 집행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원산지는 제3국의 우회수출 방지, 관세 수입의 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간 분쟁해결 등에 있어서도 중요하므로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원산지 기술 및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타 분야에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향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또한 관련 국제규범의 형성추이에 따라 원산지 규정을 문제로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밖에 없다.

(5) 기타 관련문제

1)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많은 경우에 법률은 집행가능한 계약은 문서의 형태로서 작성하되, 당해 계약에 구속을 받는 당사자들이 서명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¹⁹⁶⁾ 보이지 않는 당사자와의 전자계약 체결로부터 초래되는 문제는 당해 전

196) Thomas J. Smedinghoff & Ruth H. Bro, "Moving with Change: Electronic Signature Legislations As a Vehicle for Advancing E-Commerce", *Marshall J. Computer & Info. L.*, Vol.17(1999), p.723, 725.

자서명을 법률상 누구의 것으로 보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Uniform Commercial Code에서는 일정한 계약에 대하여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사자의 신분과 전자계약 집행권한에 대해서는 전자통신만으로는 보증할 수 없다.¹⁹⁷⁾ 전형적으로 전통적인 계약은 서면의 서명이 행하여지는 바, 전자계약에서는 서명의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전자서명은 지문 또는 망막 스캔(scan) 등으로 디지털화될 수 디지털 서명이다. 보다 인기 있는 디지털서명 작성방법은 핵심기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기술을 통하여 메시지의 원천과 내용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서명한 자가 그 메시지를 입증하였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어떠한 것이 서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규칙상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인가가 명시되어야 전자상거래가 용이해진다. 그러나, 그러한 명시는 사실상 어려우며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2) 전자화폐와 지불제도

전자화폐라 함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지불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 차입카드(debit card) 또는 비축금액카드(stored value card) 등 화폐와 유사한 지불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두가지 기본적인 전자화폐 부류중 첫 번째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計定기초(account-based) 방식으로 통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代用硬貨化(tokenized)된 제도로서 절대적인 익명성이 보장되는 고도의 기술이 응용된 것이다.¹⁹⁸⁾

3) 우리나라의 대응

FTA체결로 전자 상거래 시장이 상호 개방될 경우 1)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 2) 우리가 내주어야 할 부분, 3)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¹⁹⁹⁾ 또한 단계적 개방 및 향후 새롭게 등장할

197) Mohammad Nsour, "Fundamental Facets of the United States- Jordan Free Trade Agreement: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and Beyond", Fordham Int'l L.J. Vol.27(2004), p.750.

198) *Ibid.*, p.752.

199) 참고로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부문은 방송 콘텐츠, 게임 등 소프트웨어 등이다

이슈에 대하여 추후에 협상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두어 향후 국가 이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상품의 정의의 경우 자국의 전자 상거래 상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등은 광의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협의의 정의가 요구된다.

5. 투명성

한국·칠레 FTA는 관련 법규의 집행에 있어서 사전고시, 정보제공 등 절차의 명료성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이 FTA와 관련된 정부의 행정조치에 대하여 행정 및 사법적 검토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모든 GATS 회원국들에게 무역정책, 관행 및 수립과정, 예측가능성 등이 명확하게 공개, 공표되어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각회원국은 GATS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NAFTA는 미국의 법률가들이 적법절차(due process)라고 부르는 “Publication, Notification and Administration of Laws”라는 별도의 장(Chapter)²⁰⁰⁾이 있으나 미국이 칠레 및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에서는 그러한 명칭의 장은 없으며 투명성(Transparency)라는 장이 있다.²⁰¹⁾ 그러나, 이 세 FTA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적법절차의 공통기준을 채택하고자 한 것이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6. 인적이동의 자유화

특히 FTA에서 인적이동의 자유화는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투자 및 서비스 공급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활동에 종사하는 일정 범주의 기업인에 대하여 일시 입국 및 체류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기술적 원천의 많은 부분은 기술자들

200) NAFTA 제18장.

201) 미국·칠레 FTA제20장 및 미국·싱가포르 FTA 제19장.

에게 체계화된 기능임을 감안해 볼 때 기술자의 단기, 장기체류를 더욱 편리하게 하는 것은 당해 선진국의 한국으로의 투자를 더욱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자 취득과 관련하여 서류·절차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무비자 협정으로까지 확대시켜 갈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인적이동의 활성화는 기업 관련자의 일시입국에 관한 사항만을 적용대상으로 상대국의 노동시장에 편입하거나, 영주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한국·칠레FTA에서는 인적이동의 자유화대상이 되는 기업인의 범주는 상용방문자, 무역업자 및 투자자, 상사주채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시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 입국에 대해서는 공중보건과 안전,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치에 저해되지 아니하는 한 협정 본문 및 관련 부속서에 의거하여 일시입국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업인의 일시입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노동허가, 사전승인절차 또는 수적인 제한을 부과할 수 없으나 비자를 요구할 수는 있다.

한국·일본FTA의 논의과정에서 인적이동분야에 있어서는 공동연구단계에서, 한국측은 한국·일본 양국간의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단기상용입국자에 대한 사증면제 및 복수사증에 관련된 조치의 개선 등 잠정조치의 검토를 제안해 왔다. 한국측은 또한, 비자면제 문제에 더하여, 양국간에 단기상용입국자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자격의 상호승인과 같은 조치의 추진을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²⁰²⁾ 비자면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시키기 전에,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인의 불법입국과 불법체재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측이 노

202)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도 인적이동에 관한 자유화에 대해서도, WTO에서의 규정 내용을 초월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인적이동의 자유화와 관련하여, 일본과 싱가포르는 WTO(GATS)에서 서비스업만을 대상으로 『90일 이내의 단기상용방문』과 『기업내 전근』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싱가포르EPA에서는 전술한 2개 분야와 더불어, 『투자자』 및 『상대국내 기업과의 계약에 근거한 입국』의 2개 분야를 새로이 추가하고, 대상업종을 서비스업뿐 만 아니라 제조업에도 확대시켰다. 또한, 상대국의 기술사자격(토목공업 분야)을 승인하여, 자국의 기술사에 대하여 허가된 업무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를 창설하기로 하였다.

력해야 한다고 대응해 왔다.²⁰³⁾

한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FTA에서는 개발도상국측에서 노동시장의 개방에 관한 요구를 하고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협상중인 일본-필리핀EPA(경제제휴협정)의 협상과정에서 필리핀은 인적이동의 자유화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간호사/개호사의 일본취업 인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일본측은 필리핀측이 요구하고 있는 취업인정문제에 대해 관련단체의 반발이 강하였으나 연간수용인원을 한정하여 간호사 등 외국인 취업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현재, 전문적인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에서의 취업을 인정하고 있는데, 간호사 및 개호사도 이 기준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판단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 간호사/개호사의 취업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의료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국가자격취득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복무중에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일본어회화능력도 요구하고 있다.²⁰⁴⁾

한편, 일본-태국EPA 협상과정에서 태국은 자국 노동자의 일본취업문제와 관련하여 개호사, 조리사, 맛사지사, 이용사, 보모 등 폭넓은 분야의 노동자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 왔다.²⁰⁵⁾ 결국, 협상의 최종단계에서 일본측은 태국 요리사에 대한 재류자격요건을 실무경험 10년 이상에서 5년

203) 정부간 정식협상 과정에서는 쌍방의 FTA문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상호간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깊히하여 왔는데, 이 분야와 관련하여 반기문 외교통상부장은 2004년 12월, 마찌무라 일본외상과의 회담에서, 한국·일본간의 교류확대를 위해 쌍방이 출발지에서 입국수속을 마치는 사전심사제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마찌무라 외상은 범무성측과 검토해 본다는 회답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

204) 필리핀의 간호사·개호사자격을 보유한 사람에 한정하고, 현지에서 일본어 등의 연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 체제기한을 수년간으로 제한하여 입국을 인정((후보자의 선발, 송출, 연수, 체제))며, 일본국내의 병원이나 개호시설 등에 근무하면서 연수를 받아, 일본의 간호사/개호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간수용인원에 대해서는 일본과 필리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05) 일본정부는 2004년 8월시점까지도 필리핀과의 EPA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던 외국인간호사 및 개호사의 일본취업문제에 대해, 인원수를 제한하여 조건부로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었으나, 이 방침은 어디까지나 필리핀에 한정된 것이라는 입장이었고, 다양한 분야의 취업인정을 원하는 태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양국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상으로 완화하고, 개호사를 일정조건하에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수용안을 제시하였고, 2005년 7월 이 부분에 대한 기본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인원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차후 조정문제로 남겨놓고 있다.

7. 경쟁정책에 관한 정보교환 또는 조화

경쟁정책의 조화는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내외국 차별 없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규율하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FTA체약국간에 제도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을 내용을 한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목적과 배경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는 경쟁정책을 조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경쟁정책을 조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경쟁정책 조화를 FTA에 명시한 경우는 EU, NAFTA, E U·멕시코FTA, 일본·싱가포르FTA²⁰⁶⁾ 등에 불과하다. 한국·일본 FTA 체결과 관련하여서도 경쟁정책의 조화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실현가능성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일본 양국은 그동안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한다는 의도에서 독점금지법의 실제규정과 그 운용을 더욱 강화시켜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의 계열·하청거래의 경쟁제한적 행위, 한국의 재벌집단에서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평가된다. 현재와 같은 한국·일본간의 유사하나 경쟁법제를 그대로 유지시킨다면 경쟁정책의 조율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아닐 것이다.

한국·칠레 FTA에서는 비경쟁적 조치가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한국·칠레 양국이 경쟁법 분야에서 상호 정보교환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역내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증진하기 위한 당사국간의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쟁정책의 이행으로 상대국의 이익에

206)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는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싱가포르가 경쟁법을 보유하고 있는 전기통신, 전력/가스분야에 있어서, 집행활동에 관한 통보, 정보교환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협정 발효후 3년이내에 협력활동의 범위를 집행활동의 조정, 적극예양, 소극예양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한 경우 타당 당사국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²⁰⁷⁾

제 4 절 지적재산권의 보호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보호 등의 미등록 지적재산권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권리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FTA상의 보호대상 투자로서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일부 양자간투자협정이나 FTA는 그러한 미등록 권리의 범주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²⁰⁸⁾

특허, 상표, 실용신안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은 일정한 지적재산권은 신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지적재산권들은 이해 당사자의 요구에 의한 등록절차를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²⁰⁹⁾ 그러한 권리는 신청후 승인을 얻은 때에만 부여된다. 그러므로 특허의 신청은 배타적인 권리의 획득 즉 이익(profit)의 기대를 형성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특허신청은 거래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특허신청이 승인을 받기 전에도 침해자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 등 권리로서의 성격을 인정받고 있다. 아직 등록되지 아니한 발명은 지적재산권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적어도 무형재산(intangible property)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일부 투자협정²¹⁰⁾에서는 투자의 정의에 저작권,

207) 한국·일본 FTA 교섭과정에서 한국·일본 양국은 FTA를 통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의 잇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반경쟁적행위에 대응하여 경쟁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양국 경쟁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한국·일본 FTA에 경쟁정책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있는데, 협상과정에서는 쌍방의 협정문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른 상태이다.

208) Carlos M. Correa, "Investment Protection in Bilateral and Free Trade Agreement: Implications for the Granting of Compulsory License", *Mich.J. Int'l L.* Vol.26(2004), p.339.

209) 다만, 컴먼로의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는 상표는 공식적인 등록이 없어도 단순히 부호(sign)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획득될 수 있다. *Ibid.*, p.340.

210)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Barbados for Reciproc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art1(f)(V); <http://www.sice.oas.org/bitse.asp#CAN>(여기에서는 투자에 지적재산권을 포함시키고 지적재산권에는 저작권 및 그와 관련된 권리(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그리고

특허와 관련된 권리(right with respect to copyrights, patents.....)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부여된 권리뿐만 아니라 신청까지도 투자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²¹¹⁾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어떠한 권리가 자본도입국에서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보호받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외국에 있는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자본도입국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이다.²¹²⁾ 둘째, 지적재산권의 기간이 만료하였거나 자본도입국에서 취소되었지만 외국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경우이다. 셋째, TRIPS 제 27.3(B)에 의하여 식물·동물에 대해 허용되는 적용배제를 신청하거나 단순히 분리된 유전자(isolated gene)에 대한 특허를 거부하는 국가에서의 경우 등 당해 지적재산권이 자본도입국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TRIPS는 1980년대 중반 및 1990년대 초반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기간동안에 출현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TRIPS와 공업소유권보호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는 양자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함에 있어서 유사한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가장 큰 차이점은 상표와 도메인 명칭을 보호하는 데 있다. 먼저 TRIPS는 영업권(goodwill)의 의미를 확대함으로써 상표소유자에 대한 강화된 보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혼란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국가별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국가에서 보호로부터 제외되는 특정한 종류의 지적재산권은 당해 국가에서의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되므로 법인이나 자연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자산으

기타 권리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211) Carlos M. Correa, *op.cit.*, p.340.

212) 이러한 경우는 대단히 흔하다. 예컨대, 개발도상국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행하는 특허 신청중 극히 일부의 신청만을 접수한다. WIPO Industrial Property Statistics. <http://www.wipo.int/ipstats/en/>.

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사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보호를 받은 잘 알려진 상표의 경우에는 TRIPS 제16.2조가 한 가지 예외로 인정하고는 것이다. 최근의 FTA들은²¹³⁾ 그러한 예외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상표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WIPO의 공동권고 내용²¹⁴⁾을 반영함으로써 TRIPS의 기준을 뛰어넘어 확대하고 있다.

중미FTA(CAFTA: 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은 TRIPS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보호에 관한 탄력성을 부인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게 이러한 탄력성을 부여한 TRIPS의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TRIPS는 개발도상국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독자적인 우선순위와 요건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상을 할 수 있다. 즉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성문화된 의무를 용인하는 대가로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전통적인 제조상품과 농산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더 크게 부여받았다.

TRIPS 제7조는 “사회적·경제적 후생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협정의 목적을 기술적 혁신 및 기술의 이전 및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동 협정의 목표임을 천명하고 있다. 제8조는 협정의 규정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공공보건과 영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제8조는 그와 동시에 회원국이 무역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거나 국제적인 기술이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관행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66조는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건전하고 자생적인 기술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조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한 사용에 대해서만 보호하는 TRIPS 제39.3조와 크게 대조적으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제15.10.1(a)조는 훨씬 더 제한적인 5년동안의 데이터독점성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일방 당사국이 새로운

213) 예컨대. 미국·칠레 FTA(2004년 1월 1일 발효), art.17.2.9.

214) WIPO Joint Recommendation Concerning Trademark Licenses(Oct.3, 2000), http://www.wipo.int/about-ip/en/development_iplaw/index.htm 참조.

의약품의 판매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안전성과 효과에 관한 미공개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당해 당사국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로 하여금 1) 그러한 정보 또는 2) 당해 당사국이 승인한 날로부터 적어도 5년동안 그러한 정보를 제출한 자에게 부여된 승인에 기초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TRIPS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던 데이터독점성 조항과 유사하게 미등록의약품 제조업자가 최초의 의약품과 생물학적 등가물(bioequivalence)을 구현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제3자 또는 미등록제조업자는 당해 최초 의약품에 대한 승인이나 최초창시자(originator)가 제공한 데이터에 의존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바꾸어 말해서 미등록의약품 제조업자는 최초의 창시자에게 부여된 승인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시장에 그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독점성의 부여는 특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주며 강제적 허여(compulsory license)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미등록 의약품이 시장에 판매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²¹⁵⁾

CAFTA 제15.10.1(b)조는 데이터독점성 조항을 타국에 등록된 상품에 대해서까지 확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의약품이 세계 어느 국가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경우 데이터독점성 보호는 CAFTA 역내에서 적용된다. 더 나아가 의약품의 판매승인을 얻어내기 위하여 미등록의약품 제조업자는 다른 영역에서 이미 판매승인이 되었음을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적어도 5년 동안 다른 영역에서 판매승인을 얻기 위하여 이미 제출된 안전성과 효과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도 없다. 이는 TRIPS 제39.3 조상의 요건과는 전혀 유사성이 없다.²¹⁶⁾

한편 한국·칠레FTA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이행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지적재산권의 이행을 위한 보호조치가 정당한 무역에 대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고 WTO/TRIPS에 위

215) Rahul Rajkumar, “The 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n End Run Around the Doha Declaration on TRIPS and Public Health”, *Alb.L. J. Sci. & Tech.*, Vol.15(2005), p.465

216) *Ibid.*, p.467.

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국법을 통하여 당해 FTA가 요구하는 것보다 광범위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국간 무역 및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는 사회기반의 한 축을 이루는 지적재산권, 특히 상표의 보호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FTA를 통하여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지리적 표시의 적절한 보호가 경제활동의 왜곡을 방지하고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즉, 지리적 표시의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상대국에서 등록 및/ 또는 보호되고 있고 WTO/TRIPS 관련조항(제2장 제3절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규정된 보호의 범위에 속하는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당사국은 상대국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이 당해 국가에서 생산되지 아니할 경우, 그 상품의 수입,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FTA에 따라 한국은 고려인삼, 한국김치, 보석녹차에 대하여 또한 칠레는 피스코 등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일본 양국은 200년 “한국·일본경제협력의제21”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바 있다. 즉 양국정부는 심사기준 등의 운용의 조화, 위조상품대책에서의 협조, WTO·WIPO 등에서의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협력 등 지적재산권분야에서의 공통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으로 지적재산권의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전산화협력, 심사관 교류프로그램, 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하여왔다. 그러나 이 또한 MRA 논의와 마찬가지로 그 이후 별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지적재산권보호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노사문제보다도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일본은²¹⁷⁾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및 제도화를 한국·일

217)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는 지적재산분야에서 양국에서 동일한 발명에 관한 특허 출원을 한 출원인이 자국에서의 출원 심사결과를 상대국의 지적재산 관계당국에 제출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특허절차의 원활화 조치가 규정되었다. 또한, 지적재산분야와 관련하여, 일본의 인터넷 특허전자도서관(IPDL)과 싱가포르 지적재산 정보검색HP(Surf IP)와의 상호접속, 전문가 교류 등의 협력을 실시하기로

본 FTA에 포함할 항목으로 제시하고 위조상표, 불법 CD 및 비디오 등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²¹⁸⁾ 따라서 지적재산권보호는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국내투자자에게 기술을 이전하거나 고급기술이 채택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지적재산권보호로 인해 기존의 직접투자를 라이선스(licence) 공여로 대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론적으로 시장에서의 기술거래시 해당 기술의 객관적인 가격산정이 곤란하며 기술이전과정에서의 제3자로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기업은 기술거래를 시장보자는 기업내부로 내부화(internalization)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직접투자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술보호에 대한 제반규정을 엄격히 하는 것은 시장거래의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되므로 직접투자에 대해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외국기업이 지적재산권보호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측면뿐만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개선요구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보호의 강화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다.

하였다.

218) 한국·일본 양국은 공동연구 단계에서, 지적재산권이 경제 및 문화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일본FTA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 관련규정은 특히,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관하여 배른 조약 등 양국이 가입하고 있는 기존의 저작권관련 조약에 준거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를 한 상태이다. 당시, 일본측은 한국의 지적재산권제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에 관한 요청리스트를 한국측에 제출하였는데, 그 리스트에는 절차의 간소화, 보호대상범위의 확대, 상표출원에 있어서의 선/후출원 기준일의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측은 일본특허청과 한국특허청이 서로 상대방을 특허협력조약(PCT)에 근거한 영문출원에 대한 관할국제조사기관(ISA)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명할 것과 심사결과를 공유할 것을 일본측에 요청하였다. 한편, 정부간 정식협상과정에서 일본측은 지적재산권 관련문제로서, 신식품식물에 관한 권리보호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신식품식물에 대한 한국의 보호체제가 충분치 않아서, 딸기 등의 신식품종 종묘가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유출되어 무단재배되었다는 의혹이 있고, 앞으로도 신식품종의 불법재배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FTA협상을 통해 관련제도의 개정 및 상설협의위원회의 창설을 제안하는 등 한국측에 대해 신식품종 식물에 관한 권리의 보호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 5 절 정부조달

전세계 각국의 정부조달²¹⁹⁾ 시장 규모는 자국 GDP의 10-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40%에 달하기는 대규모시장임에도 불구하고 WTO체제하에서는 관련 규범이 아직 취약한 편이다. 현행 WTO 정부조달관련협정은 GATT, GATS, GPA(정부조달협정)과 현재 협상중인 정부조달투명성협정 등이 있다. 이중 GPA는 24개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정부조달 관련 무역에 무차별성과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조달시장의 협정 당사국간의 개방은 발주국내에서의 공사 진행등에 수반한 역내국가의 무역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조달이라 함은 대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수주자가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발주국 정부에 조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대형 건설공사 등 장기간을 요하는 조달인 경우에만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역내국가에 관련 현지법인을 창설할 가능성은 있지만 외국인직접투자의 도입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또한 GPA에서는 국내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외국계 기업과 국내기업간에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이를 FTA 체결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역외국가에 배타적인 대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분야의 FTA 일방 당사국의 타방에 대한 역내투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분야에 대해서는 무역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그다지 크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FTA 당사국들은 타방 당사국의 정부기관 조달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

한국·칠레 FTA는 당사국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원칙을 적용하며 기타 차별적인 국산품 우선구매요건 및 대응구매(offset)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조달제도, 공급자자격요건, 공급자 선정결과 등에 대해 명료성을 보장하고 전자매체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방안을 공시하여야 한다. 정부조달협정 부속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19) 여기서 정부 조달이란 중앙 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조달을 모두 포함한다.

다음과 같다. 한국측은 기존의 WTO 정부조달협정상 양허기관을 개방(42개 국가기관, 15개 지자체(광역자치단체 국한하여 개방), 21개 투자기관)하고 칠레측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칠레·EU FTA상의 양허기관(국가기관, 지방정부, 투자기관)을 개방하였다. 한국측은 중소기업보호정책을 이유로 현행 중소기업보호제도를 정보조달협정의 예외로 확보하였으며 정부조달협정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한국·칠레 FTA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외에도 치안·안보와 관련된 별도의 예외규정을 설정하였다.²²⁰⁾

NAFTA의 경우 정부조달규정은 캐나다·미국 FTA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 바, 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가 이미 캐나다·미국 FTA에 따른 개방입찰요건 및 NAFTA에서 자유화된 GATT의 정부조달에 관한 다자간협정을 실시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협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현재, NAFTA내에서는 연방정부기관 발주의 상품 및 서비스, 연방정부기관 발주의 건설계약, 공기업 발주의 상품 및 서비스계약, 연방공기업 발주의 건설계약에 관하여 모든 역내 국가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도 정부조달 분야에서 상대국 공급자에 대한 응찰기회를 WTO 정부조달협정에서 약속한 것보다 더 확대하기로 합의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조달기준액을 1,400만엔(10만싱가포르달러)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제 6 절 양국간 협력

양국간의 협력에 관한 내용은 당사국의 협상에 의하여 정하여지게 된다. 따라서 이 분야의 내용은 각 FTA마다 현재까지는 다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 국가간에는 금융분야에서의 협력이 최근 들어 협상

220) 정부조달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및 외국기업 모두의 적극적인 참가를 촉진시키는 좋은 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현행 입찰절차의 간소화 및 정부조달에 관한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전자조달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한국·일본 양국이 인식을 같이 하고, 쌍방의 협정문안을 토대로 논의를 계속해 왔다.

대상이 되어 FTA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즉, 경제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특히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경제위기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아시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실현에는 아시아 지역내에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금융시스템의 존재가 필요불가결하다는 인식하에, 당사국들은 아시아 지역의 금융인프라의 정비를 목표로, 당사국간의 증권거래소간의 제휴, 전자결제시스템의 정비, 금융부문의 규제/감독에 관한 협력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한편, 경제활동에 불가결한 정보의 신속 정확한 교환, 정보기술을 구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조 등을 통하여,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IT기술의 발달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등의 문제에도 대응하기 위하여, IT기술의 보급, IT관련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 촉진, IT기술자의 교류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게 된다. 과학기술에 관한 협력분야에서는 생명과학, 환경 및 첨단기술분야의 연구 촉진을 위하여, 정보 및 자료의 교환, 세미나, 워크샵 등의 공동개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의 교류 등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인재양성분야에 있어서는, 양국 대학간의 학생/교수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대학교류협정(단위 호환 및 학비면제 등을 규정)을 체결하고, 상대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연수목적의 공무원 교류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제3국에 대한 공동지원을 확충키 위한 조치를 취하고 연수생을 대상으로 산업기술, 경영관리 등을 주제로 하는 공동연수프로그램을 창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다.

중소기업진흥분야에 있어서는 양국간의 협력을 통하여, 사절단의 상호 파견 및 지원을 통한 양국 중소기업간의 사업연결, 원스톱정보서비스의 정비 및 데이터베이스 기능의 확충을 실시하거나 상대국에 비즈니스지원 센터를 창설하여, 상대국에 진출을 희망하는 자국기업에 대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다.

방송 및 관광방송분야의 협력사항으로는 방송정책 및 새로운 방송서비스에 대한 정보교환, 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등이, 관광진흥 부문에서는 당

사국국간의 상호방문 확대 및 관광지개발에 대한 협력 추진과 구체적인 추진책으로서 당사국의 특정 도시 또는 지역간의 자매결연 및 기념행사의 실시 등도 포함된다.

제 7 절 분쟁해결

NAFTA의 외국인투자자와 그 자본유치국간의 분쟁은 UNCITRAL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ICSID(the World Bank's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또는 ICSID Additional Facility의 규칙에 따라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NAFTA에 의거하여 임명된 중재판정부는 자본유치국이 제11장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결론을 내린 경우, 자본유치국 정부에 외국인투자자에게 보상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적인 재산을 자본유치국이 완전히 몰수한 경우에는 어느 정부도 외국인투자자에게 정당한(just) 보상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형태의 간접적인 수용 특히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자본유치국이 국내법의 적용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재산 또는 재산적 권리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다면 자본유치국정부가 환경상의 규제조치를 포함하여 시민의 보건·공공복리의 필요성을 이유로 규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미국·요르단 FTA도 역시 다단계(multi-step)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고 있다. 먼저, 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일방 당사국이 타방이 취한 조치가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무역상의 이익의 균형을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협정의 기본 목적을 실질적으로 훼손한 경우, 당사국들은 협상을 통한 상호합의 해결(mutually agreeable resolution)을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하여야 한다.

만약 당사국들이 60일내에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일방 당사국은 문제를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공동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공동위원회는 미국·요르단 FTA의 적절한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며²²¹⁾ 공동위원회가 90일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한 기간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일방 당사국은 문제를 분쟁해결 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²²²⁾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해결패널은 비구속적인 권고안은 보고서로 작성한다. 분쟁해결패널은 90일 이내에 사실발견(findings of fact) 및 어느 일방당사국이 협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 또는 일방당사국이 취한 조치가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무역상의 이익의 균형을 심각하게 왜곡하였거나 협정의 기본목적들을 실질적으로 훼손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당사국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²²³⁾ 그러한 보고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FTA의 분쟁해결패널은 실제로는 당사국들간의 조정자(mediator)에 불과하다.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내려진 평결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일방당사국이 양보하기 전에는 합의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분쟁해결패널이 그 보고서를 제출하면, 공동위원회는 그 보고서를 참조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공동위원회가 패널보고서를 받은 후 30일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당사국은 적절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집행을 위한 메커니즘으로서의 무역제재의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²²⁴⁾

221) Art.15(1). 위원회는 미국과 요르단 대표들로 구성되며, 미국무역대표부와 국제무역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요르단 장관 또는 그들이 지명한 자가 주재한다.

222)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당사국이 1인을 임명하고 그 2인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제3의 인물을 선출한다. Art.17(1)(c).

223) Art.17(1)(d).

224) Mohammad Nsour, *op.cit.*, p.742. Nsour은 그러한 무역제재의 사용은 보복(retaliations)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복이라 함은 패널 또는 상소기구의 평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협정 위반국에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과 요르단 FTA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게 된다. 첫째, 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다.²²⁵⁾ 첫째, 일방 당사국이 타방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목표를 왜곡(distort)하거나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substantially undermine)하는 극단적으로 해로운 기준을 채택하였다고 믿거나 ²²⁶⁾둘째,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다.²²⁷⁾ 미국·요르단 FTA는 투명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모든 분쟁단계에서 교섭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WTO 분쟁해결제도와 유사하다. 미국과 요르단은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투명성에 관한 양해각서(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ransparency in Dispute Settlement)²²⁸⁾를 체결하여 당사국들에게 광범위한 입장을 모으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대중 구성원들의 견해를 제시하도록 하고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각서에 따르면 분쟁 패널(dispute panel)이 창설되면 일반인들이 동 패널에 분쟁을 제기하게 되면 패널에서의 구두의견진술도 대중 구성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동 패널은 개인, 법인 및 NGO가 제기한 문제들을 접수하고 심의하여 대중에게 보고서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²²⁹⁾

첫째, 60일내에 당사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은 구속력이 없는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독립된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에 회부될 수 있다. 이러한 독립된 전문가들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또한 전문가들의 어느 국가의 국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전문가는 미국과 요르단 외의 국적을 가진 자도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²³⁰⁾

둘째, 협의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사건은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회부된다.²³¹⁾ 미국·요르단FTA는 공동위원회 창설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위원회는 분쟁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

225) 미국·요르단FTA 제17조(1)(a)(i).

226) 미국·요르단FTA 제17조(1)(a)(iii).

227) 미국·요르단FTA 제1조(1)(a)(ii).

228) <http://www.jordanusfta.com/documents/memodis.pdf>.

229) Ibid.

230) Mohammad Nsour, *op.cit.*, p.777.

231) 미국·요르단FTA 제17조(1)(a).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예컨대, 협정을 개정하고 또한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의 역할도 한다. 공동위원회는 미국무역대표부와 요르단의 국제무역담당장관이 주관하며 컨센서스에 의하여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된다.²³²⁾ 공동위원회는 NGO의 권고도 구하게 되며²³³⁾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요르단 FTA내에서 NGO는 현재의 WTO내에서 NGO가 수행하는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공동위원회가 90일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분쟁은 다시 특별히 임명된 3인의 분쟁해결패널에 회부된다.²³⁴⁾ 분쟁해결패널은 비구속력있는 결정만을 내릴 수 있다. 공동위원회는 보고서를 고려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²³⁵⁾ 당사자들은 분쟁을 해결패널(settlement panel)에 회부할 수도 있다. 당사자들은 해결패널을 구성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패널의 구성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 당사국은 패널에 참여할 1인을 선택하고 그 후 각 당사국이 선택한 2인이 제3의 인물을 선택한다. 그 제3의 위원이 패널의 의장이 된다. 패널은 90일내에 비구속적인 결정을 내리고 분쟁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²³⁶⁾

공동위원회가 30일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당사국은 적절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²³⁷⁾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WTO에서의 의무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러한 점은 단순한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꾸어 말해서 미국·요르단FTA의 분쟁해결조항은 무역제재의 사용을 협정 집행매커니즘의 하나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제재는 보복

232) 미국·요르단FTA 제15조(3).

233) 미국·요르단FTA 제15조(3)(b)(공동위원회는 수시적 및 상설적 위원회 또는 실무단을 창설하고 책임을 위임할 수 있으며 NGO의 권고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NGO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34) 미국·요르단FTA 제17조(1)(d).

235) 미국·요르단FTA 제15조(2)(a)

236) 미국·요르단FTA 제17조(1)(d).

237) 미국·요르단FTA 제17조(2)(b).

(retaliations)으로 부를 수 있다. 보복은 협정 위반국에 대해 패널 또는 상소기구의 판정을 집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들에게는 간접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다. 만약 당사국들이 WTO 체제내의 의무와 공약(commitments)을 존중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면 미국·요르단FTA상의 분쟁해결조항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

한편, 한국·칠레 FTA 및 WTO의 공동 해당사항의 경우 양 협정상 의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분쟁해결절차는 당사국 간의 협의, 자유무역위원회의 주선, 화해 및 중개, 패널창설의 순서로 되어 있다. 패널절차는 다음과 같다. 당사국이 합의한 패널위원 후보명보(임기 3년의 15인 이내로 하되, 3분의 1은 제3국출신 전문가로 한다)를 작성하고 패널창설 요청서 접수후 15일 이내에 명부에 기재된 패널위원 후보중 3인으로 패널을 구성한다. 패널은 사실 확인 및 피제소국의 협정상 의무위반 행위 여부를 심사하고 분쟁해결 권고안을 작성한다. 패널은 최초보고서를 분쟁 당사국에 제시하여 의견을 접수한 후 최종보고서를 당사국에게 제출하며 최종보고서 제출후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분쟁에 따른 피해 상당액의 보복조치 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투자분쟁의 당사자는 투자자와 당사국이다. 물론 당사국이라 함은 한국 또는 칠레 정부를 의미하며 분쟁당사자로서의 투자자라 함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투자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일방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국영기업, 국민 또는 기업으로서 자본을 투입하거나 적용가능한 경우 투자를 시행중이거나 이미 시행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투자자에는 한국과 칠레의 국민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당사국 정부나 당사국의 국영기업도 포함된다. 한국·칠레 FTA에서는 투자관련 분쟁으로 인해 중재에 회부된 청구가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40 조 제7항). 뉴욕협약에서 국가인 공법인도 사업관계에 관하여 중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칠레 FTA에서 투자분쟁의

당사자로서 투자자에 국가나 국영기업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동 협정에서는 분쟁사건을 중재에 회부하기 전에 먼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협상(consultation or negotiation)을 통해 우의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제10.22조). 따라서 앞으로 동 협정하에서의 투자관련 분쟁은 그 최종해결을 위해 중재에 회부하기 전에 당사자간에 협의나 협상을 통한 해결노력이 선행될 것이다²³⁸⁾. 협정 제10.26조는 중재동의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청구의 중재회부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중재동 의와 분쟁투자자에 의한 청구의 중재회부는 양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위한 ICSID협약 제2장(관할권), 및 ICSID 추가절차규칙(Additional Facility Rules) 및 뉴욕협약 제2조의 요거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CSID 협약 제2장은 분쟁해결을 위한 본부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의 관할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²³⁹⁾

본부의 관할권은 계약국에 의하여 본부에 지정된 동 계약국의 하부조직 또는 기관과 타방 계약국 국민간의 투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legal dispute)에 대해서 미치게 된다. 법적 분쟁이라 함은 권리에 관한 분쟁(conflict of right)을 의미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적 분쟁은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의 존재 또는 범위에 관한 분쟁 또는 법률상의 의무(legal obligation)위반에 대한 회복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본부의 관할권은 분쟁당사자가 본부에 회부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분쟁에 미치게 되며 당사자가 그러한 동의를 한 경우에는 어떠한 당사자도 그 동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ICSID 협약에 따른 당사자의 중재동의를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구제방법의 배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일방 계약국의 투자자가 분쟁 사건을 ICSID에 제출한 후에는 자본도입국인 타방

238) 1996년 9월 6일 서명하고 1999년 9월 16일 발효한 한국·칠레투자협정에서도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

239) ICSID Convention Arts.25 to 27.

채약국이 자국 법원에서 투자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협약위반을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어떠한 채약국도 자국의 국민과 타방 채약국이 ICSID 협약에 의한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하였거나 중재에 회부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자국 투자자를 위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거나 국제적인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ICSID 추가절차규칙은 ICSID가 1978년 이후 마련한 규칙이며 ICSID 협약의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가와 국민간의 분쟁해결절차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속하는 업무유형으로는 1) 일방 국가와 외국투자자가 속하는 국가의 어느 일방이 ICSID 협약이 채약국이 아닌 경우의 조정 및 중재절차, 2) 투자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통상의 상업적 거래(an ordinary commercial transaction)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분쟁사건의 조정 및 중재²⁴⁰⁾, 3) ICSID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절차인 사실조사절차(fact-finding proceedings)에 일방 국가와 외국투자자가 합의한 경우 그와 관련된 업무들이다.

뉴욕협약 제2조의 요건이라 함은 ‘서면합의’에 관한 사항이다. 제1항에서 중재동의의 대상 및 채약국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쟁은 일정한 법률관계(a defined legal relationship)에 관련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되며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현존하는 분쟁이든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이든 이를 불문하고 각 채약국은 당사자간 서면에 의한 합의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는 중재동의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서면에 의한 합의(agreement in writing)이라 함은 계약문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간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 제3항은 妨訴항변 및 直訴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간에 중재동의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면 채약국의 법원은 중재동의가

240) 예컨대, 일당당사국(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타방 당사국 영역 내의 자국투자자에 의한 투자와 관련된 ‘비상업적 위험(non-commercial risks)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계약이나 재정보증과 관련된 분쟁이 이에 속하는 유형의 분쟁이 된다 (한국·칠레FTA 제10.14조 제1항 참조).

무효, 효력상실 또는 이행불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중재에 부탁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칠레 FTA에서는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뉴욕협약 가입국인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장소의 결정은 1) 중재가 행하여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장소의 결정은 1) 중재가 ICSID 추가절차규칙 또는 ICSID 협약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ICSID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2) 중재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를 경우에는 동 규칙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0.325조). ICSID 추가절차규칙중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및 사무국과 협의한 후 중재지를 결정하는데 중재판정부는 물품, 재산이나 문서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장소도 회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판정은 중재장소에서 행한다.²⁴¹⁾ UNCITRAL 중재규칙에서도 이와 같은 ICSID 절차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²⁴²⁾ 즉, 중재장소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중재장소를 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장소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국가내에서 중재가 행하여질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곳에서 증언을 청취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 상호간의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물품, 재산 또는 문서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서 회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검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도 ICSID에서와 같이 중재장소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분쟁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인 타방 당사국이 한

241) ICSID 추가절차규칙중 중재규칙 제20조.

242) UNCITRAL 중재규칙 제16조.

국·칠레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관련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으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본 경우 그 구제를 위한 청구를 위하여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타방 당사국의 투자위반 및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10.20조). 분쟁투자자는 청구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1) 분쟁당사국 및 투자자의 당사국이 모두 ICSID협약의 회원국일 경우 ICSID 협약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으며 2) 분쟁 당사국 또는 투자자의 당사국 중 1국만이 ICSID협약의 회원국일 경우에는 ICSID 추가절차규칙 또는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중재에 적용되는 규칙은 중재절차에 그대로 적용되지만 한국·칠레 FTA에 따라 일부 수정되어 적용될 수도 있다(제10.24조).

한편, 한국·칠레FTA에서는 분쟁투자자에게 중재회부 전에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10.25조 제1항). 즉, 1) 투자자 및 그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직간접으로 지배하는 기업 모두가 분쟁당하국의 행정재판소 또는 법원에 동일한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것, 2) 투자자가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중재에 동의할 것, 3)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직간접으로 지배하는 기업의 이익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 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분쟁당사국이 취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다른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는 권리를 포기할 것 등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지급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지명령, 확인판결 또는 기타 특별구제를 위한 절차는 제외된다.

한국·칠레 FTA에서는 청구의 중재회부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ICSID협약 제36조 제1항에 따른 중재요청이 ICSID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이다.²⁴³⁾ 둘째, ICSID추가절차규칙 제3부(중재규칙) 제2조에 따른 중재통지가 ICSID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이다. 동 조항에

243) 동 제36조 제1항은 “중재절차를 제기하고자 하는 계약국 또는 계약국 국민은 그러한 취지의 요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동 요청서의 사본을 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하면, 중재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국가의 국민은 ICSID 소재지의 사무국에 서면으로 작성한 중재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중재신청서는 ICSID의 공용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일자를 명시하고 신청당사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중재신청서는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작성될 수 있다.

셋째, UNCITRAL중재규칙에 따라 통보된 중재통지가 분쟁당사국에 접수된 때이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1인의 중재위원을 임명하고 달리 수석중재인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제10.27조). 그러나 당사국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분쟁 당사자들이 수석중재인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10.28조). ICSID사무총장이 중재인 임명권자로서 역할을 한다. 사무총장은 청구가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아니하면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중재인을 임명한다. 다만, 수석중재인의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분쟁 당사자 어느 일방 당사국의 국민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석중재인명부에서 의장을 임명한다.²⁴⁴⁾ 그러나 수석중재인이 없을 경우 사무총장은 ICSID 중재위원 패널에서 수석중재인을 임명한다.

한국·칠레 FTA에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의 임명합의와 관련하여 1) 분쟁당사국은 ICSID협약 또는 ICSID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회부하거나 계속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29조).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직간접으로 지배하는 타방 당사국소재의 기업을 대신하여 타방 당사국이 한국·칠레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관련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으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본 경우 그 구제를 위한 청구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제10.21

244) 한국과 칠레 양국은 협정 발효일에 ICSID협약과 동 추가절차규칙, UNCITRAL 중재규칙상의 자격에 부합되고 국제법 및 투자문제에 경험이 있으며 어느 일방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중에서 30으로 구성되는 수석중재인명부(roaster of presiding arbitrators)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명부의 구성원은 양국에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조). 이 경우 투자자는 타방 당사국의 투자위반 및 손실이나 손해를 입은 사실을 기업이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ICSID 협약, ICSID추가절차규칙 또는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청구사건이 중재에 회부되는 것이나 이들 협약이나 규칙이 일부 수정되어 적용되는 것은 일방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중재회부의 경우나 동일하다. 또한 분쟁 투자자에게 중재회부 전에 요구되는 전제조건인 구비내용, 중재회부 시점 및 중재판정부 구성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자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직간접으로 지배하는 타방 당사국 소재의 기업을 대신하여 중재를 청구하는 경우 동 투자자 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지배권이 없는 투자자가 타방 당사국을 상대로 동일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새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그 청구사건을 병합심리한다. 새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UNCITRAL규칙에 따라 창설되며 이 FTA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새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 분쟁당사자로부터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요청서를 접수하면 사무총장은 수석중재인 명부에서 의장을 임명하되, 그러한 수석중재인이 없는 경우 ICSID 중재패널에서 어느 일방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를 의장으로 임명한다(제10.30조 제5항).

중재판정부는 한국·칠레FTA와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분쟁의 쟁점을 결정한다(제10.35조 제1항).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분쟁 당사자들이 승인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판정부 자신의 발의에 의하여 1인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하여 분쟁 당사자가 제기한, 환경, 보건, 안전 기타 과학적 사안에 관한 사실 문제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제10.37조).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소유 또는 지배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판정부의 관할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포함하여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판정부의 관할권이 완전히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잠정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압류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투자자의 주장, 즉 타방 당사국이 투자와 관련하여 한국·칠레FTA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할지라도 타방 당사국이 내린 그러한 조치의 적용을 금지할 수 없다(제10.38조).

중재판정부는 당사국에 불리한 최종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다음의 판정만을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내릴 수 있다. 첫째, 금전적 배상 및 적용가능한 이자지불, 둘째 재산의 원상회복이다. 이 경우 판정에서 분쟁 당사국이 원상회복을 대신하여 금전적 손해배상 및 이자를 지불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당사국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을 지불하도록 명할 수 없다. 중재판정부는 또한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지불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중재규칙은 ICSID협약 및 그 추가절차규칙, UNCITRAL 중재규칙이 된다.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당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청구를 제기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1) 재산의 원상회복 판정에 대해서는 그 총액이 기업에 지불되도록 하여야 하며 2) 판정은 적용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행하되, 보상에 대해 특정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분쟁당사자들간 및 당해 사안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분쟁당사자는 적용가능한 재심절차에 따를 것은 조건으로 지체 없이 판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한국·칠레 FTA에서는 분쟁당사자에 의한 최종판정의 집행요구 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ICSID협약에 따라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1) 최종판정이 내려진 일자로부터 120일 경과하고 어느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 한 때, 또는 2) 판정의 수정이나 취소절차가 완료된 때에 판정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ICSID추가절차규칙이나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1) 최종판정이 내려진 일자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보류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또는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보류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 또는 인용하였거나 더 이상 상소가 없는 때 판정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의 판정을 집행하여야 하며 일방 분쟁당사국이 최종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는 중재당사자였던 투자자가 소속하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패널을 창설한다. 패널절차에서 투자자 소속국가는 1)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협정상의 의무에 불합치한다는 결정, 2) 당해 당사국이 최종 판정을 이행하거나 이행하도록 권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분쟁 투자자는 이와 관계없이 ICSID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칠레FTA상의 투자관련 분쟁사건으로 중재에 회부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commercial relationship or transaction)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²⁴⁵⁾

245) FTA의 맨 마지막 부분에 차지하는 것들은 FTA의 운용, 예외, 및 최종조항 등이다. FTA의 운영 조항에서는 FTA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일정한 협의기구 등을 창설하는 내용을 두게 된다. 예컨대, 한국·칠레FTA에서는 각료급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와 협정이행에 관련된 행정·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을 창설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무역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이행과 적절한 적용의 감독, 협정 적용결과에 대한 평가, 산하 위원회 및 전문가 그룹에 대한 감독, 기타 당사국이 회부한 사항 등을 관장하며 양국의 합의하에 원산지 규정, 관세철폐계획, 원산지 및 통관과 관련된 통일규칙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수 있다. 또한, 예외 조항에서는 당해 협정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GATT 제XX조 및 GATS 제XIX조의 일반예외가 적용되며 국가안보상의 예외조치도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한다. 더 나아가 원칙적으로 당해 FTA는 “당사국의 조세체계의 운영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국제수지와 대외금융상의 애로를 겪을 경우,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직접투자를 포함한 외환거래 제한조치를 허용하되, 이러한 조치들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필요 이상의 기간이 설정되어서는 아니된다.”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최종조항에서는 협정 발효절차 및 협정 개정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그 밖에 FTA 체결이전에 당사국간에 양국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당해 FTA에 그 BIT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FTA 발효와 동시에 양국간 투자협정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 또는 특정한 시장 예컨대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FTA 발효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하면 다시 논의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게 된다.

제 5 장 미국의 FTA상의 노동, 환경 및 자본규제금지 관련조항

제 1 절 미국이 체결한 FTA의 내용상 특징

미국은 1988년 이스라엘과의 FTA를 시작으로 캐나다·멕시코와의 NAFTA, 요르단, 칠레 및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다. 특히 미·칠레 FTA 및 미·싱가포르FTA는 각각 미국이 중남미, 국가 및 동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양자간 FTA이며 이 두 FTA는 향후 두 지역에서 체결하게 될 양자간 또는 다자간 FTA의 선례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실질적인 무역 혜택보다 향후 체결하게 될 FTA의 선례로서의 의의 그리고 중남미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거점 확보를 오히려 중시여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⁴⁶⁾ 미국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늘어날 무역량, 투자량이 해당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큰 의미를 가질지 모르지만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미국으로서는 싱가포르, 칠레 모두 신중한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개방경제국가로서 상대적으로 FTA 체결이 용이하였으며 동아시아, 중남미, 카리브해 연안 지역 국가 및 동아시아 국가와 향후 FTA를 체결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를 찾고 있다.

이들 FTA에서는 의회 비준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 및 환경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바, 미국 의회는 무역협상권한(TPA)을 부여하면서²⁴⁷⁾

246) 미국은 그 동안 이들 두 지역에서 FTA의 거점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국가를 선별하는데 많은 고려를 하였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자유무역을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이고 칠레도 개방 경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난 십여년 이상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얻어 왔고 효율적인 거시경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양국 모두 시장 개방에 관심이 많으며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거대한 미국 시장 접근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싱가포르와 칠레가 혜택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두 나라가 속한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야 한다는 압박을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247) 미국·칠레FTA와 미국·싱가포르FTA는 부시 정부가 무역촉진권한을 부여받은 후 2003년 9월 3일 부시대통령이 비준한 최초의 FTA이며 따라서 미국이 장래 체결할 FTA의 내용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그러한 의회의 지시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물론 각각의 국가와 협상하여 반영된 FTA에서도 다소간의 내용 차이도 있고 새로 도입된 항목도 있지만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협상의 틀과 필수 협상 조항 등은 이미 정립되어 있다 할 것이다.²⁴⁸⁾

이들은 미국이 남미 및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양자 모두 환경론자들과 자유무역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환경론자들은 미국·요르단FTA의 환경보호에 관한 진보적 내용이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²⁴⁹⁾ 그런데 이 FTA들에서 주목할 만 것은 금전적인 재제와 환경에 관한 독특한 내용이다.

제 2 절 노동관련 조항

1. 의 의

노동자의 권리는 FTA 협정문안의 작성과 관련하여 다툼이 많은 분야이다. NACCLC (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 제1조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협정의 목적으로서 노동법 집행시의 투명성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즉, 첫째, FTA협정 문안작성자들은 이의가 있는 노동자와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다국적 이의해결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FTA는 노동조항을 협정 본문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국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당사국은 노동기준을 국내법과 관계없이 노동기준을 FTA로 통합하고 국내법과 노동조건의 초국가적 양해를 촉진

248) 한편, 관세 인하 조항은 두 FTA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당사국 모두 관세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관세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FTA에 관한 협상을 할 때 관세 인하에 우선순위를 그다지 높게 두지 않는다. 향후 무역 협상을 통해 국가간의 무역 장벽은 낮아지겠지만 FTA를 체결하고 있는지 어떠한 국가와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국가간의 차별 양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

249) Andrea N. Anderson, *op.cit.*, p.1240.

하여야 한다. 넷째,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한 당 경우 강력한 벌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등이다.²⁵⁰⁾

노동권 옹호론자들은 높은 작업·안전기준, 생계를 꾸릴만한 임금과 혜택, 단체결성·집단교섭의 권리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 무역과 투자의 규제완화만을 열렬히 추구하는 무역제도를 비판한다. 현재와 같은 FTA의 반대론자들은 국제무역이 일정한 이익을 국가경제에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부족한 투자자본을 도입하기 위한 경쟁으로 인한 노동자의 낮은 노동기준 때문에 노동자들이 흔히 부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1994년 발효한 NAFTA는 자우무역과 줄어드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보호간의 연계를 인식하여 NAFTA의 side agreement인 NAALC를 체결하여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이 요르단, 싱가포르 및 칠레와 체결한 FTA도 노동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WTO의 노동기준에 관한 입장

국제노동기준의 이념은 1919년 최소한 국제노동기구의 창설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1998년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1998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²⁵¹⁾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그러한 기준을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은 국제사회에 존재하지 아니하며 노동계, 특히 선진국의 노동계는 오랫동안 그러한 기준을 무역조약의 일부로

250) Benjamin Holt and Michael Waller, "International Trade and Workers' Rights: Practicval Tools for Reading Labor Rights Provisions of Free Trade Agreements", *Hum. Rts. Br*, Vol.11(2004), P.42.

251) http://echo.ilo.org/pls/declaris/DECLARATIONWEB.static.jump_language=EN&var_pagename=DECLARATIONTEXT. 이 선언에 나타난 기본적인 원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1) 무차별, (2) 강제노동의 금지, (3) 착취적인 아동노동의 금지, (4)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승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상기 Declaration para.2).

서 이행할 것을 촉구하여 왔음에도²⁵²⁾ 아주 최근까지 무역량 감소를 우려하는 산업계와 그러한 기준이 자국의 값싼 노동력이라는 비교우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저개발국의 의구심 때문에 그러한 노동계의 요구는 거부되어 왔다.²⁵³⁾

WTO의제에 노동문제 특히 국제노동기구의 “핵심노동기준(core labor standards)”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았는 바, 기본적으로는 (1) 무역조치가 노동기준을 옹호하기 위하여 취해질 수 있는 것인가, (2) 낮은 노동기준이 부당한 무역우위를 초래하는가, (3) WTO가 노동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 등 세 가지 문제가 그러한 논쟁의 핵심이었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의 제1차무역장관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몇 주일 동안 그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WTO는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였다. :

우리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핵심노동기준의 준수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각성한다. 국제노동기구는 그러한 기준을 정하고 다룰 권한을 가진 기구이며 우리는 국제노동기구의 그러한 기준을 촉진하는 작업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확인한다. 우리는 무역증가와 무역자유화확대로 인하여 촉진되는 경제성장과 발전이 그러한 기준의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노동기준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며 국가 특히 저임금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는 결코 의문시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WTO와 ILO는 그 동안의 협력을 계속하여 갈 것이다.²⁵⁴⁾

그 후에도 일부 선진국들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WTO는 Singapore선언을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 상기의 ILO의 1998년 선언을 존중하여 노동문제를 WTO의제에 올리지는 아니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왔다.

252) Thomas I. Palley, “The Economic Case for Labor Standards: A Layman’s Guide”, *Rich. J. Global L. & Bus.*, Vol.2(2001), p.183.

253) Jonathan B. Wight, “Does Free Trade Cause Hunger? Hidden Implications of The FTAA”, *Rich. J. L & Bus.*, Vol.(2), p.167.

254) Ministerial Declaration, Dec.13, 1996, 1st Session, Singapore Ministerial Conference, WT/MIN(96)/DEC/. para. 4, <http://docsonline.wto.org>.

미국에서도 국제노동기준 확립을 옹호하는 일부 학자들은 그러한 목표를 WTO를 통하여 얻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지만²⁵⁵⁾ WTO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WTO의 공식입장은 엄격하게 말해서 그 문제는 WTO내에 당해 문제에 대한 작업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문제를 언급해서는 아니 되며 그 문제는 WTO가 직면해 있는 주제라고 주장한다면 잘못된 것일 것이라는 것이다.²⁵⁶⁾ 1996년 싱가포르각료회의에서도 WTO 회원국들은 ILO가 노동기준을 다룰 권한 있는 기구임을 확인하였는 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의 틀에 대한 합의하였던 2004년 제네바회의에서도 국제노동기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3. 미국의 FTA상의 노동관련 규정

북미자유무역협상의 체결에 임박할 즈음 미국 노동계가 노동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기 전까지 노동문제는 협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NAFTA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취임한 클린턴 대통령은 기본 NAFTA에 노동 및 환경 조항을 별도로 추가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회의 비준을 얻을 수 있었다. 미국의회내에서는 노동, 환경 문제가 신속처리권한과 연계되어 여러 논쟁이 벌어졌는바, 노동, 환경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정문을 작성하기보다는 본 협정의 일부로 포함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노동권, 환경보호 문제를 무역협정에서 다루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일방 당사국이 협정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255) 예컨대, Daniel A. Zaheer, "Breaking the Deadlock: Why and How Developing Countries Should Accept Labor Standards in the WTO", *Stan. J. L. Bus. & Fin.*, vol.9(2003), p.69; Benjamin James Stevenson, "Pursuing An End to Foreign Child Labor Through U.S. Trade Law: WTO Challenges and Doctrinal Solutions", *UCLA J. Int'l L. & Foreign Aff.*, Vol.7(2002), p.129; Matthew T. Mitro, "Outlawing The Trade in child Labor Products: why the GATT Article XXHealth Exception Authorizes Unilateral Sanctions", *Am. U. L. Rev.*, Vol.51(2002), p.1223.

256) Thomas J. Manley & Luis Laured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in Free Trade Agreements of the Americas", *Emory Int'l Rev.*, Vol.18 (2004), p.854.

요르단과 체결한 FTA에서도 무역자유화와 노동기준의 보호를 연계시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 문제 역시 협정의 본문에 포함시킴으로써 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노동 조항을 보면 다음 3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²⁵⁷⁾

- 즉, 각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법을 무역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미국의 1974년 무역법에서 정의한 “국제적으로 승인된 노동권”(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r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서 정의한 핵심적인 노동기준(core labor standards)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 노동법의 규정을 완화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 노동법의 실효적인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자유재량권의 합리적인 행사:(a resonable exercise of ...discretion) 및 자원배분에 관한 善意의 결정”(bona fide decisions regarding the allocation of resources)이 고려되어야 한다.

노동기준을 정한 제6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²⁵⁸⁾

1. 양당사국은 ILO 회원국으로서의 상기의 『직장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의무선언에 관한 선언』 및 그 후속조치를 준수할 것을 재확인한다. 양당사국은 이러한 노동원칙과 제6항에 규정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각종 노동권이 국내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호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양당사국은 국내노동법을 완화함으로써 무역을 촉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각 당사국은 상대국과의 무역을

257) Howard Rosen, *op.cit.*, pp.62-63.

258) *Ibid.*

촉진하는 장치로서 국내노동법을 양보 또는 훼손하거나 그와 같이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국내노동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상응하여 노동법 및 규제를 채택 또는 수정하는 상대국의 권리는 인정하는 반면에 각 당사국은 자국법이 제6항에 의하여 주어진 바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부합되는 노동기준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a) 어느 일방 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인 형태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동을 통하여 협정당사국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노동법을 집행하여야 한다.
 (b) 양당사국은 조사, 규칙, 및 준수문제에 관한 자유재량을 행사하는 권리 및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것으로 정하여진 다른 노동문제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배정하는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양 당사국은 일반 당사국이 일련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가 이러한 자유재량의 합리적인 행사의 반영이거나 또는 선의에 입각한 자원배분 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기 (a)호를 준수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5. 양 당사국은 상호협력이 노동기준 증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6. 이 조를 시행함에 있어서 노동법이라 함은 다음과 각호와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이나 규칙 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을 말한다.
 - (a) 결사의 권리
 - (b)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 (c) 각종 형태의 강제노역 금지
 - (d) 최소고용연령

(e) 최저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 및 보호에 관한 합리적인 근로조건

요르단과의 FTA 및 NAFTA에서의 노동관련 규정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⁵⁹⁾

첫째,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요르단과의 FTA는 (1)1974년 무역법상의 국제적으로 승인된 노동권: a) 결사의 권리, b) 단체결성 및 단체교섭의 권리. c) 강요된 또는 의무적인 노동의 금지. d) 아동 고용을 위한 최저연령, e) 최저임금, 노동시간 및 직업상의 안전·건강에 관한 수락할 수 있는 조건 및 (2)국제노동기구의 핵심 근로조건: a) 결사의 자유, b) 단체결성 및 단체교섭의 권리, c) 강요된 노동의 이용 금지, d) 착취적인 아동 노동의 금지, e) 고용차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NAFTA는 “1974년 무역법상의 국제적으로 승인된 노동권외에 다음의 권리를 추가한다. f) 파업의 권리, g) 단체결성 및 단체교섭의 권리, h)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최저고용기준, i) 남녀간의 평등한 급여, j) 직업상의 부상 및 질병에 대한 보상, k) 이민노동자의 보호”라고 하고 있다.

둘째, 기본노동요건과 관련하여 요르단과의 FTA는 “모든 국가는 무역과 관련된 상황에서 자국의 노동법과 기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무역촉진수단으로서 자국 법을 포기하거나 달리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NAFTA는 “모든 국가는 모든 국가는 무역과 관련된 상황에서 자국의 노동법과 기준을 집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노동자의 권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FTA상의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권리의 범위와 관련하여 요르단과의 FTA에서는 상기의 상기 11개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NAFTA에서는 “11개의 권리중 3개만(아동 노동, 최저임금 및 직업상의 안전·건강)만이 분쟁해결, 궁극적으로는 제제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다. 협정상의 분쟁해결메커니즘은 자국의 노동권 관련법령과 규칙을 집행되지 아니하였고 타방이 제기한 그러한 불집행이

259) *Ibid.*, pp.71-73.

상호간의 무역과 관련되어 있으며 상호 승인한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동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칠레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는데 노동과 환경문제를 FTA에 포함시키건 별도의 협정을 작성하여 다루건 개의치 않지만, FTA의 위반을 이유로 무역상의 제재를 행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칠레FTA 및 미국·싱가포르 FTA 모두 노동 및 환경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바, 두 FTA상의 관련 조항 내용은 비슷하다. 요컨대, 각 당사국은 만족스럽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집행가능한 법률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단체결성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 근로 연령 제한과 아동 노동 착취 사례 근절, 및 최저 임금·근로 시간·직업상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5개 분야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문제와 관련한 이의제기절차,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의 장려, 협상이 실패한 경우 사전에 작성된 자격 있는 중재인 명부로부터 중재인단 구성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중재인단이 이의가 제기된 당사국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한 당사국은 중재인단에게 이의가 제기된 당사국으로 하여금 노동관련법 준수를 위한 기금에 금전상의 평가액(벌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벌금 상한액을 연간 1500만달러로 하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3 절 환경관련 조항

1. 의 의

미국은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를 연계시키는 환경보호 조항을 둔 FTA를 체결하여 왔다.²⁶⁰⁾ 먼저, NAFTA에서는 구속력이 없는 side agreement에 환경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그 후의 FTA, 즉, 요르단, 칠레, 싱

260) 미국이 체결한 FTA는 미국무역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의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다. 요르단과의 FTA는 <http://www.ustr.gov/regions/ed-med/middleeast/textagr.pdf>, 칠레와의 FTA는 <http://www.ustr.gov/new/fta/Chile/final/>, 싱가포르와의 FTA는 <http://www.ustr.gov/new/fta/Singapore/final2004-01-15-final.pdf>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가포르와의 FTA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요르단 FTA의 분쟁해결메커니즘은 분쟁해결대상이 되는 환경상의 의무를 협정 본문에 포함시킨 첫 번째 FTA이다. 혹자는 미국·요르단 FTA에서는 무역제제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동 협정이 장래의 무역 교섭에 대한 중요하면서도 달갑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요르단FTA는 대규모의 경제구조를 가진 선진국과 단순한 경제구조를 가진 개발도상국간의 자유무역협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클린턴 정부하에서 미국은 미국·요르단FTA와 유사한 노동과 환경에 관한 조항을 다른 FTA에서도 삽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기준과 환경기준을 FTA에 삽입하는 것은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²⁶¹⁾

2. 자유무역론자와 환경론자의 논쟁

자유무역론자와 환경론자간의 논쟁은 자유무역협상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미국이 체결한 요르단,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는 환경론자와 자유무역론자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²⁶²⁾ 향후에도 그러한 비난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²⁶³⁾ FTA에 환경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

261) Mike Moore, Director-General of the WTO, Address at the European Business School in London(Mar.12, 2001),http://www.wto.org/english/news_e/spmm_e/spmm54_e.htm.

262) Mary Tiemann, Library of Cong. Cong Research Serv. Report, U.S. -Jordan Free Trade Agreement: Analysis of Environmental Provisions; Heather Corbin, "The Proposed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Reconciling Free Trad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olo. J. Int'l Environ. L. & Pol'y, Vol.14(2003), PP.129-34;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Promotion Greener Trade with Chile and Singapore, Enviroaction, Nov.20,2002, <http://www.nwf.org/enviroaction/index.cfm?articleID123&issued=18>.

263) Haixiao Huang & Walte C. Labys, Environment and Trade: A Review of Issues and Methods(2001), http://www.rri.wvu.edu/pdffiles/labys_2001-1.pdf(이 글은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경제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 Rene Vossenaar, Ulrich Hoffmann & Jha Veena, Trade and Environment: Proposals and Their Possibl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1999), <http://r0.unctad.org/tradeenv/docs/teprop/pdf>((이 글에서는 무역과 환경이 장래의 무역

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²⁶⁴⁾ 환경론자들은 FTA와 환경규칙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으로 FTA가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기준이 가장 낮은 무역대상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추락경쟁(race to the bottom)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²⁶⁵⁾

또한 그들은 기업들이 환경기준이 덜 엄격한 국가에서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경쟁상의 유리함을 획득하고 있으며²⁶⁶⁾ 더 나아가 무역 관련조치들은 다른 국가에서의 환경 약화로부터 발생하는 대가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현행 국제법적 상황을 살펴보면, 오직 FTA를 통하여 그러한 조치들을 확립·시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²⁶⁷⁾ 반면에 자유무역론자들은 무역거래에 환경기준을 적용하는데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인 바, 그 논거는 환경규칙이 외국의 기업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부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²⁶⁸⁾ 있다는 것이다. 보호주의자들은 국내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하여 무역장벽을 설정하는데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²⁶⁹⁾ 자유무역론자들은 환경론자들은 환경조항을 FTA에 삽입하는 것은 무역장벽에 해당하는 것으로²⁷⁰⁾ 그러한 장벽이 결코 환경보호의 증진시키는 역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유무역론자들은 어떠한 국가가 환경보호를 강화할 수 없는 것은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추론을 하며²⁷¹⁾ 자유

협상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264) Mary Tiemann, *op.cit.*

265) Heather Corbin, *op.cit.*, p.121.

266) *Ibid.*

267) *Ibid.*

268) 이러한 우려를 보호주의철학에 기인한 것이며 그러한 보호주의는 일반대중의 이익을 희생하고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학자도 있다. 예컨대, 보호주의 철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Robert W. McGee. An Economic Analysis of Protectionism in the United States with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Trade in Europe, *Wash.J. Int'l L. & Econ.* Vol. 26(1993), pp.540-43. 참조.

269) Robert W. McGee, p.540.

270) Mary Tiemann, *op.cit.*

무역은 환경 보호를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한다.²⁷²⁾ 따라서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환경보호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FTA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의 부시대통령도 환경기준을 무역과 결부시켜 FTA에 환경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보호주의임을 지적함으로써 자유무역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²⁷³⁾ 이러한 부시대통령의 입장은 무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을 고려해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²⁷⁴⁾ 의회는 어떠한 FTA의 전체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며 협정문안에 대해 수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미국이 체결한 FTA상의 환경관련 규정

한편, 환경 관련 조항도 노동 관련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과 요르단 FTA에서도 본문에 환경과 노동 문제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환경조항의 핵심은 국내환경법을 완화함으로써 무역을 촉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inappropriate)는 것이다. 동시에 쌍방 당사국이 자국의 환경법과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일방 당사국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위(action) 또는 부작위(inaction)를 통하여 쌍방당사국간의 무역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자국의 환경법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조항의 삽입을 둘러싸고 의회에서 논쟁이 전개된 바 있었지만 미국·요르단 FTA는 협정 본문에 직접 환경보호에 관한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환경문제가 동 협정상의 분쟁해결대상이 되도록 한 최초의 FTA

271) Thomas J. Schoenbaum, “Trade and Environment: Free International Trade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rreconcilable Conflict?”, *A.J.I.L.* Vol86(1992),

272) 그러나, 무역이 반드시 빈곤을 감소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Chantal Thomas, “Poverty Reduction, Trade and Rights”, *Am. U. Int’l L. Rev.*, Vol18(2003), p.1399.

273) <http://www.globalexchange.org/campaigns.org/fta/news.asp?NEWSID=37>.

274) 미국 의회는 2002년 9월 19일 대통령에게 무역촉진권한을 부여하였다. 의회의 결의에 따라 대통령은 이 권한을 2005년 6월 1일까지 보유하였으며 의회가 불승인 결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 보유는 자동적으로 2년 연장되었다. *Ibid.*

이다. 미국·요르단 FTA를 둘러싸고 절대적 자유무역론자와 환경론자간의 의견대립이 있었으며 의회에서조차 논쟁이 전개되어 거의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동의하였다.²⁷⁵⁾ 이 협정에 포함된 몇 가지 환경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문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본문의 환경관련 조항의 해석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 서문의 환경관련 규정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보호에 관한 느슨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본문의 환경보호 규정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이 서문은 미국과 요르단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인정하고 환경을 보호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각기 다른 경제발전 수준에서 각자의 필요성과 관심에 양립되는 방법으로 환경보호의 수단을 강화할 것임을 약속한다는 취지를 표시하고 있다.²⁷⁶⁾

그런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의는 없기 때문에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²⁷⁷⁾ 국제연합이 환경의 연구와 보호를 촉진위하여 창설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세대들의 능력을 손상함이 없이 현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결국 미국과 요르단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미래 세대들의 필요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한 최소한의 환경보호를 용인하는 것으로 서문의 환경규정을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요르단 FTA는 당사국의 주권적 관심사와 환경적 관심사에 대한 균형을 평가할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국이 각각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은 자신들의 환경관련법의 실효적 집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에 대

275) Andrea N. Anderson, *op.cit.*, p.1229.

276) *Ibid.*,

277) Martin S. High, “Sustainable Development: How Far Does U.S. Industry have to go Meet World Guidelines?”, *ALB. L. J. Sci. & Tech.*, Vol.1'14(2003), p.131.

한 상대국의 평가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국의 자발적인 준수에 의존하는 것일 뿐이다.

협정 본문의 환경관련조항(주로 제5조)에 대해서도 환경론자들은 회의적이다. 먼저 제5조 제1항은 양국이 국내환경법을 완화함으로써 무역을 촉진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인정한다고 해서 자국 환경법의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보장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또한 제5조의 이행을 강제할 만한 수단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제5조의 시행은 당사국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자발적인 준수를 요구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무역을 자국법을 완화함으로써 무역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제활동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을 뿐 투자와의 관련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환경피해를 수반하는 투자가 행하여질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²⁷⁸⁾

따라서, 제5조는 환경법의 감시에 대한 무제약의 자유재량권을 당사국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조 제2항의 “shall strive to” 라는 표현은 당사국에게 어떠한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당사국들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제5조 제3항 (b)는 당사국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합리적인 자유재량권의 행사이거나 자원배분에 관한 선의의 결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용인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당사국들에게 환경적인 필요와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자유재량권과 융통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²⁷⁹⁾ 한편, 미국·요르단 FTA에서 가장 주목할만 한 점은 환경조항이 동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요르단과 미국이 교환한 부속서한(side letter)은 양국간의 FTA의 환경보호 조항을 약화시키고 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동 협정 제17조의 표현에 대해서 미국의 하원은 반대한 바 있다.²⁸⁰⁾ 하원의원들은 이 조항이 당사

278) Andrea N. Anderson, *op.cit.*, p.1232.

279) *Ibid.*, p.1234.

280) *Ibid.*, p.1236.

국들로 하여금 환경분쟁에 대응하여 무역제제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우려에 대한 반응으로 미국과 요르단은 부속서한을 교환하였는 바 여기에서는 양국정부가 무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적용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의도하지 아니하였다(did not expect or intend to apply the agreement in a manner that results in blocking trade)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동 부속서한은 양국 정부는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양자간 협상 및 기타의 절차 특히 전통적인 무역제제에 호소하지 아니하고 협정의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적인 분쟁해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부속서한의 규정이 미국 또는 요르단의 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일찌감치 예상되었다. 부속서한의 규정의 효과는 환경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속서한은 미국·요르단FTA의 최고의 특성 - 일방 당사국이 협정상외의 환경조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무역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 을 손상시키고 있다.²⁸¹⁾

미국·요르단 FTA의 환경보호 조항은 그 광범위하면서도 애매한 표현으로 인하여 크게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동 협정은 주권의 보존이라는 측면이 다른 모든 측면을 압도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쉽게 환경관련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많은 흠결을 남겨놓고 있다. 사실상, 미국·요르단 FTA상의 환경 조항이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다소 과대평가되었으며 당사국에게 환경과 관련하여 종전과 다른 그 어떠한 의무도 지우고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²⁸²⁾

따라서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될 환경위반사태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 협정이 당사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기존의 환경보호 기준을 약화시키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뿐 새로운 환경기준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국의 환경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양국간의 합의된 기준이

281) *Ibid.*, p.1237.

282) Howard Rosen, *op.cit.*, pp.66-69.

나 조치가 없기 때문에 양국은 환경보호정책을 현상유지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²⁸³⁾

더구나, 부속서한을 살펴보면, 어느 일방도 타방의 협정상의 환경조항 위반에 대한 무역제재를 부과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분쟁해결패널이 작성하는 보고서는 자문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당사국이 동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이러한 환경조항의 실질은 NAFTA에 포함된 환경조항과 거의 동일하며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요르단 FTA가 협정 본문에 그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이며 이로써 환경문제가 동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분쟁해결메커니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NAFTA에서는 환경조항을 side agreement인 NAAEC(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그 지위가 격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²⁸⁴⁾

한편, 요르단과의 FTA 및 NAFTA의 환경관련 조항의 차이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⁸⁵⁾ 첫째, 환경조치와 관한 법률의 완화 문제와 관련하여 요르단과의 FTA 제5조 제1항은 “쌍방 당사국은 국내환경법을 완화함으로써 무역을 촉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NAFTA 제1114.2조는 “당사국들은 국내의 보건, 안전 또는 환경 조치들을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의 투자자의 투자의 확립, 획득, 확장 또는 유지(establishment, aquisition, expansion or retention) 촉진수단으로서 그러한 조치들을 포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훼손시켜서는 아니 된다. 일방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이 그러한 촉진수단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방당사국과 협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쌍방 당사국은 그러한 촉진수단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한다.”라고 규정

283)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nternational Trade Affairs, Environment, Trade and Investment, <http://www.epa.gov/international/trade/goninfo.html>.

284) Howard Rosen, *op.cit.*, p.69.

285) *Ibid.*, pp.66-69.

하고 있다.

둘째, 환경조치의 채택 및 수준의 유지와 관련하여 요르단과의 FTA 제5.2조는 “자국의 국내환경보호 수준과 환경발전정책·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자국의 환경법을 채택 또는 適宜 변경시킬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여, 각당사국은 자국 법률(laws)이 높은 환경보호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러한 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NAFTA 제1114.1조는 “이章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당사국이 자국영역내에서의 환경활동이 환경관련사항에 민감한 방법으로 수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 장과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 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NAAEC 제3조는 “자국의 국내환경보호 수준과 환경발전정책·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자국의 환경법을 채택 또는 適宜 변경시킬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여, 각당사국은 자국 법률과 규칙(laws and regulations)이 높은 환경보호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고 그러한 법률과 규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의무로서의 환경법의 실효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요르단과의 FTA 제5.3조(a)는 “일방 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일 이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쌍방당사국간의 무역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자국의 환경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NAAEC 제5.1조는 “각 당사국은 높은 환경보호 수준 및 환경 법률 및 규칙의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7의 구속을 받는 적절한 정부 조치를 통하여 자국의 환경법과 규칙을 실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7조는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타방 당사국 영역내에서 자국 환경법의 집행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방당사국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자유재량권의 행사로서의 환경법의 실효적인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요르단과의 FTA 제5.3(b)조는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조사·소추·

규제·준수의 문제와 관련된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권리 및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것으로 결정된 다른 환경 문제와 관련된 집행에 대한 자원의 배분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어떠한 조치 또는 無조치가 그러한 자유재량권의 합리적인 행사를 반영한 것이거나 또는 자원의 배분에 관한 善意의 결정으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일방 당사국이 제(a)호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NAACE 제45.1조는 “이 협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방당사국은 자국의 기관 또는 관리에 의한 문제의 조치 또는 무조치가 (a) 조사·소추·규제·준수의 문제와 관련된 자유재량권을 행사를 반영한 것이거나 또는 (b)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결정된 다른 환경 문제에 대한 자원의 배분에 관한 善意의 결정으로 비롯된 개개의 경우에 자국의 환경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거나 제5조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기구 및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요르단과의 FTA는 “각 당사국은 협정의 접촉점(contact points)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부서(office)를 지정하여야 한다. 60일내에 협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90일내에 해결되지 못하면 당사국들이 선택하는 분쟁해결 패널에 회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NAFTA는 “무역부장관(무역위원회)은 종종 회합하며 15인으로 구성되는 사무국(Secretariat)으로부터 협의와 설득으로 문제해결에 관하여 지원을 받는다. 각 당사국에는 국가행정관리(national administrative officer: NAO)가 법을 감독한다. 전문가평가위원회(evaluation committee of experts: ECE) 및 중재패널(arbitral panel: AP)을 임명하여 당해 사건을 다루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종적인 벌칙과 관련하여 요르단과의 FTA는 “중재 패널이 보고서를 제출한 후 30일내에도 해결되지 못한 경우 영향을 받는 당사국은 적절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재패널이 금전적인 평가금액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지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패널티는 1년 동안 NAFTA상의 혜택을 금전적 패널티를 한도로 하여 정지하는 것이다 - 전적인 패널티가 관세인하로 얻어지는

NAFTA의 혜택보다도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요르단FTA가 모든 환경조항에 대하여 분쟁해결대상이 되도록 한 반면에 미국·칠레, 및 미국·싱가포르 FTA는 단 하나의 환경조항만을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던 바, 이 조항은 당사국이 자국의 환경법을 집행할 의무에 관한 것이다. 일방 당사국의 환경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평가 상한액은 발생한 피해액과 관계없이 연간 1500만달러이다. 반면에 상업적 무역분쟁의 경우 그 금전적 평가가 무역 효과만을 토대로 산출되는 반면에 그 상한선이 없다. 미국무역대표부는 환경관련의무 위반행위의 계량화된 무역효과는 극히 적을 것이기 때문에 분쟁해결패널이 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용할 기준을 상업적 무역분쟁과는 달리 정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²⁸⁶⁾ 환경관련 의무위반이 무역제제를 수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방 당사국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함으로써 FTA상의 환경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위반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을 지불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자본규제 금지조항

칠레 및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에는 그 협상 막바지에 미국의 요구로 3번째 무역외적(nontrade) 문제(첫째는 노동, 둘째는 환경)를 규율하는 자본규제 금지 조항이 포함되었는바, 이러한 조항은 미국이 종전에 체결한 어떠한 무역협정에도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이다.²⁸⁷⁾ 사실상, 칠레와 싱가포르는 자본규제를 하여 왔는바, 칠레는 자본규제를 통하여 일년이 경과하기 전에 칠레로 들어 왔다가 빠져나가는 단기 투기성 자금(hot money)에 대하여 규제하는 법규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적용된 적은 없었다.

286) Andrea N. Anderson, *op.cit.*, p.1240.

287) Sidney Weintraub, "lesson from the Chile and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ree Trade Agreement: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p.87.

칠레와 싱가포르는 처음에는 그러한 자본규제 조항을 거부했지만 이 조항을 받아들일 때 까지 FTA 체결을 유보하겠다는 미 재무부의 선언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²⁸⁸⁾ 이 조항에 의하면 당사국은 외환수지불균형의 긴급상황에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최장 1년동안 자본규제를 실시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밖에도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주제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닌 한, FTA의 각 장에 숨어있는 세부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전문가조차도 당사국들이 FTA를 어느 정도 시행하여 드러날 때까지는 그 FTA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콜럼비아대학 교수 Jagdish Bhagwati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에서의 청문회에서 자본흐름에 대한 규제조치는 금융상의 이유로 현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역협정을 무역외적 문제로 오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²⁸⁹⁾ 이는 미국이 정계와 학계 모두 자본흐름을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부시 정권이후에도 이러한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흐름 규제 금지조항이 이들 두 국가와의 FTA에 포함된 과정은 사실 투명하지 않다. 이들 협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당사국들간의 논의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된 바가 없다.

제 5 절 결 어

미국이 향후 체결할 FTA에서 서비스시장 개방, 정부 조달 개방,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투자보호 강화, 노동 기준 및 환경 보호 조항 삽입 등

288) 무역협상이 무역과 정치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적 행위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며 무역협상과정에서 수입 장벽을 낮출 때 “호혜성”, “양보”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한다. 미국은 “새로운” 문제, 즉 지적권 보호, 서비스 무역, 앞서 언급한 무역외적 사항에 대한 조항을 강화하는 데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에 전자상거래 관련 장이 추가된 것은 미국이 경쟁력이 강한 분야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289) *Ibid.*

을 예외 없이 관철시키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양자간 FTA는 대단히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바, 향후 미국이 체결할 양자간 FTA의 기준 역할을 할 것이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5개의 문제외에도 전자상거래, 경쟁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NAFTA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²⁹⁰⁾. 또한 조정 절차를 도입하고 노동 및 환경 관련 조항 위반시 다른 해결 방법이 없을 때 무역 제재보다는 벌금을 물게 하며 무역, 규제 절차에서 바람직한 투명성의 정도를 규정하는 등 많은 점에서 두 FTA가 훨씬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다.²⁹¹⁾

또한, 미 재무부 장관이 싱가포르와 칠레가 자본규제 금지조항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FTA 체결을 유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보여 결국 두 국가의 동의를 얻어낸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의 FTA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무역외 조항을 FTA에 포함시키도록 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FTA에 무역외적 사항을 다루는 조항을 하나 둘 씩 포함하게 되면 FTA의 주요 목적인 투자와 무역의 확장 달성을 저해하거나 심한 경우 주요 목적 달성을 아예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미국 외국 원조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인 개발 장려 또한 이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미국은 자신이 중요시하는 분야에서 광범위한 양보를 얻어내고 그 대신 양국에 미국 제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법적 접근성을 보장해 주었지만 이들 조약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조정 이외에 자국의 국내법과 규칙을 개정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

290) 요르단과의 FTA는 양당사국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한다는 약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미국의 첫 번째 FTA이었다.

291) 미국이 요르단과 체결한 FTA를 살펴보면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분쟁이 양 당사국간의 직접적인 협상(direct consultation)에 의하여 해결되도록 하되, 분쟁해결과정을 확립시켜놓고 있다. 즉, 협상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 분쟁해결패널에 비구속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쌍방 당사국이 분쟁해결패널이 당해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영향을 받는(affected) 당사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요르단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조직인 합동위원회 창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직은 FTA의 시행을 감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니다. 실제로 미국의 관세는 이미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 미국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부과 관련 자국 법과 절차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농업 보조금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지만, 향후 미국이 체결할 양자간 또는 다자간 FTA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칠레는 자본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규정을 개정하여야 했다.

제 6 장 결 론

지역적무역협정은 개별국가들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WTO와 같은 다자간무역체제를 통해서는 충족시킬 수 없거나 그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개별국가가 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WTO가 출범한 1995년 직후에도 지역적무역협정의 체결이 급증하였는 바, 이 시기는 WTO가 국제경제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WTO로 인하여 개별국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팽배하였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지역적무역협정이 증가한 것은 WTO를 통한 무역자유화외에 이해관계가 크면서도 뜻이 일치하는 국가들간의 무역자유화에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적무역협정에 대한 개별국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 각국이 처한 정치·경제적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985년 체결된 미국·이스라엘 FTA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능력을 제고하고 중동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은 북미지역과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MERCOSUR을 체결하였다. 한편, 지역적무역협정에 대한 다자간체계의 규범이 느슨한 것도 지역적무역협정이 확산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WTO로 통칭되는 다자간 무역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최혜국대우와 무차별이지만 지역적무역협정은 특정조건하에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WTO의 대다수 회원국은 지역적무역협정의 체결에 열중하기 시작하여 2002년 11월말까지 통보를 제출한 지역적무역협정 안건은 약 250건이었고, 그 중 150건은 1995년 1월 WTO가 성립된 후에 통보된 것으로, 현재 세계에는 대략 170개의 지역적무역협정이 이미 발효중이지만 그중 70여건은 WTO에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일반적으로 2005년말까지는 지역적무역협정이 300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칠레 및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 일본, 뉴질랜드, 태국 등과 양국간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 3월 외교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까지 50개국과 FTA협상을 추진할 것이며 그중 적어도 15개 이상의 국가와 공식적인 FTA를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약 20여개 국가와 FTA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거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일본 FTA의 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단기적으로 FTA체결이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향상과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로서 미국을 앞질렀으며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총수출의 20%를 넘어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이후 한국기업들의 외국인투자의 3분의 1이상이 중국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양국간의 급속히 증가하는 경제의존성으로 인한 FTA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아직 이 문제에 관한 정부간 공식적인 협상 추진을 주저하고 있다.

한국과 ASEAN은 2005년 2월 제1차 공식회의를 자카르타에서 개최하고 2009년까지 협상을 통하여 모든 상품의 80%이상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한다는데 합의를 하였다. 한편, 한·중·일 3국간의 FTA 더 나아가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협정(ASEAN +3 또는 ASEAN +5 FTA)까지도 거론되고 있지만, 한국은 현재, 우선적으로 일본, 중국 및 ASEAN과 각기 양자간 FTA를 체결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간 즉 한국·일본·중국간 FTA 또는 ASEAN+3 FTA를 체결하는 방향전환을 할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것 같다.

FTA의 확대·심화는 다자간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FTA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국가들은 경제적 손실이 가할 것이다. 내수시장의 규모, 무역비중 및 구조, 무역장벽 등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ASEAN, EU 등 주요 무역국가와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FTA 체결대상국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가장 유망하고 다음으로는 ASEAN, 중국, EU 등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내수규모를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이 가장 유망한 FTA대상국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중국도 유망한 대상국가 될 것이다. 무역비중과 보완성 측면에서는 일본, 중국, 미국이 가장 유망한 대상국가이며 EU는 내수시장, 무역의 보완성, 민감분야에서 유리하지만 무역장벽 자체가 낮고 제조업계의 관심이 낮아서 FTA대상국으로는 그다지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

1990년대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무역장벽 철폐외에도 서비스, 투자, 무역규범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TA가 반드시 모든 규범을 포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FTA의 구체적 대상범위는 당사국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한 포괄범위에 따라, 대상국이 누구인가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이익도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NAFTA, 최근에 체결된 한국·칠레FTA 또는 한국·싱가포르 FTA 등을 보면 포괄범위가 상당히 넓다. 개발도상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FTA는 점차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장접근성 증대를 위한 상품무역의 자유화·원활화, 투자 및 서비스의 자유화, 지적재산권보호강화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점차, 기준·인증의 상호인정(MRA), 정부조달시장개방, 경쟁정책조화, 경제기술협력, 환경, 노동기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FTA인 NAFTA의 구성요소를 보면 관세 및 비관세장벽,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등으로 이루어진 상품무역분야, 투자 및 서비스무역분야, 표준·정부조달·지적재산권·반덤핑·환경·노동 등 무역규범 분야, 분쟁해결절차, 각종 협력 및 검토위원회 등 기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FTA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완화, 수량제한 금지, 세이프가드조치, 반덤핑·상계관세, 관세통관절차 간소화 등 시장접근성을 확대

하기 위한 상품무역의 자유화 및 원활화하는 규정들을 두게 된다. FTA에서는 상품무역에 대하여 WTO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을 적용하고, 상대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양허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감축하며, FTA의 자유화대상 품목의 최혜국대우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당사국은 FTA상의 관세율 인하에 대하여 협의한다는 내용을 두게 된다. FTA에서 타결이 가장 어려운 분야가 상품무역분야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이다. 주요 쟁점사항은 기본관세율 및 관세철폐 시기의 설정과 대상 품목의 선정이다. 관세인하 이행기간중에는 양자간 세이프가드(긴급수입 제한조치)를 통하여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 등 선진국과 체결하게 될 FTA에서도 무역자유화에 따른 관세율의 폐지 또는 인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의 비관세 장벽 또는 비관세장벽에 관한 조치를 식별하고 이를 정량화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사실 중국, 일본등과의 FTA의 효과는 비관세 장벽의 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국내외시장 가격차의 원인과 영향을 통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식별가능한 공적규제와 거래관행의 특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FTA의 원산지규정은 특정한 상품이 어느 정도까지 당사국의 영역에서 공정을 수행하여야 FTA상의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원산지 규정은 양국의 산업경쟁력과 무역규모를 근거로 하여 상호 무역의 활성화, 우회수입방지, 외국인투자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WTO에서 특혜적인 원산지규칙에 대한 통제를 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원산지 규칙은 그 기술적인 성격, 불투명성 및 상대적인 비표출성(obscurity)으로 인해 강력한 무역정책수단이 되고 있으며 보호주의적 수단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역외국으로부터 역내국을 경유해 수입되는 상품을 제한하기 위하여 역내에서의 조달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정해두는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 기준 및 판정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한국은

향후 체결하는 FTA에 이른 바 “개성공단조항”을 포함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 조항은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며 일본, 중국, ASEAN과의 FTA에서도 그러한 시도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중국의 주권이 회복된 홍콩과 마카오와 FTA에 해당하는 CEPA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만도 그러한 협정체제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물론 대만도 WTO의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취하는 접근방식은 우리와 다를 수 밖에 없다. 즉, 북한이 현재 WTO 회원국이 아니라는 상황 때문에 개성공단조항의 삽입을 외국과의 FTA체결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ASEAN, 미국, 일본 등은 그러한 조항을 FTA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을 WTO체제에 참여시키고 남북한이 명칭의 여하를 불구하고 FTA에 해당하는 FTA를 체결하는 것일 것이다.

품질기준, 성능, 안전성, 공업표준, 시험방법 등의 각종 기준인증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어 종래 국제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으로 존재하고 있다. 상호승인협정(MRA)은 검사와 인증에 동반되는 비용을 줄이고, MRA대상 제품의 시장화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양국간의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다 서비스 자유화는 양국간 시장개방의 범위가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까지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상품무역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지 진출을 통해서 소비자에 접근할 수 밖에 없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후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는 품목보다는 FTA의 기타 조항을 특히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더 중시여기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서비스 무역자유화에는 은행업, 보험, 증권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와 관련 분야, 컴퓨터, 직접 판매, 통신, 시청각서비스, 건축 및 설계, 관광, 광고, 배달 업무, 건축가, 엔지니어, 회계사 등이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유통, 도매, 소매, 프렌차이즈, 성인 교육, 환경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이며 인터넷은 전자적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GATS는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투입요소들을 규율한다. GATS 부속서중 2건은 금융서비스 및 통신에 대해 다루고 있는 바, 이것들은 국제전자상거래의 핵심요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비스 규칙에 관한 국제규칙은 확립은 아직도 요원하다. FTA에서 인적이동의 자유화는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투자 및 서비스 공급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활동에 종사하는 일정 범주의 기업인에 대하여 일시 입국 및 체류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기술적 원천의 많은 부분은 기술자들에게 체화된 기능임을 감안해 볼 때 기술자의 단기, 장기체류를 더욱 편리하게 하는 것은 당해 선진국의 한국으로의 투자를 더욱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경쟁정책의 조화는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내외국 차별 없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규율하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FTA체약국간에 제도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을 내용을 한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목적과 배경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는 경쟁정책을 조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경쟁정책을 조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경쟁정책 조화를 FTA에 명시한 경우는 EU, NAFTA, EU·멕시코FTA, 일본·싱가포르 FTA등에 불과하다. 한국·일본 FTA 체결과 관련하여서도 경쟁정책의 조화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실현가능성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들어 한국은 미국 및 일본과 FTA를 체결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서비스시장 개방, 정부 조달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투자보호 강화, 노동 기준 및 환경 보호, 자본규제금지 등을 예외 없이 관철시키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FTA를 교섭함에 있어서는 미리 이러한 문제가 국내경제와 법령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 및 동양 단행본 · 논문 】

- 정보통신부, 『한국·싱가포르 FTA 관련 전자상거래 분야 검토』, 2004.
- 외교통상부, 『WTO 전자상거래 특별회의 의제 검토 요청사항』, 2002,
- 삼성경제연구소, “FTA시대의 개막- 체결임박한 한국·칠레 FTA의 과제”, CEO in Finance, 제371호(2002.10.23).
-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1992),
- 김명기, “기본합의서상 잠정적 특수관계의 의미”, 법률신문 (1992년 3월 16일)
- 장명봉,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법적 구조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 연구 제1권 4호 (국토통일원, 1989)
- 이영준, “남북한의 UN동시가입과 한반도의 법적 관계”, 국제법학회논총 제36권 제2호 (1991.12).
- 백충현, “남북한 UN 동시가입과 법적 문제”, 국회보 1991년 9월호.
- 박노형, “남북한 직교역의 GATT체제에서의 문제점”, 국제경제법연구 1992년호 (국제경제법연구회, 1992년).
- 蔡宏明, “CEPA實施後對兩岸四地經貿未來發展之可能影響”, 『經濟情勢及評論』, 2003年 12月.
- “陸港簽署CEPA之可能影響分析”, 『一銀產經資訊』, 2003年 9月,
- 洪財隆, “『中國與東協自由貿易協定』 的來龍去脈與政經效應”, 『APEC2004 議題論叢』, 2005年 3月(台灣經濟研究院).
- 中共·東協下月起逐步撤關稅”, 『中國時報』, 2005年 6月 28日

【 서양단행본 】

- John H. Jackson, *The World Trading System* (Cambridge, MA: MIT Press, 1992)
- John H. Jackson, William J. Davey and Alan O. Skyes,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Cases, Materials and Text* (U.S.A.: West Group, 2002).
- John H. Jackson, *World Trade and the Law of GATT* (Virginia, The Michie CO., 1969).
- Jagdish Bhagwati, *The World Trading System at Risk* (New York: Harvest/Wheatsheat, 1991), p.58-79.
- Jeffrey J. Schott, *Free Trade Areas and U.S. Trade Policy*,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89).
- Norris C. Clement, Eduardo Zepeda & James Gerber, *North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Theory and Practice* (U.S.A.: Edward Elgar Publishing, 1999).

【 서양논문 】

- Benjamin Holt and Michael Waller, “International Trade and Workers’ Rights: Practicval Tools for Reading Labor Rights Provisions of Free Trade Agreements”, *Hum. Rts. Br.*, Vol.11(2004).

- Matthew T. Mitro, "Outlawing The Trade in child Labor Products: why the GATT Article XXHealth Exception Authorizes Unilateral Sanctions", *Am. U. L. Rev.*, Vol.51(2002).
- Inbom Choi and Jeffrey J. Schott, "Korea-US Free Trade Revisited", Jefferey J. Schott(ed.), *Free Trade Agreement: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 Sidney Weintraub, "lesson from the Chile and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ree Trade Agreement: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Promotion Greener Trade withe Chile and Singapor", *Enviroaction*, Nov.20, 2002, <http://www.nwf.org/enviroaction/index.cfm=18>.
-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enefits All(1), *China Daily* (2005-03-30). http://english.china.com/zn_cn/business/news/11021613/20050330/12206606.html.
- Andrea N. Anderson, "The United States Jordan Free Trade Agreement, United 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United States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Advancement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Brooklyn J. Int'l L.*, Vol.29(2004).
- Austan Goolsbee & John Zittrain, "Evaluat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Taxing Internet Commerce", *Nat'l Tax J.* Vol.52('1999).

참 고 문 헌

- Benjamin Holt and Michael Waller, “International Trade and Workers’ Rights: Practical Tools for Reading Labor Rights Provisions of Free Trade Agreements”, *Hum. Rts. Br.*, Vol.11(2004).
- Benzamin James Stevenson, “Pursuing An End to Foreign Child Labor Through U.S. Trade Law: WTO Challenges and Doctrinal Solutions”, *UCLA J. Int’l L. & Foreign Aff.*, Vol.7(2002).
- C. Fred Bergsten, “Globalizing Free Trade”, *Foreign Affair*, Vol.75, No.3(May/June 1996).
- Carlos M. Correa, “Investment Protection in Bilateral and Free Trade Agreement: Implications for the Granting of Compulsory License”, *Mich.J. Int’l L.* Vol.26 (2004).
- Chantal Thomas, “Poverty Reduction, Trade and Rights” *Am. U. Int’l L. Rev.*, Vol.18(2003).
- Cheng In Kyo and Cho Jung Ran, “The Analysis of Tariff Concession in the Japan -Singapore FTA and Implications for Korea-Singapore FTA”, *Economy and Trade Study(Kyungshang Nonchong)*, Vol.18, No,2 (2003).
- Daniel A. Zaheer, “Breaking the Deadlock: Why and How Developing Countries Should Accept Labor Standards in the WTO”, *Stan.J. L. Bus.& Fin.*, vol.9(2003).
- David A. Gantz, “The Evolution of FTA Investment Provisions: From NAFTA to the United-Chile Free

- Trade Agreement”, *Am. U. Int’l L. Rev.*, Vol.19 (2004).
- Ewell E. Murphy, Jr, “Charting the Transnational Dimension of Law: U.S. Free Trade Agreements As Benchmarks of Globalization”, *Hou. J. Int’l L.*, Vol.27(2004).
- Haixiao Huang & Walte C. Labys, Environment and Trade: A Review of Issues and Methods(2001), <http://www.rrl.wvu.edu/pdffiles/labys2001-1.pdf>.
- Heather Corbin, “The Porposed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Reconciling Free Trad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olo. J. Int’l Environ.L. & Pol’y*, Vol.14(2003).
- Howard Rosen, “Free Trade Agreements as Foreign Policy Tools: The US-Israel and US-Jordan FTAs”, Jefferey J. Schott(ed.), *Free Trade Agreement: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 Jisu Kim, “Impact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on East Asia : A Korean Perspective”, *Am. U. J. Int’l L & Pol’y*, Vol.8(1993).
- John Coyle, “Rules of Origin Instruments of Foreign Economic Policy :An Analysis of the 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in the U.S.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Yale J. Int’l L.*, Vol.29(2004).
- Jonathan B. Wight, “Does Free Trade Cause Hunger? Hidden Implications of The FTAA”, *Rich. J. L & Bus.*, Vol.(2).

참 고 문 헌

- Joseph A. LaNasa III, “Rules of Origin and the Uruguay Round’s Effectiveness in Harmonizing and Regulating Them”, *Am.J.Int’l L.*, Vol.90(1996).
- Krueger, A.O., “Are 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s Trade-Liberalizing or Protectionists?”, *Journal of Business Perspectives*(1999).
- Lee Dongwook, “Legal Problems of the Two Koreas in the STO Structure”, *Asian Law Review*, Vol.2(2005), pp.159-152.
- Martin S. High, “Sustainable Development: How Far Does U.S. Industry have to go Meet World Guidelines?”, *ALB. L. J. Sci. & Tech.*, Vol.1’14(2003).
- Mary Tiemann, Library of Cong., *Cong Research Serv. Report, U.S.-Jordan Free Trade Agreement: Analysis of Environmental Provisions.*
- Mike Moore, Director-General of the WTO, Address at the European Business School in London(Mar.12, 2001), http://www.wto.org/english/news_e/spmm_e/spmm54_e.htm.
- Ministerial Declaration, Dec.13, 1996, 1st Session, Singapore Ministerial Conference, WT/MIN(96)/DEC/.para. 4, <http://docsonline.wto.org>.
- Mirolav N. Jovanovic,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New York: Routledge, 1992).
- Mohammad Nsour, “Fundamental Facets of the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greement: E-commerce,

- Dispute Resolution and Beyond”, *Fordham Int’l L.J.* Vol.27(2004),
- Mohammad Nsour, “Fundamental Facets of the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greement: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and Beyond”, *Fordham Int’l L.J.* Vol.27(2004).
- Moshe Hirsch, “International Trade Law, Political Economy and Rules of Origin- A Plea for a Reform of the WTO Regime on Rules of Origin”, *J. World Trade*, Vol.(2002).
- Rahul Rajkumar, “The 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n End Run Around the Doha Declaration on TRIPS and Public Health”, *Alb.L. J. Sci.& Tech.*, Vol.15(2005).
- Rene Vossenaar, Ulrich Hoffmann & Jha Veena, Trade and Environment: Proposals and Their Possibl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1999),<http://r0.unctad.org/tradeenv/docs/teprop/pdf>.
- Robert W. McGee. An Economic Analysis of Protectionism in the United States with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Trade in Europe, *Wash.J. Int’l L. & Econ.* Vol. 26(1993).
- Sherrilyn S. Lim, : “The U.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stering Confidence and Commitment in Asia”, *Cal.W. Int’l L.J.* Vol.34(2004).

참 고 문 헌

- Susan Teltscher, *Revenue Implications of Electronic Commerce: Issues of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ies*, UNCTAD, Apr. 2000.
- Thomas I. Palley, “The Economic Case for Labor Standards: A Layman’s Guide”, *Rich. J. Global L. & Bus.*, Vol.2(2001).
- Thomas J. Manley & Luis Laured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in Free Trade Agreements of the Americas”, *Emory Int’l Rev.*, Vol.18(2004).
- Thomas J. Schoenbaum, “Trade and Environment: Free International Trade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rreconcilable Conflict?”, *A.J.I.L.* Vol86 (1992).
- Thomas J. Smedinghoff & Ruth H. Bro, “Moving with Change: Electronic Signature Legislations As a Vehicle for Advancing E-Commerce”, *Marshall J. Computer & Info. L.*, Vol.17(1999).
- Zakir Hafez, “Weak Discipline: GATT Article XXIV And The Emerging WTO Jurisprudence on RTAs”, *N. Dak. L. Rev.*, Vol.79(2003).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nternational Trade Affairs, Environment, Trade and Investment, <http://www.epa.gov/international/trade/goninfo.html>.
- WIPO Joint Recommendation Concerning Trademark Licenses(Oct.3, 2000), http://www.wipo.int/about-ip/en/development_iplaw/index.htm.

- <http://www.hecom.gov.cn/wtofadian/wen/wtolw/lw70.htm>.
- http://www.epawatch.net/documents/doc66_2.doc.
- <http://www.tier.org.tw/ctasc/issue/FTARTA>.
-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fta.htm.
- <http://www.sice.oas.org/Trade>.
- http://www.sice.oas.org/bits/usasal_e.asp.
- http://www.unctad.org/sections/dite/ia/docs/bits/uk_azer_ebaijan.pdf.
- <http://secretariat.efta.int/Web/ExternalRelations/PartnerCountries/Singapore>.
- <http://www.globalexchange.org/campaigns.org/fta/news.asp>.
- <http://www.ustr.gov/regions/ed-med/middleeast/textagr.pdf>.
- <http://www.ustr.gov/new/fta/Chile/final/>.
- <http://www.ustr.gov/new/fta/Singapore/final2004-01-15-final.pdf>.
- <http://www.wipo.int/ipstats/en>.
- <http://www.sice.oas.org/bitse.asp#CAN>.
- <http://www.wipo.int/ipstats/en/>.
- http://www.dfait-maeci.gc.ca/tna-nac/disp/SDM_archive-en.asp.
- http://www.dfait-maeci.gc.ca/tna-nac/disp/pope_archive-en.asp.
- http://www.wto.org/english/news_e/pres98/pr96e.htm.

참 고 문 헌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http://www.reach.jo/legislative/changes.htm>.

<http://www.jordanusfta.com/documents/memodis.pdf>

http://echo.ilo.org/pls/declaris/DECLARATIONWEB.static.jump_language=EN&var_pagename=DECLARATIONTEXT.